

09-2010-03

KREI

중국 농업 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China

2010 가을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동향**」은 중국 농업정책,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 중국농업 전반에 관한 최신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일반인, 농업종사자, 정책담당자 및 중국 농업 연구자들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자료는 1년에 4회,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동향자료는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정보” - “중국농업정보”

담당자 및 내용문의 전형진 hjchon@krei.re.kr

TEL 02-3299-4324 / FAX 02-968-7340

남민지 mj0801@krei.re.kr

TEL 02-3299-4359



중국농업동향

2010 가을호(제3권 제3호)

I. 농업정책 브리핑

- 2010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3

II. 농업·농촌경제 동향

- 거시경제 동향 19
- 가격 동향 30
- 무역 동향 40
- 향진기업 동향 66
- 양념채소시장 동향 68
- 중국의 육류 수급 동향과 전망 77

III. 정책자료

- 《신규 ‘채람자(菜籃子)’공정의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 89
-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97
- 《농민전업합작사 시범사 창설기준(시행)》 111

IV. 농업통계

115



I. 농업정책 브리핑

- 2010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2010년도 3/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 농약관리사업 촉진 계획 발표

- 농업부는 안전한 농업생산, 안전한 농산물 품질, 농민이익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26일 《농약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農業部關於進一步加強農業管理工作的意見)》(農農發[2010]5호)을 발표하였음.
 - 최근 전국 각지에서 농약관리사업을 강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발전에 일조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농약시장의 질서 혼란, 위법 생산, 금지된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농약잔류량 초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일보한 농약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위 <의견>에서는 총 6가지 사항을 촉구하였음.
 - 경영주체의 감독관리 강화, 규범적 농약경영 행위
 - 농약사용 기술의 강화 지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농약 사용 인도
 - 농약 감독법 집행 강화, 농약시장 질서 정돈
 - 국가 관리업무 공개 강화, 공공 서비스 인식 증강
 - 농약 약해 사고 발생 시 적합한 처리, 사회 안정 보호
 - 농약관리기구 완비, 농약감독관리 능력 제고

□ 비배관리 5년 사업 총괄을 잘할 데 대한 통지 하달

- 농업부 판공청은 2005년부터 비배관리사업 보조를 실시하여 농민, 사회 각계로부터

* 작성: 남민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mj0801@krei.re.kr)

터 환영을 받았음. 비배관리사업의 성과 및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선전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21일 《비배관리 5년 사업 총괄을 잘할 데 대한 통지(農業部辦公廳關於做好測土配方施肥五年工作總結的通知)》를 하달하였음.

- 사업총괄 보고에는 항목별 실시 현황, 주요 실시 방법 및 성과, 대표적인 경험, 문제점 건의, 다음번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음.
- 항목별 실시 현황: 직할 지역의 농업, 토양, 시비의 기본 현황, 《비배관리기술규범》 및 연도별 실시 방안에 따른 5년간의 사업 현황 파악, 핵심 기술의 발전 및 응용 정도, 주요 획득 기술 성과, 투입된 자금 관리 상황 등이 포함됨.
 - 주요 실시 방법: 조직별 비배관리 실시를 위한 주요 조치, 제도, 모델 탐색, 시스템 건립, 기술 창조 등이 포함됨.
 - 주요 성과: 비배관리 사업 능력 제고,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적 효익, 생태적 효익, 사회적 효익 등
 - 대표적 경험: 조직별 비배관리 실시 항목 개발, 느낀점 및 경험 등
 - 다음번 사업에 대한 의견: “12.5” 기간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및 계획 등
- 5년 동안의 비배관리사업 실시 기간 동안 대다수의 성 및 현에서는 각 시기마다 관리 및 통계작업을 실시하여 사업 진전 정도 및 조직별 활동을 파악했음. 이를 통해 기존의 정확하지 못했던 통계를 수정하여 각 연도별 비배관리사업 통계를 완비하였음.
- 비배관리사업을 통하여 각 지역별 협조가 강화되었으며, 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해 선진적인 비배관리사업 현황을 광범위하게 선전하였음.

□ 농업종합개발 토지정비부분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통지

- 국가농업종합개발판공실은 2010년 8월 4일 농업종합개발을 과학화하고 관리수준을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북경, 천진, 상해시 농업종합개발토지정비부분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할 데 대한 통지를 하달함.
 - 《농업종합개발 토지정비부분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통지(關於開展農業綜合開發土地治理項目專題調研工作的通知)》(國農辦函 [2010]78호)

- 위 조사연구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됨. ①대도시 농업생산 및 농촌발전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농업종합개발 토지정비부분 지원 정책, ②북경시 생태종합정비사업에 쓰일 적정한 재정투자 비율 문제에 대한 연구, ③상해시 농업종합개발현(縣) 조정 관련 정책, ④북경, 천진시에 국가농업종합개발 연락사무소 설치
- 도시·농촌의 전면적 발전, 도시의 고효율 농업발전을 위하여 현실에 적합하면서도 대도시농업생산 및 농촌발전을 위한 실질적 요구에 맞는 농업종합개발 토지정비부분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농업종합개발이 지역의 현대적 농업발전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현행 토지정비 지원정책 중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점검, ③현행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역에 적합한 정책 건의 및 해결 가능 방법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북경시 생태종합정비사업의 적절한 재정투자를 위해 3개 방면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함. ①북경시 농업종합개발 생태종합정비항목의 주요 내용 범위 확정, ②생태종합정비사업 재정투자 비율 제고의 필요성과 가능성 분석, ③국가농업종합개발정책과 북경시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북경시 생태종합정비사업에 쓰일 적정한 재정투자비율 관련 정책 연구.
- 상해시 행정구역 정비 및 상해시 농업종합개발현 조정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가 필수적임. 주요내용은 다음의 3가지임. ①상해시 농장관리국 및 상해 역외에 위치한 농장의 현황 파악, ②상해시 농장관리국에서 발표한 개발현 범위의 적합성 및 가능성 연구, ③상해시 농장관리국이 작성한 농업종합개발5년계획과 2011년 사업 가능성 연구보고에 대한 준비.
- 국가농발반(農發辦)은 북경, 천진에 현금국가농업종합개발사업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농업종합개발 성과를 전시하고, 농업종합개발개혁 시범지역으로서 솔선하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산품의 현대적 유통 시범실시에 대한 통지

- 재정부 판공청 및 상무부 판공청은 농산물 유통체계를 완비하여 농촌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2009년도에 2건의 <통지>를 하달했음. 2010

년에는 하북, 요녕, 절강, 산둥, 하남, 호북, 해남, 중경, 신강 등 9개 성을 농산품현대 유통종합의 시범지역으로 삼고, 대련, 상해, 남경, 무석, 항주, Ningpo, 청도, 중경, 곤명, 성도 등 10개 도시를 육류, 채소 유통 추적 시스템 건립의 시범지역으로 삼는 문건을 하달하였음.

- 《농산품의 현대적 유통 시범실시에 대한 통지〈關於開展農產品現代流通試點的通知〉》(財辦建[2010]65호)

-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과 인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낙후된 농산품 유통시스템이 농민의 수익증대 및 농촌경제 발전, 인민생활 개선에 주요 제약점이 되어왔음. 농산품의 현대적 유통 시범 실시 및 고기, 채소 유통의 추적 시스템 시범 실시는 농산품의 현대적 유통의 효과적인 모델을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시범실시 원칙: ①기업이 주체가 되어 용두기업의 선도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산품 유통사슬의 최적화를 촉진해야함. ②현대 유통의 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하며, 국내외 선진 경험을 거울로 삼아 높은 수준, 고효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방 특색에 맞는 현대적 유통모델을 찾아내야 함. ③정부주도로 종합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사회 각 방면의 적극적 행동을 통해 사회자금투입을 이끌어내야 함.
- 시범실시 목표: 시범실시지역에서는 초보적으로나마 고효율, 저자본, 저손실, 원활한 농산품의 현대적 유통시스템을 건립하여 농산품 유통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농산품 생산, 소비의 효율적 모델을 찾아내야 함.

□ 생돈 전출 지역 장려자금 관리방법 하달에 대한 통지

- 지역의 생돈산업을 발전시키고 생돈의 생산,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앙재정부에서는 2007년 《생돈 전출 지역 장려자금 관리방법關於印發〈生豬調出大縣獎勵資金管理辦法〉的通知》을 제정했음. 3년이 지난 현재 재정자금사용의 효율을 더욱 더 높이고, 생산 및 판매 사슬을 효율적으로 인도하고 국내 생돈 생산 및 소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정을 거쳐 《생돈 전출 지역 장려자금 관리 방법關於印發〈生豬調出大縣獎勵資金管理辦法〉的通知》을 다시 제정함.

- 《생돈 전출 지역 장려자금 관리방법關於印發〈生豬調出大縣獎勵資金管理辦法〉的通

知》(財建[2010]48호)

- 위 《관리방법》은 1장 총칙, 2장 장려자금 관리방식, 3장 장려자금 서면보고 및 발급, 4장 장려자금의 감독관리, 5장 부칙 등 총 18조로 구성됨.

□ 농약산업정책 발표

- 공업 및 정보화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는 중국농약 산업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약산업정책農藥產業政策》(工聯產業政策[2010]1호)을 2010년 8월 26일 공표함.
- 위 <정책>은 1장 정책목표, 2장 산업배치, 3장 조직구조, 4장 생산품 구조, 5장 기술정책, 6장 생산관리, 7장 수출입 관리, 8장 시장규범, 9장 중개조직, 10장 사회책임, 11장 기타 등 총 61조로 구성됨.

표 1. 《농약산업정책 農藥產業政策》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과 환경생태 안전 확실히 보호 ■ 총량 통제 ■ 최적화 배치 · 각 지역의 농약산업을 집결하여 전문지역을 구성해 생산분산도를 낮추고 오염원을 감소시켜야 함. ■ 조직구조정비의 가속화 ■ 공예기술 및 장비수준 제고 ■ 기업창신능력 제고 ■ 농약의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위험 완화 ■ 규범적 시장질서 ■ 시장의 자원 배치, 정부의 거시적 조정과 중개조직의 협조 작용
② 산업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원, 환경, 교통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약산업 배치 ■ 원약생산기업은 국가용지정책 및 공업단지진입에 적합해야 하며, 제제(制劑) 생산기업은 시장 및 교통의 편리성을 고려해야 함. ■ 농약산업배치에 적합하지 않은 농약기업은 새로운 품종 개발이나 생산능력 확대를 비준하지 않으며, 지역을 이전하거나 생산품목을 전환하도록 함. ■ 생산능력 과잉지역에의 농약공장 증설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 또한 제한해야 함.
③ 생산품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지원, 기술개조, 경제정책 지원 등을 통해 고효율, 안전, 경제, 환경에 적합한 농약신상품 개발에 힘써야 함. ■ 비농약사용 시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및 사용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국가에서 시의적절하게 독려, 제한, 제거 농약 목록을 발표하여 낙후된 상품을 빠르게 제거시켜야 함.

(계속)

구분	주요 내용
④ 수출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수출입관리제도의 개선 ·수출농약의 생산진입, 생산허가 및 등기 심사 강화 ■ 농약외자기업의 자질심사 강화, 농약외자기업과 합법농약생산기업의 합작 관계독려 ■ 원약과 제제(制劑)상품의 관련세수정책 완비, 농약심층가공산품 수출 독려, 부가가치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수입농약의 원산지표시, 등기 및 상품품질 등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시장의 공정경쟁 강화 ■ 농약상품의 수출입정보플랫폼 및 예비경보시스템 건립, 농약국제교류 및 국제농약발전 추세 연구 강화, 국제무역마찰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 관련위험기금, 신용담보, 융자시스템 완비, 조건이 되는 농약생산기업 지지를 통한 국제시장 개척
⑤ 시장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시장 감독관리의 효율적 통합, 합리적 분업을 통한 효율적 시장 감독 관리의 효율성 제고, 공정경쟁질서 확립 ■ 사회 고발제도 수립 및 고발장려제도 완비를 통해 감독기능 강화 ■ 농약기업 브랜드화 및 상표관리를 강화를 통해 상품경영에서 브랜드경영으로 전변 ■ 마케팅 모델 창신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약사용기술 개발, 기업의 농약사용에 대한 지도 강화, 과학기술 수준 제고 및 농약 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 긴급사건 발생 시 응급처리제도 및 시스템 건립 및 완비
⑥ 중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문간 협회, 상회, 자문기구 및 상품 검측·인증기구 등의 중개조직 설립지지 ■ 관련 부문간 협회, 상회 등의 사회중개조직을 통하여 농약계획, 정책제도, 생산 및 수출입, 무역쟁의 및 지식재산권보호 해결, 정부의 의견청취, 구매 서비스, 사업위탁 관련 제도 완비 및 중개조직의 참여도 및 영향력 제고 ■ 관련 부문간 협회, 상회의 규범적 시장질서 지지 및 자율적관리제도, 예측적시스템 및 관련 부문간 협조시스템 완비 ■ 합법적인 검측·인증기구의 검측, 인증을 통한 승인 실시를 통해 검측, 인증기구의 공정성 확보
⑦ 사회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오염관리, 청정생산, 농약관리 등의 법률법규의 엄격한 집행 및 오염예방 및 관리조치 실시, 오염물 배출 엄격 통제 ■ 농약공업의 종합적 소모, 자원소모, 오염물배출 등에 관한 표준 제정 및 종합적 이용 강화를 통한 자원이용률 제고 ■ 농약기업의 환경친화적 포장재료 권장, 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된 농약, 포장물 회수 책임 강화, 농약폐기물로 인한 오염 감소 ■ 평가 표준 및 평가지표 설정을 통한 평가 및 규제시스템 확립, 환경오염 책임보험제도 완비 ■ 농약부문 신용시스템 건립을 통해 기업신용등급 평가 실시, 기업의 상업도덕, 신용경영, 서비스품질 및 수준 제고 인도

□ <수산물 자원보호구 관리 방안>에 대한 공개 자문 요청에 대한 통지

- 농림부어업국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 설립 및 관리,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中華人民共和國漁業法》, 《중화인민공화국물오염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水污染防治法》,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중화인민공화국야생동물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野生動物保護法》 등 관련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수산물 자원보호구 관리방안水產種質資源保護區管理辦法》 초안을 작성하고 공개자문요청을 실시하기 위한 통지를 하달하였음.
 - 위 <방안>은 1장 총칙, 2장 수산물자원보호구 설립, 3장 수산물자원보호구의 관리, 4장 부칙 등 총 25조로 구성됨.
- 수산물자원보호구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
 - 국가 혹은 지방에서 규정한 중요 수상생물의 주요 성장번식지역
 - 중국 특유 혹은 지방특유의 수산물질자원의 주요 성장번식지역
 - 중요 수산양식대상의 원종, 모종의 주요 천연성장번식지역
 - 기타 비교적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거나 유전육종가치를 지닌 수산물자원의 주요 성장번식지역
- 수산물자원보호구 설립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보호구의 주요 보호 대상, 보호가치, 지역범위, 관리기구, 관리기초 등이 개술된 신청서
 - 보호생물자원, 생태환경, 사회경제현황, 보호구관리조건 및 종합평가 등이 포함된 종합고찰보고
 - 계획목표, 계획내용(핵심지역, 실험지역) 등이 담긴 보호구계획방안
 - 보호구 대축척지도 등 기타 필요 자료
- 수산물자원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명명됨.
 - 국가급수산물자원보호구: 수산물자원보호구가 소재한 지역명칭+보호대상명칭+ “국가급수산물자원보호구”

- 성급수산물자원보호구: 수산물자원보호구가 소재한 지역명칭+보호대상명칭+ “성급수산물자원보호구”
 - 여러 종류의 보호대상을 지니거나 중요 생태기능이 있는 수산물자원보호구: 수산물자원보호구가 소재한 지역명칭+“국가급수산물자원보호구” 혹은 “성급수산물자원보호구”
 - 주요 보호물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경우의 보호구: 수산물 자원보호구가 소재한 지역명칭+특정 어류의 명칭+“국가급수산물자원보호구” 혹은 “성급수산물자원보호구”
- 수산물자원보호구 관리기구의 주요 책임
- 수산물자원보호구의 구체적인 관리제도 제정
 - 수산물자원보호구 경계비, 표식물 및 관련 보호시설 설치 및 보호
 - 수생물자원 및 자원생존환경의 조사검측, 자원양생, 생태 복원 등의 사업 실시
 - 병들거나 잘못 어획된 보호 생물에 대한 구급치료
 - 수산물자원보호에 대한 선전 및 교육 전개
 - 법에 의거한 어업행정집행법 사업 실시
 - 법에 의거하여 보호구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조사 처리, 어업행정주관부문에 중요 사항 적시 보고

□ 2010년도 중만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농업부·국가식량국·중국농업발전은행·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 등 7개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들은 2010년 9월 11일 2010년도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을 하달하였음.
- 《〈2010년도 중만생 장립종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하달에 관한 통지關於印發〈關於印發2010年中晚稻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發改經貿[2010]2083호)
-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의 주요 내용

- 대상지역: 강소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광서성, 사천성, 흑룡강 3성 등 주산지 성.
- 최저수매가격(kg 당): 중만생 장립종벼 1.94위안, 중단립종벼 2.1위안
- 최저수매가격 적용기간: 2010.9.16.~12.31(흑룡강 3성은 2010/11/16~2011.3.31).
- 수매기관: ①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및 관련 지사, 중량집단유한공사中糧集團有限公司, 중국화량물류집단공사中國華糧物流集團有限公司 소속 기업, ②수매 대상지역 성(자치구) 정부의 비축식량관리공사(또는 단위), ③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 해남성 등 7개 주소비지 성(직할시) 정부의 비축식량관리공사(또는 단위)

○ 국가수매정책의 엄격한 집행

-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및 관련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수매비축기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엄격히 실시함. 임의로 등급을 낮추거나 가격을 낮추어 농민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임의로 당급, 가격을 올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금지됨.
- 위탁수매비축기업은 중만생 장립종벼 최저수매가격 수매 시 벼의 품질 및 수량을 엄격히 검수받아야 하며, 위법행위를 했을 시에는 즉시 제재하거나 시행조치를 내림.
- 각지 가격, 식량, 농업부문 및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는 시장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시장가격 수준을 정확히해야 함.

○ 위탁수매비축창고 지점 자격 심사 강화

-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및 지방의 관련 부문은 위탁수매비축창고 지점 자격에 대한 심의 및 재심사를 강화해야 함.
- 위탁수매비축창고 지점은 반드시 식량수매자격 및 중국농업발전은행 대출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위탁수매비축창고 지점 선정 시에는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중량집단유한공사, 중국화량물류집단공사소속기업 및 지방국유식량창고 직속으로 총괄해야 하며, 현

재 창고에 저장된 물자를 충분히 이용하여 비축식량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

○ 위탁수매비축기업의 행위 규범화

-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관련 공사는 법에 의거하여 통일적으로 최저수매가격에 위탁수매계약문건을 규범화해야 하며, 위탁수매비축기업이 이에 맞추어 수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탁수매비축창고 지점 및 확장 지점의 수매 수량, 등급, 가격에 대하여 검수하고 관리감독하여 기업의 수매비축 행위를 규범화해야 함.
- 수매정도, 시장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이상상황 발생 시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이 외에도 수매자금 공급 관리 강화, 조사감독 및 처벌정도 강화, 수매사업 영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011년 식량, 면화 수입관세 할당 수량, 신청조건 및 분배 원칙 공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임시시행조치農產品進口關稅配額管理暫行辦法》에 근거하여 《2011년 식량, 면화, 수입관세 할당수량, 신청조건 및 분배원칙2011年糧食, 棉花進口關稅配額數量, 申請條件和分配原則》([2010]27호)를 공고하였음.

○ 2010년 식량, 면화 수입관세 할당 수량은 다음과 같음.

- 소맥: 963.6만 톤, 국영무역비율 90%
- 옥수수: 720만 톤, 국영무역비율 60%
- 쌀: 532만 톤(장립종쌀 266만 톤, 중단립종쌀 266만 톤), 국영무역비율 50%
- 면화: 89.4만 톤, 국영무역비율 33%

○ 농산물 수입관세할당 신청자 기본 조건

- 2010년 10월 1일까지 국가공상관리부문에 등기등록(기업법인영업 허가증 복사본 제출)

- 양호한 재무상태 및 납세기록 구비(2009년 및 2919년 관련 자료 제출)
- 2008-2010년 해관, 상공, 세무, 검역 방면에서의 무위반 기록
- 2009년 기업 정기검사 합격
-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임시시행조치農產品進口關稅配額管理暫行辦法》를 위반하지 않은 자

○ 위 조건 외에도 각 품목별 자격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품목별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음.

구분	자격 조건
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기업 ■ 국가비축기능을 갖춘 중앙기업 ■ 2010년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하루 밀 가공량이 400톤 이상인 생산기업 ■ 2010년 수입실적이 없으나 수출입경영권을 구비하고, 지역 외 경제무역 주관부문으로부터 가공무역생산능력증명을 인정받거나 밀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옥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기업 ■ 국가비축기능을 갖춘 중앙기업 ■ 2010년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옥수수를 주 원료로 하며, 연간 5만 톤 이상의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기업 ■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연간 10만 톤 이상의 옥수수를 필요로 하는 기지생산기업 ■ 2010년 수입실적이 없으나 수출입경영권을 구비하고, 지역 외 경제무역 주관부문으로부터 가공무역생산능력증명을 인정받거나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벼 및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기업 ■ 국가비축기능을 갖춘 중앙기업 ■ 2010년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식량소도매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1억 위안 이상의 식량을 판매하는 기업 ■ 연간 식량 수출입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무역 기업 ■ 2010년 수입실적이 없으나 수출입경영권을 구비하고, 지역 외 경제무역 주관부문으로부터 가공무역생산능력증명을 인정받거나 벼, 쌀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무역기업 ■ 2010년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 5만 정 이상의 방직 설비를 구비한 면사 방적 기업

- 2011년 식량, 면화 수입관세할당 신청기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1년 밀 최저수매가격 제고 통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은 재배농민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식량생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식량 판매 시 주산지에서 생산한 2011년 밀 최저수매가격 수준을 제고시키기로 결정함.
 - 《2011년 밀 최저수매가격 제고에 관한 통지關於提高2011年小麥最低收價購格的通 知》(發改電[2010]347호)
- 최저수매가격(국가표준 3등급 기준, kg 당): 하얀 밀 1.9위안, 붉은 밀 1.86위안, 혼합 밀 1.86위안
 - 2010년 대비 각각 0.1위안, 0.14위안, 0.14위안 상승한 것임.

□ 2010년도 3/4분기 농업정책관련 주요 문건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7.8	農農發 [2010]5호	농업부의 농약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 《農業部關於進一步加強農業管理工作的意見》 / 농업부
7.14	農機發 [2010]4호	국무원의 농기계화 및 농기계공업의 빠른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학습선전관철 할 것에 대한 통지 《農業部關於學習宣傳貫徹落實〈國務院關於促進農業機械化和農機工業又好又快發展的意見〉的通知》 / 농업부
7.16	農信息 [2010]47호	전국 농업정보센터주임 좌담회 개최 및 훈련반 관리에 대한 통지《關於召開全國農業信息中心主任座談會暨管理科學培訓班的通知》 / 농업부정보센터
7.17	農辦農 [2010]81호	농업부 판공청의 비배관리 5년 사업 총괄을 잘할 데 대한 통지《農業部辦公廳關於做好測土配方施肥五年工作總結的通知》 / 농업부 판공청
7.18	發改價格 [2010]1579號	농림생물질을 이용한 발전가격 정책 완비에 관한 통지《國家發展改革委關於完善農林生物質發電價格政策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7.22	發改電 [2010]273號	식량 최저수매가격 집행 및 임시비축 식용유 수매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關於嚴格執行糧食最低收購價和臨時存儲糧油收購政策有關問題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
7.29	農技辦 [2010]52號	가을걷이 생산 기술 및 재해대비 지도 서비스 활동에 대한 긴급 통지《關於全面開展秋糧生產科技抗災指導服務活動的緊急通知》 / 전국농업기술보급서비스센터

(계속)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8.4	農辦農 [2010]91호	농업부 판공청의 비배관리 보급 실시 및 시범 현 실태 조사에 대한 통지《農業部辦公廳關於測土配方施肥普及行動和示範選縣創建工作抽查的通知》/ 농업부 판공청
	國農辦函 [2010]78號	농업종합개발 토지정비부분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통지《關於開展農業綜合開發土地治理項目專題調研工作的通知》/ 국가농업종합개발판공실
8.5	財辦建 [2010]65號	농산품의 현대적 유통 시범실시에 대한 통지《關於開展農產品現代流通試點的通知》/ 재정부판공청, 상무부판공청
8.11	國家發改委, 商務部公告 [2010]18호	2010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액 재분배 공고 《2010年農產品進口關稅配額再分配公告》/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8.12	國農辦 [2010]186호	2011년 국가농업종합개발 산업화경영목 서면보고 지침 하달에 대한 통지《關於印發〈2011年國家農業綜合開發產業化經營項目申報指南〉的通知》/ 농업부 판공청
	國農辦 [2010]187호	국가농업종합개발 산업화경영 재정보조항목 농민전업합작사 서면보고서 저술 참고 요강 하달에 대한 통지《關於印發〈國家農業綜合開發產業化經營財政補助項目農民專業合作社申報書編寫參考大綱〉的通知》/ 농업부 판공청
	國農辦 [2010]188호	국가농업종합개발 산업화경영 재정보조항목 용두기업 실행가능성 연구 보고 저술 참고 요강 하달에 대한 통지《關於印發〈國家農業綜合開發產業化經營財政補助項目龍頭企業可行性研究報告編寫參考大綱〉的通知》/ 농업부 판공청
8.18	財建 [2010]48호	생돈 전출 지역 장려자금 관리 방법 하달에 대한 통지《關於印發〈生豬調出大縣獎勵資金管理辦法〉的通知》/ 재정부
8.23	農辦農 [2010]99호	2010년 벼 시비 보조정책 실시 및 추곡 생산 지도감독에 대한 통지《農業部辦公廳關於開展水稻施肥補助政策落實和秋糧生產督導的通知》/ 농업부판공청
8.25	商辦信函 [2010]1232호	2010년 추계농산물 인터넷 판매 설명회 통지《商務部辦公廳關於2010年秋季農產品網上購銷對接會的通知》/ 상무부판공청
8.26	工聯產業政策 [2010]1호	농약산업정책 《農藥產業政策》/ 공업 및 정보화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財駐蘇監 [2010]81號	절강성의 동북 중단립종벼(쌀) 세관 운송비 및 옥수수 비용 보조 심사에 대한 통지《關於對江蘇省採購東北粳稻(大米)入關運費玉米費用補貼進行審核的通知》/ 재정부 주강소재정감찰전문사무소
9.3	-	〈수산물 자원보호구 관리 방안〉에 대한 공개 자문 요청에 대한 통지《農業部關於公開征求〈水產種質資源保護區管理辦法〉(征求意见稿)意見的通知》/ 농림부어업국
9.7	發改辦能源 [2010]2177號	농촌 전력 개혁, 향상 공정 계획 관련 요구 실시에 대한 통지《國家發展改革委辦公廳關於開展農村電網改造升級工程規劃有關要求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

(계속)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9.11	發改經貿 [2010]2083號	2010년 중만생 벼 최저수매가격 집행 예비안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2010年中晚稻最低收購價執行預案的通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농업발전은행, 중국비축식량관 리총공사
	國家發改委 商務部公告 [2010]18號	2010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액 재분배에 대한 공고 《2010年農產品進口關稅配 額分配的公告》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9.14	國能新能 [2010]306號	농촌전력 개혁, 기술향상 원칙 하달에 대한 통지 《國家能源局關於印發〈農村電 網改造升級技術原則〉的通知》 / 에너지국
	農科教發 [2010]3號	전국 농·목·축·수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장려 조치 하달에 대한 통지 《農業部關於印發〈全國農牧漁業豐收獎獎勵辦法〉的通知》 / 농업부
	農質發 [2010]9號	중국녹색식품 2010 상하이박람회 개최에 대한 통지 《農業部關於舉辦中國綠色 食品2010上海博覽會的通知》 / 농업부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부
9.19	海關總署, 農業部 [2010]1452호	농약 수출입 관리 전자네트워크 시스템 정식 운영 《農藥進出口管理電子聯網核銷系統將正式聯網運行》 / 해관총서, 농업부
9.21	商務部公告 [2010]59호	2011년 화학비료 수입관세 할당액, 분배원칙 및 신청절차 공표 《公布2011年化肥關稅配額進口總量、分配原則和申請程序》 / 상무부
9.25	國家發改委 [2010]27호	2011년 식량, 면화 수입관세 할당 수량, 신청조건 및 분배 원칙 《2011年糧食、 棉花進口關稅配額數量、申請條件和分配原則》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9.28	-	“지역 시장 건설 프로젝트” 강화에 대한 통지 《關於進一步加強“萬村千鄉市場 工程”建設的通知》 / 국무부판공청, 재정부판공청
9.30	商務部公告 [2010]64호	2011년 설탕 수입관세 할당액 신청 및 분배 세칙 《2011年食糖進口關稅配額申請和分配細則》 / 상무부
10.11	發改電 [2010]347호	2011년 밀 최저수매가격 제고에 관한 통지 《關於提高2011年小麥最低收購價格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Ⅱ. 농업·농촌경제 동향

- 거시경제 동향
 - 가격 동향
 - 무역 동향
- 향진기업 동향
- 양념채소시장 동향
- 중국의 육류 수급 동향과 전망

거시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 2010년 1~9월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음.
 - 동 기간 산업별 GDP는 1차 산업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하였고, 2차 및 3차 산업도 각각 12.6%, 9.5% 증가하여 2010년 1/4분기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1~6월 중국의 농업GDP는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하였음. 2010년 1/4분기 대비 증가율폭이 소폭 감소하였음.
 - 농업부문별로는 임업GDP와 축산업GDP 증가율이 5.4%, 4.5%로 가장 높았고, 재배업GDP 증가율이 2.6%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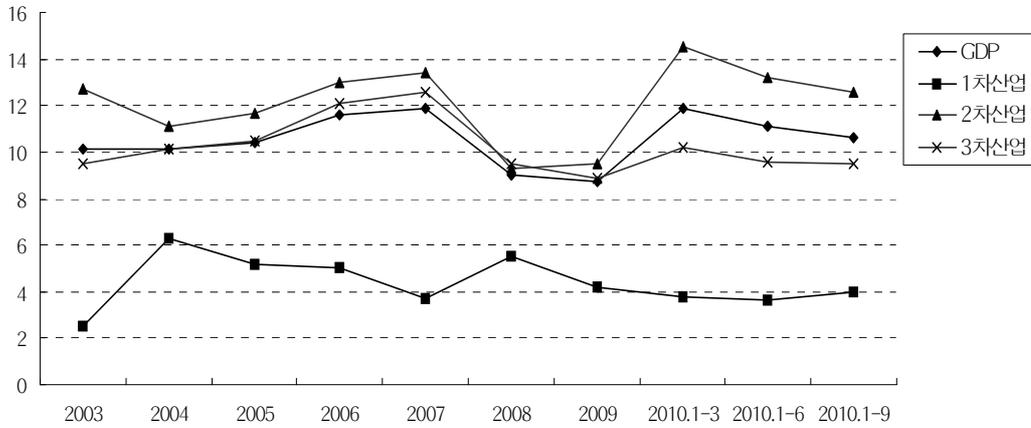
표 1.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GDP 성장률	10.4	11.6	11.9	9.0	8.7	11.9	11.1	10.6
1차산업	5.2	5.0	3.7	5.5	4.2	3.8	3.6	4.0
- 농업 전체	5.7	5.4	3.9	-	3.8	4.1	3.8	-
·재배업	4.1	5.4	4.0	-	2.2	2.9	2.6	-
·임업	3.2	5.6	6.9	-	4.9	3.6	5.4	-
·축산업	7.8	5.0	2.3	-	4.9	5.1	4.5	-
·어업	6.5	6.0	4.8	-	3.2	4.0	4.4	-
2차산업	11.7	13.0	13.4	9.3	9.5	14.5	13.2	12.6
3차산업	10.5	12.1	12.6	9.5	8.9	10.2	9.6	9.5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1. 중국의 산업별 GDP 성장률 변화 추세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2010년 1~9월 중국의 공업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16.3% 증가하였음. 2010년 1/4분기 및 2/4분기 대비 증가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경공업과 중공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6%, 17.5% 증가하였으며, 국유기업의 성장률은 15.1%로 1/4분기 이후 증가율이 감소추세에 있음.
 - 사영기업, 주식회사의 부가가치는 증가율은 각각 20.0%, 17.3%로 공업부문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였음.

표 2.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부가가치성장률	16.4	16.6	18.5	12.9	11.0	19.6	17.6	16.3
경공업	15.2	13.8	16.3	12.3	9.7	14.1	13.6	13.6
중공업	17.0	17.9	19.6	13.2	11.5	22.1	19.4	17.5
국유기업	10.7	12.6	13.8	9.1	6.9	19.9	17.7	15.1
사영기업	25.3	24.4	26.7	20.4	18.7	22.8	20.8	20.0
집체기업	12.4	11.6	11.5	8.1	10.2	13.0	10.2	9.4
- 주식합작기업	16.0	15.5	17.5	11.4	10.3	14.5	13.3	13.6
- 주식회사	17.8	17.8	20.6	15.0	13.3	20.8	18.8	17.3
- 직접투자기업	16.6	16.9	17.5	9.9	6.2	18.8	17.0	15.8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2. 고정자본 투자

- 중국의 총고정자본 투자는 2000년대 들어 도시 고정자본 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1~9월 도시 고정자본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4.5% 증가했으나 2009년 이후 증가율이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별로는 1차 산업(농림목어업)이 전년 동기대비 17.7% 증가하였으며, 2차 및 3차 산업은 각각 22.0%, 26.7% 증가하였음.
 - 1차 산업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010년 2/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2010년 1/4분기 대비 각각 0.3%포인트, 1.7%포인트 감소하였음.
 - 2차 산업 중 농부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은 2010년 2/4분기 대비 3.2%포인트, 0.3% 포인트 증가했으나, 음료제조업, 연초제조업은 2010년 2/4분기 대비 각각 6.2%포인트, 37.0%포인트 감소했음. 연초제조업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음. 3차 산업 중 숙박 및 외식업은 2010년 2/4분기 대비 4.8%포인트 증가했음.

표 3. 중국의 도시 고정자본 투자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투자 성장률	27.2	24.5	25.8	26.1	30.5	26.4	25.5	24.5
1차산업 (농림목어업)	27.5	30.7	31.1	54.5	49.9	9.7	17.8	17.7
2차산업	38.4	25.9	29.0	28.0	26.8	22.4	22.3	22.0
이 중								
- 농부식품가공업	62.9	31.6	37.6	25.7	38.2	25.5	22.7	25.9
- 식품제조업	48.2	42.6	26.1	17.8	32.4	31.5	23.6	23.9
- 음료제조업	38.2	58.2	30.2	22.4	22.4	32.4	30.9	24.7
- 연초제조업	10.5	20.8	2.4	20.9	63.7	47.5	28.0	-9.0
3차산업	20.0	23.3	23.2	24.1	33.0	30.0	28.4	26.7
이 중								
- 숙박, 외식업	55.1	37.4	41.2	30.5	34.4	20.9	22.7	27.5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3. 소비

- 2010년 1~9월 동안 소비재의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하여 2009년 이후 증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전년 동기대비 18.7%, 농촌 지역이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했음.
- 분야별로는 소매업이 전년 동기대비 18.4%, 외식업이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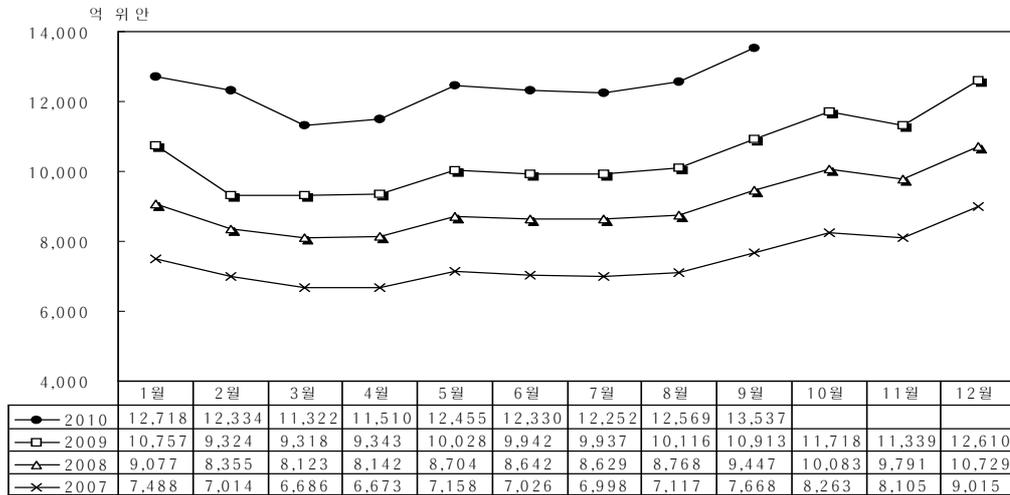
표 4. 중국의 소비재 소매 판매액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12.9	13.7	16.8	21.6	15.5	17.9	18.3	18.3	
지역별	도시	13.6	14.3	17.2	22.1	15.5	18.4	18.7	18.7
	농촌	-	-	-	-	-	15.4	15.9	15.8
업종별	소매업	-	-	-	-	-	18.1	18.4	18.4
	외식업	-	-	-	-	-	16.7	17.7	17.6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재 소매 판매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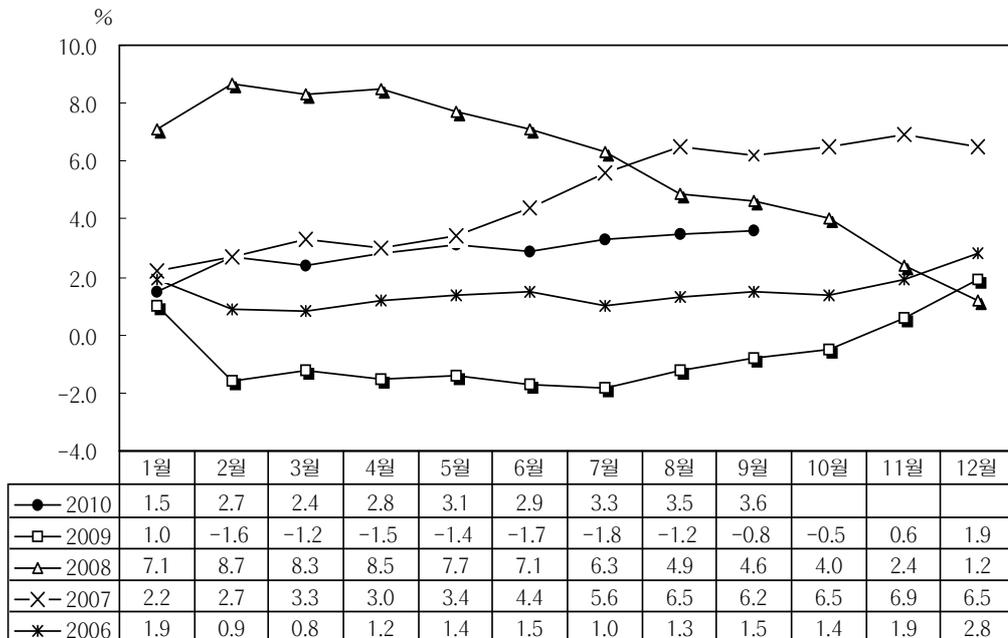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4. 물가

4.1. 소비자물가지수(CPI)

- 2010년 1~8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9로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함.
 -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 99.3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2010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함.¹
 -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었지만 1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어 2010년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하였음.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1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운데 구성요소별 가중치는 식품가격 33.2%,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3.9%, 의류 및 복장 가격 9.1%,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10.0%,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가격 6.0%,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 14.2%, 교통 및 통신 가격 10.4%, 주택(거주) 가격 13.2%임 (<http://www.8ttt8.com/jingji/w4123.htm>). 이 중 육류가금 및 그 제품 가격이 식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0% 정도이며, 돼지고기가 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정도임.

표 5.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소비자물가지수	101.5	104.8	105.9	99.3	102.2	102.6	102.9
식품	102.3	112.3	114.3	100.7	105.1	105.5	106.1
-식량	102.7	106.3	107.0	105.6	109.5	110.4	110.9
-육류·가금 및 그 제품	97.1	131.7	121.7	91.3	97.6	98.9	100.9
-가금 알	96.0	121.8	104.3	101.6	106.9	104.1	105.8
-수산물	101.2	105.1	114.2	102.5	106.4	106.1	107.0
-신선채소	108.2	107.3	110.7	115.4	120.4	120.5	120.2
-신선과일	121.5	100.1	109.0	109.1	115.9	114.1	112.2
담배·주류 및 그 용품	100.6	101.7	102.9	101.5	101.6	101.7	101.6
의류 및 복장	99.4	99.4	98.5	98.0	99.1	98.9	98.9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101.2	101.9	102.8	100.2	99.1	99.3	99.7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101.1	102.1	102.9	101.2	102.4	102.7	102.9
교통 및 통신	99.9	99.1	99.1	97.6	99.9	99.7	99.7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99.5	99.0	99.3	99.3	99.9	100.0	100.6
주택(거주)	104.6	104.5	105.5	96.4	102.9	104.0	104.1

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100 또는 전년 동기=100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2010년 1~9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식품가격, 담배·주류 및 그 용품 가격,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가격,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가격,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1%, 1.6%, 2.9%, 0.6%, 4.1% 상승하였음.

- 반면 의류 및 복장 가격,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가격, 교통 및 통신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 0.3%, 0.3% 하락하였음.

○ 2010년 1~9월 동안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6.1% 상승하였음. 이는 식품가격을 구성하는 식량, 가금알, 수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9%, 5.8%, 7.0%, 20.2%, 12.2%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임.

4.2.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 2010년 9월 기업상품가격지수는 106.1으로 전년 동월대비 6.1% 상승하였음. 기업 상품가격지수는 2008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9월부터

하락폭을 감소시키기 시작하여 2009년 1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음.

표 6.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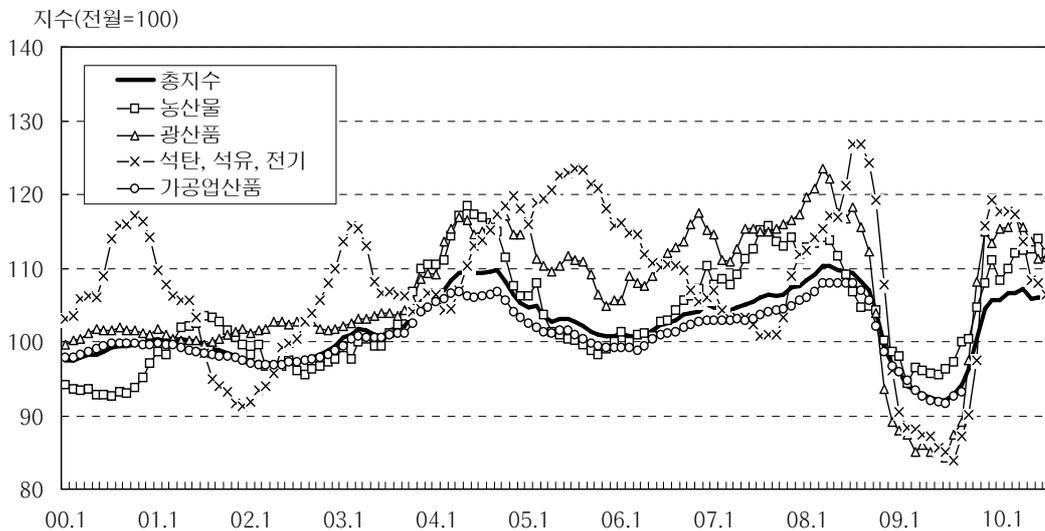
구 분	2009				2010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지수	94.1	96.3	100.4	103.4	104.5	105.7	105.6	106.6	107.1	106.6	105.9	106.0	106.1
농산물	100.0	100.3	104.7	117.7	107.9	111.1	108.3	110.0	112.0	112.5	112.6	113.9	112.0
광산물	89.2	97.4	108.1	113.8	114.9	113.4	115.4	115.6	116.8	115.5	113.5	111.2	111.4
석탄, 석유, 전기	87.2	90.1	97.5	109.4	115.8	119.2	117.7	117.6	117.3	113.5	108.4	108.0	106.4
가공업제품	93.2	-	-	-	-	-	-	-	-	-	-	-	-

주: 기업상품가격지수는 전년 동월=100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 상품별로 보면 2010년 9월 농산물과 광산물 그리고 석탄, 석유, 전기 상품의 가격지수는 각각 112.0, 111.4, 106.4로 전년 동월대비 12.0%, 11.4%, 6.4% 상승하였음.

그림 4. 중국의 기업상품가격지수(CGPI) 변화 추세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5. 무역

- 2010년 1~9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1486.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9% 증가 하였음.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2010년 1/4 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대폭 증가한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동 기간 수출은 11,346.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0,140.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2.4% 증가하여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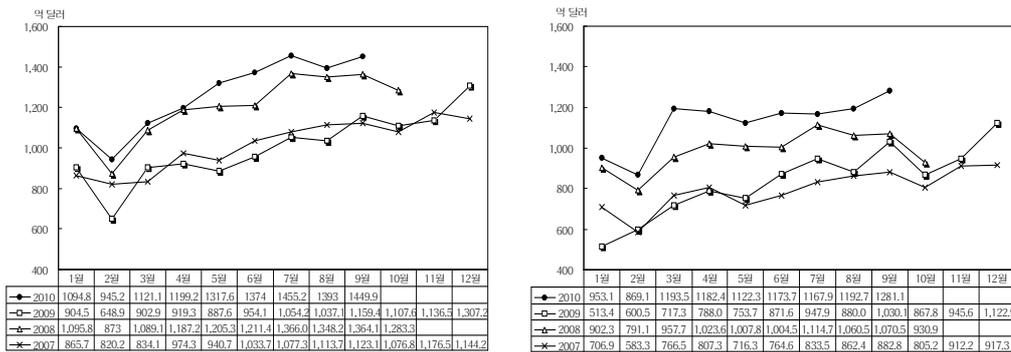
표 7. 중국의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수출입 총액	17,606.9	21,738.3	25,616.3	22,072.7	6,178.5	13,548.8	21,486.8
- 증가율(%)	23.8	23.5	17.8	-13.9	44.1	43.1	37.9
수출 총액	9,690.7	12,180.1	14,285.5	12,016.6	3,161.7	7,050.9	11,346.4
- 증가율(%)	27.2	25.7	17.2	-16.0	28.7	35.2	34.0
수입 총액	7,916.1	9,558.2	11,330.8	10,056.0	3,016.8	6,497.9	10,140.4
- 증가율(%)	20.0	20.8	18.5	-11.2	64.6	52.7	42.4
무역 수지	1,774.6	2,622.0	2,954.7	1,960.6	144.9	553.0	1,206.0
- 증가율(%)	74.0	47.7	12.5	-34.2	-76.7	-42.5	-10.4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그림 5.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추이



자료: 中國商務部(<http://zhs.mofcom.gov.cn/tongji.shtml>)

6. 금융 및 환율

- 2010년 9월 광의통화(M2)는 69조 6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8.9% 증가하였음. 2009년 10월 이후 통화량 증가 폭이 점차 감소하여 6월 이후에는 10%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9월 협의통화(M1)는 24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20.9% 증가하였음. 2009년 10월 이후 2010년 5월까지 3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 6월 이후 20%대로 증가추세가 완화되고 있음.
- 2010년 6월 시중 유통 현금(M0)은 4조 2천 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3.9% 증가하였음. 2010년 1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2월부터 다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3월부터 8월까지 15%대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9월 들어 다소 감소함.

표 8. 중국의 통화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백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2009				2010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광의통화(M2) ³	5,854	5,866	5,946	6,062	6,256	6,361	6,499	6,566	6,634	6,739	6,741	6,875	6,964
-증가율(%)	29.3	29.5	29.7	27.6	26.1	25.5	22.5	21.5	21.0	18.5	17.6	19.2	18.9
협의통화(M1) ²	2,017	2,075	2,125	2,200	2,296	2,243	2,294	2,339	2,365	2,406	2,407	2,443	2,438
-증가율(%)	29.5	32.0	34.7	32.4	39.0	35.0	30.0	31.3	30.0	24.6	22.9	21.9	20.9
유통 중 현금(M0) ¹	368	357	363	382	408	429	391	397	387	389	395	399	419
-증가율(%)	16.0	14.1	14.9	11.7	-6.8	22.2	15.7	15.7	15.2	15.8	15.5	15.9	13.9

주 1. M0: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은행 및 비은행 이외 각 단위의 보유 현금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보유한 현금의 합

2. M1: 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수시입출식 은행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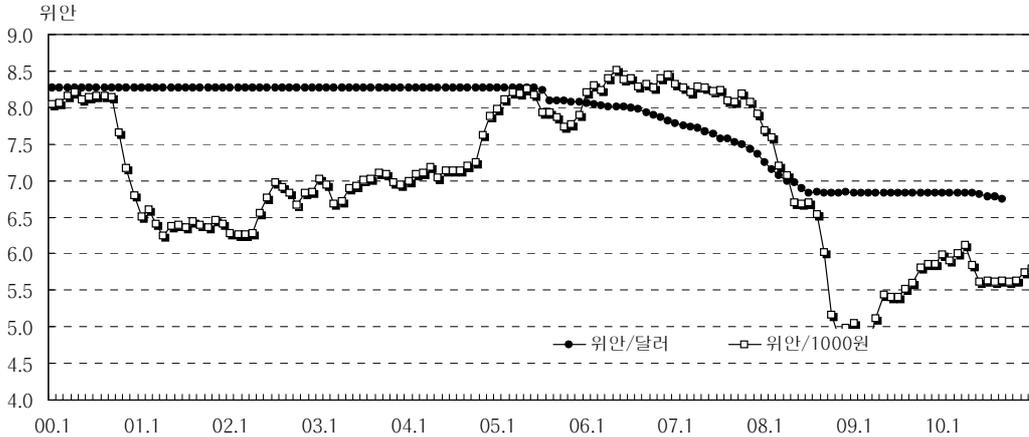
3. M2: 광의의 화폐공급량. M0+기업,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등 단위의 은행 정기예금 및 도시·농촌 주민의 은행 저축·예금.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diaochatongji/tongjishuju/>)

- 2010년 7월, 8월, 9월 위안/달러 환율은 각각 6,7775, 6,7901, 6,7462를 기록했음. 2008년 하반기 이후 위안/달러 환율은 큰 폭의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7월, 8월, 9월 위안/1,000원 환율은 각각 5,6271, 5,7504, 5,804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6. 중국 위안화(CNY) 환율 추세



주: 위안/1,000원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표 9. 중국 위안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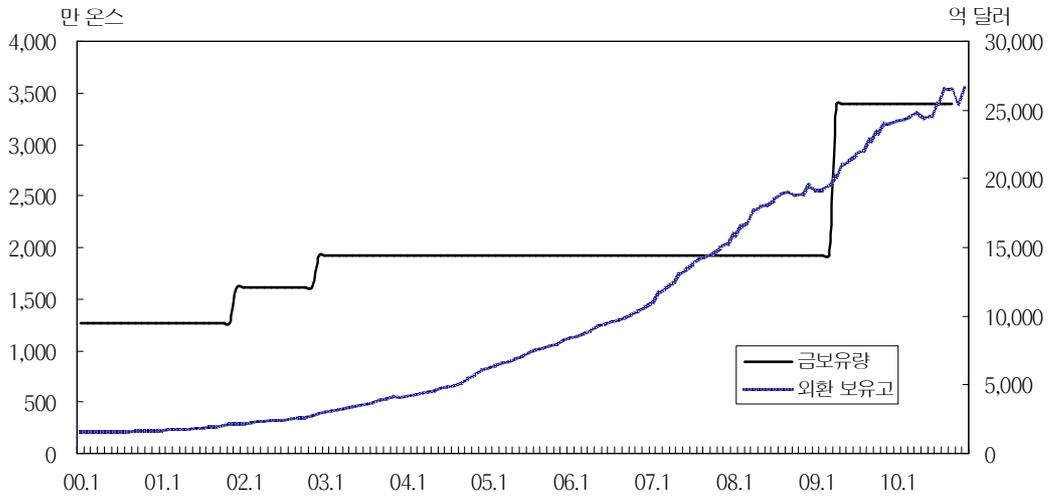
단위: 위안(월 평균)

	2009년			2010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위안/달러	6.8275	6.8274	6.8279	6.8273	6.8270	6.8264	6.8262	6.8274	6.8165	6.7775	6.7901	6.7462
위안/1000원	5.8109	5.8656	5.8555	5.9956	5.9035	6.0074	6.1166	5.8428	5.6110	5.6271	5.7504	5.8042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한국외환은행(<http://www.keb.co.kr/IBS/welcome.jsp>)

- 중국의 금 보유량은 2003년 이후 줄곧 1,929만 온스를 유지해왔으나 2009년 12월 3,389만 온스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10년 9월 외환보유량은 2조 6,483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6.5%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량 증가율은 2007년 하반기 최고조인 45%에 도달 한 후 점차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음. 2010년 1월에는 26.8%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7. 중국의 금 및 외환 보유량 추세



자료: 中國人民銀行(<http://www.pbc.gov.cn>)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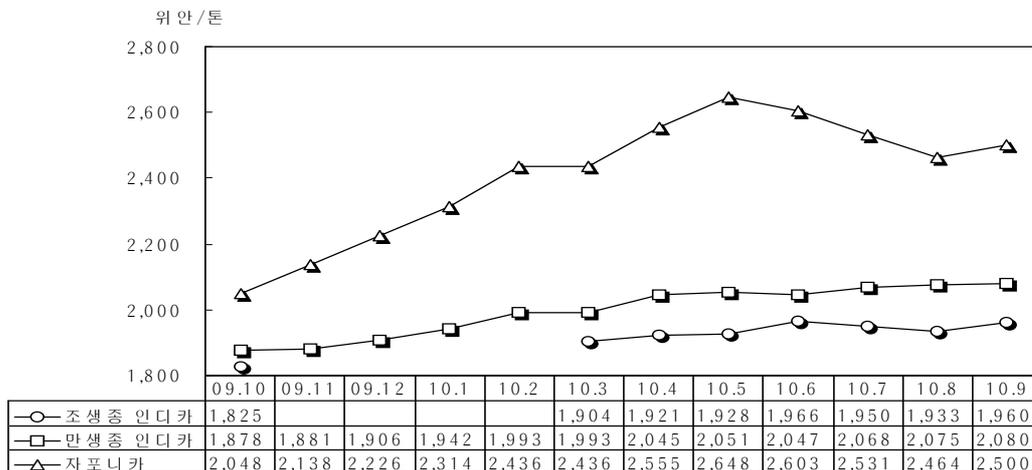
1. 식량작물

1.1. 쌀

1.1.1. 조생 장립종

- 2010년 7월, 8월, 9월 조생종 장립종쌀(조곡) 톤 당 수매가격은 1,950위안, 1,933위안, 1,96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5%, 5.5%, 6.9% 상승했음.
- 2010년 7월, 8월, 9월 조생종 장립종쌀(정곡) 톤 당 도매시장가격 2,922위안, 2,974위안, 2,98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2%, 8.2%, 8.5% 상승했음.

그림 1. 월별 벼 수매가격 추이(2009.10~2010.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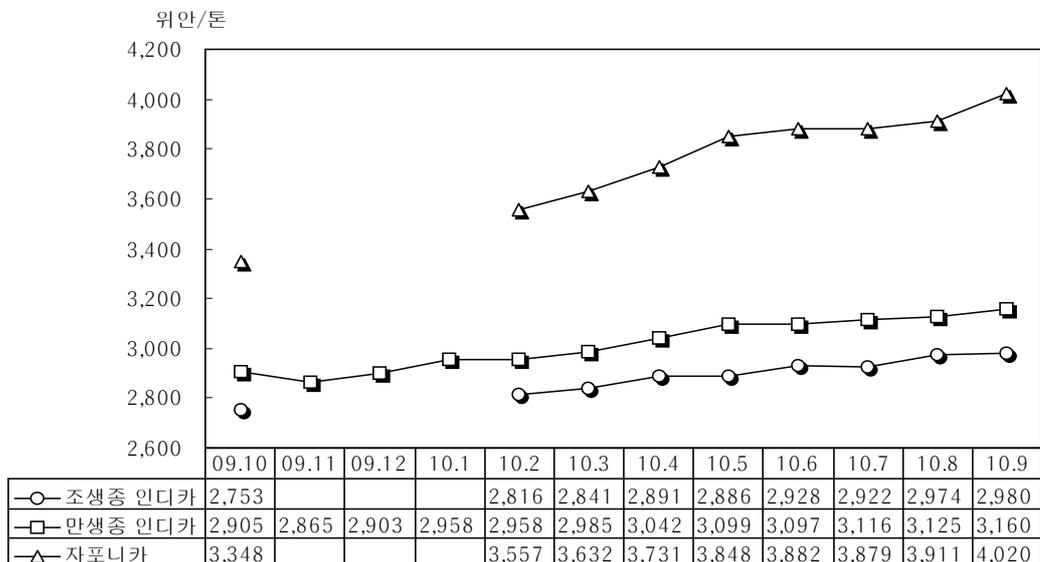
1.1.2. 만생 장립종

- 2010년 7월, 8월, 9월 만생종 장립종쌀(조곡) 톤 당 수매가격은 각각 2,068위안, 2,075위안, 2,08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4%, 6.7%, 8.7% 상승했음.
- 2010년 7월, 8월, 9월 만생종 장립종쌀(정곡) 톤 당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3,116위안, 3,125위안, 3,160위안으로 다소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5.9%, 8.3% 상승했음.

1.1.3. 중단립종

- 2010년 7월, 8월, 9월 중단립종쌀(조곡) 톤 당 평균 수매가격은 2,531위안, 2,464위안, 2,50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4%, 13.5%, 15.0% 상승했음.
- 2010년 7월, 8월, 9월 중단립종쌀(정곡) 도매시장가격은 톤 당 3,879위안, 3,911위안, 4,020위안으로 전월 대비 각각 17.1%, 16.5%, 18.3% 상승했음.

그림 2. 월별 쌀 도매시장가격 추이(2009.10~2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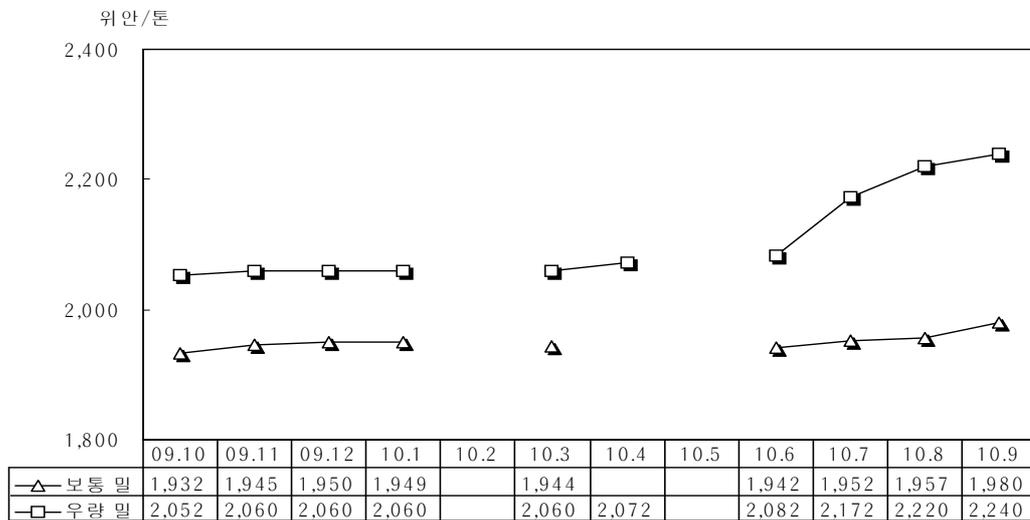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2. 밀

- 2010년 7월, 8월, 9월 정주식량도매시장의 보통 밀 톤 당 평균가격은 각각 1,952위안, 1,958위안, 1,980위안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8월, 9월의 보통 밀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3.5% 상승했음.
- 2010년 7월, 8월, 9월 정주식량도매시장의 우량 밀 톤 당 평균가격은 2,172위안, 2,220위안, 2,240위안으로 8월,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5%, 9.5% 상승했음.

그림 3. 월별 밀 도매시장가격 추이(2009.10~2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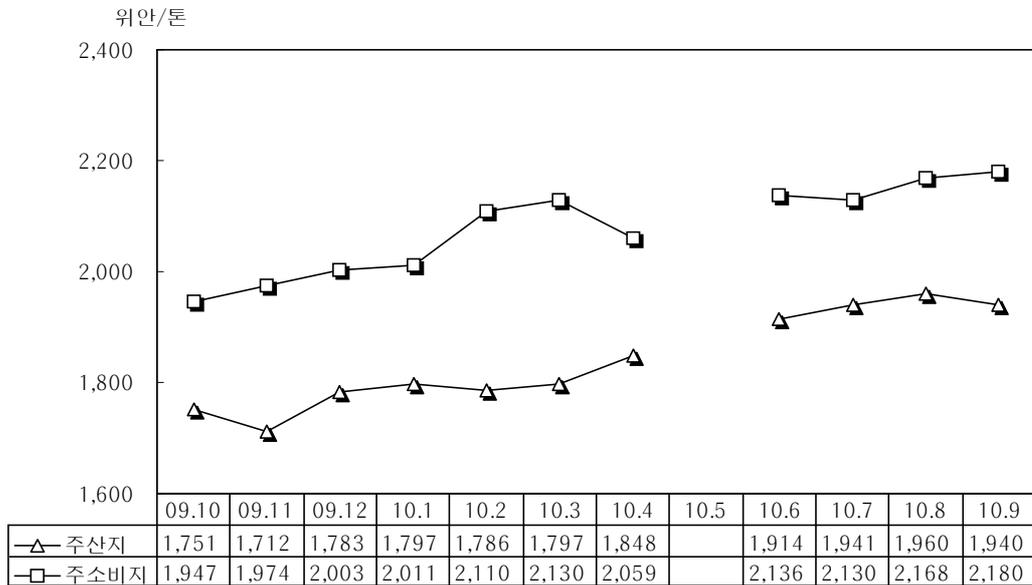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3. 옥수수

- 옥수수 주산지의 7월, 8월, 9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톤 당 각각 1,941위안, 1,960위안, 1,94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7%, 15.1%, 8.5% 상승했음.
- 옥수수 주소비지의 7월, 8월, 9월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각각 톤 당 2,130위안, 2,168위안, 2,180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2%, 14.3%, 10.2% 상승했음.

그림 4. 월별 옥수수 도매시장가격 추이(2009.10~2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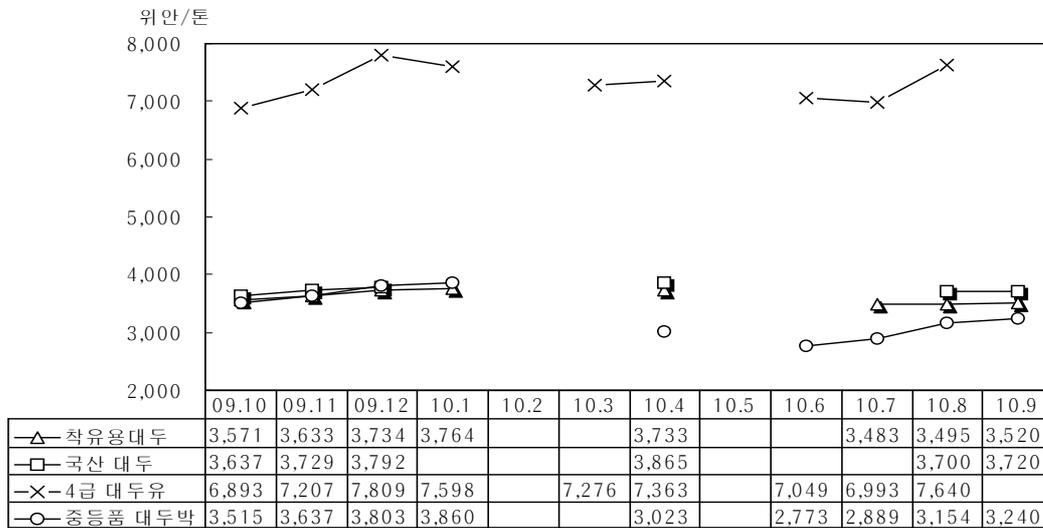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1.4. 대두

- 흑룡강성의 7월, 8월, 9월 국산 대두의 수매가격은 톤 당 각각 3,483위안, 3,495위안, 3,520위안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 산둥지역의 8월, 9월 국산 대두의 공장 수매가격은 톤 당 각각 3,700위안, 3,720위안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산둥지역의 6월, 7월, 8월 4급 대두유 공장출고가격은 각각 톤 당 7,049위안, 6,993위안, 7,640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6.8%, 6.4% 상승했음.
- 산둥지역의 7월, 8월, 9월 중등품 대두박 공장출고가격은 톤 당 2,889위안, 3,154위안, 3,24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 9.5%, 5.5% 하락했음.

그림 5. 월별 대두 및 관련 제품 가격 추이(2009.10~2010.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2. 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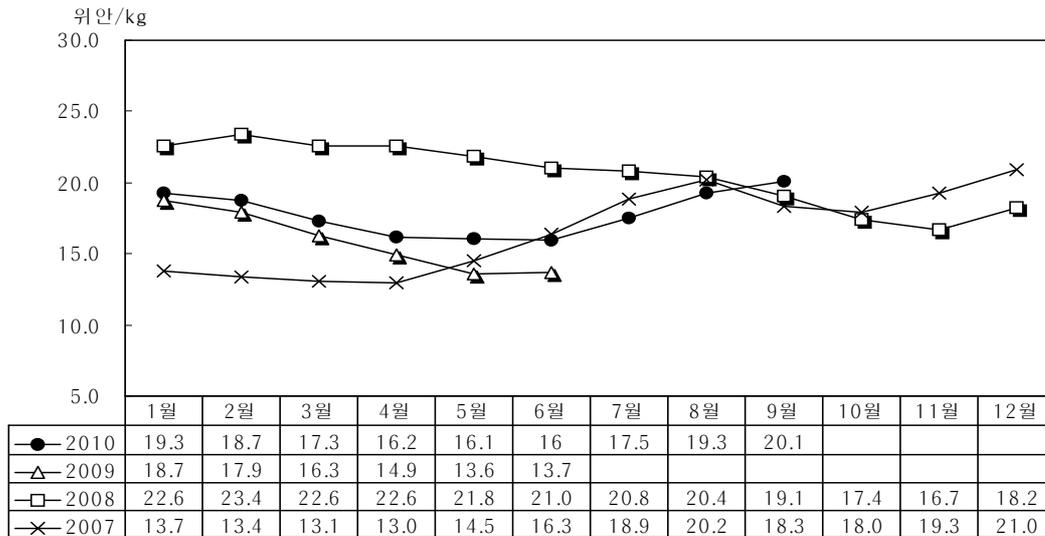
2.1. 돼지고기

- 2010년 7월 돼지고기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17.5위안으로 전월 대비 9.4% 하락했음.
 - 돼지고기 가격은 전국 각지에서 모두 상승했음.
 - 서북지역의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18.2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남지역이 kg당 16.8위안으로 가장 낮았음.

- 2010년 8월 돼지고기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19.3위안으로 전월 대비 10.0% 상승했음.
 - 돼지고기 가격은 전국 각지에서 대부분 상승했음.
 - 서북지역의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19.7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남지역이 kg당 18.9위안으로 가장 낮았음.

- 2010년 9월 돼지고기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20.1위안으로 전월 대비 4.2% 상승했음.
- 돼지고기 가격은 전국 각지에서 대부분 상승했음.
- 서북지역의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20.8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북지역이 kg당 19.0위안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6. 월별 돼지고기 가격 추이(2007.1~2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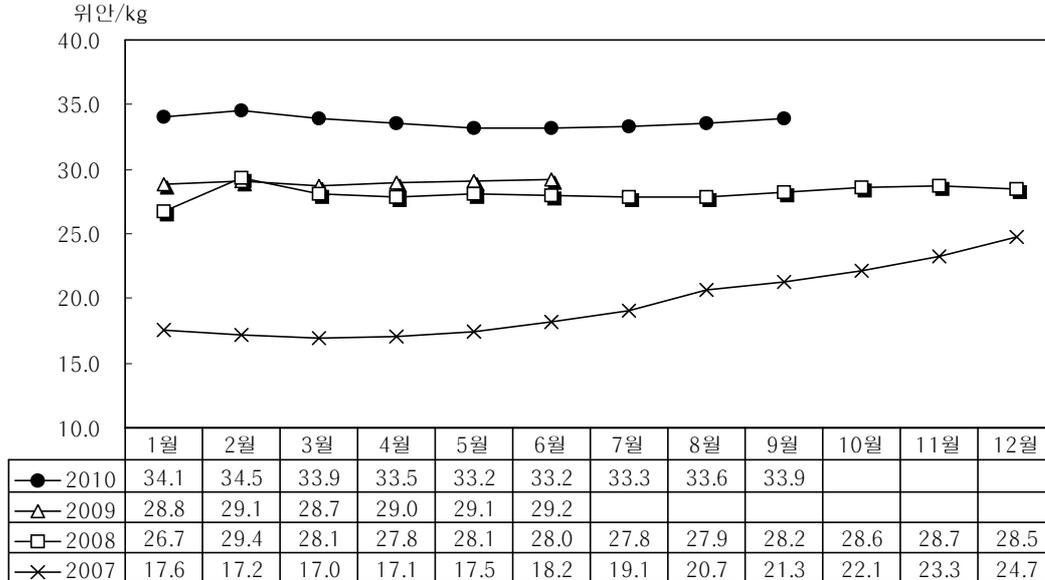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2.2. 쇠고기

- 2010년 7월, 8월, 9월 쇠고기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각각 33.3위안, 33.6위안, 33.9위안임.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 2.6%, 2.8% 상승한 것임.
- 하북(河北), 요녕(遼寧), 길림(吉林), 산둥(山東), 하남(河南) 등 주산지에서의 2010년 7월, 8월, 9월 쇠고기 평균 가격은 kg당 31.4위안, 31.6위안, 31.7위안으로 3개월 평균 31.6위안을 기록했음.
- 상해(上海), 절강(浙江), 복건(福建), 광둥(廣東), 강소(江蘇) 지역의 2010년 7월, 8

월, 9월 쇠고기평균가격은 kg당 39.3위안, 39.7위안, 40.1위안으로 3개월 평균 39.7 위안을 기록했음.

그림 7. 월별 쇠고기 가격 추이(2007.1~2010.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2.3. 양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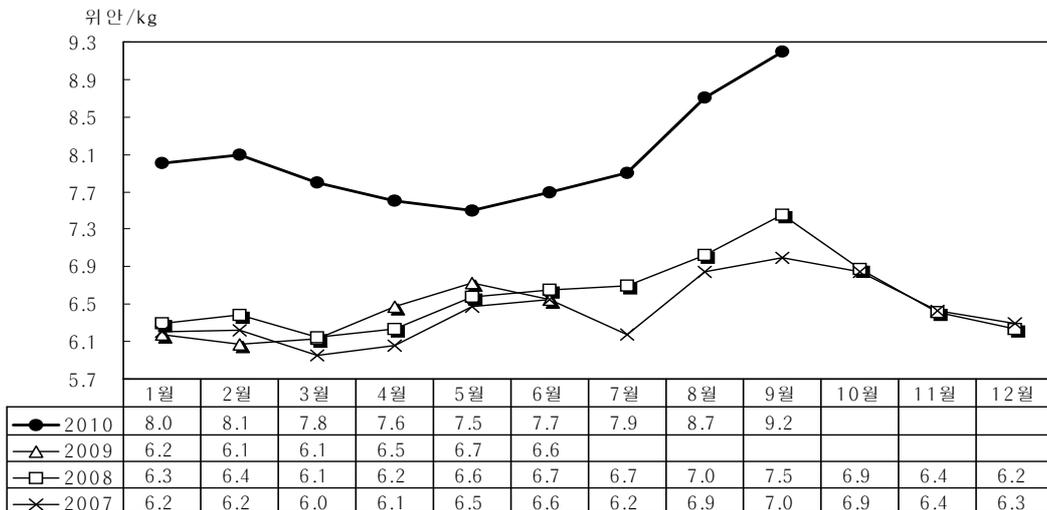
- 2010년 7월, 8월, 9월 양고기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각각 33.3위안, 33.6위안, 33.9위안임. 이는 전월 대비 각각 2.6% 상승, 2.6% 하락, 2.8% 상승한 것임.
- 하북(河北), 내몽고(內蒙古), 산둥(山東), 하남(河南), 신장(新疆) 등 주산지에서의 2010년 7월, 8월, 9월 양고기 평균 가격은 kg당 31.4위안, 31.6위안, 31.7위안으로 3개월 평균 31.6위안을 기록했음.
- 상해(上海), 절강(浙江), 복건(福建), 강서(江西), 광둥(廣東) 지역의 2010년 7월, 8월, 9월 양고기평균가격은 kg당 39.3위안, 39.7위안, 40.1위안으로 3개월 평균 39.7 위안을 기록했음.

2.4. 계란

- 2010년 7월 계란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7.9위안임. 이는 전월 대비 4.0% 상승,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한 것임.
 - 계란가격은 30개 성에서 모두 상승했음.
 - 화북, 요녕 등 10개 계란 주산지의 계란평균가격은 kg당 7.1위안으로 전월 대비 8.3%,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했음.
 - 화남지역의 계란 가격은 kg당 9.3위안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동북지역이 kg당 6.8 위안으로 가장 낮았음.

- 2010년 8월 계란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8.7위안임. 이는 전월 대비 8.4%, 전년 동월 대비 10.2% 상승한 것임.
 - 계란 가격은 전국 각지에서 모두 상승했음.
 - 화북, 요녕 등 10개 계란 주산지의 계란평균가격은 kg당 7.9위안으로 전월 대비 11.9%, 전년 동월 대비 14.7% 상승했음.
 - 화남지역의 계란 가격은 kg당 9.1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북지역이 kg당 6.3위 안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8. 월별 계란 가격 추이(2007.1~2010.9)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 2010년 9월 계란 평균 도매시장가격은 kg당 9.2위안임. 이는 전월 대비 6.6%, 전년 동월 대비 11.2% 상승한 것임.
- 계란 가격은 전국 각지에서 대부분 상승했음.
- 화북, 요녕 등 10개 계란 주산지의 계란평균가격은 kg당 8.4위안으로 전월 대비 5.9%, 전년 동월 대비 14.1% 상승했음.
- 화남지역의 계란 가격은 kg당 10.4위안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북지역이 kg당 8.2 위안으로 가장 낮았음.

표 1. 주요 축산물의 주간 도매시장가격 동향(2010.1~2010.10)

단위: 위안/kg

축산물	계란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2010.1.11-17	6.76	30.12	16.83	29.54
2010.1.18-24	6.92	30.56	16.85	29.68
2010.1.25-31	6.97	30.83	16.55	29.63
2010.2.1-7	7.01	31.11	16.2	29.78
2010.2.8-14	7.08	31.51	16.23	30.21
2010.2.15-21	7.09	31.6	15.94	30.87
2010.2.22-28	6.86	31.52	15.61	29.82
2010.3.1-7	6.68	31.48	15.39	29.58
2010.3.8-14	6.65	31.38	14.89	29.29
2010.3.15-21	6.61	31.55	14.61	29.41
2010.3.22-28	6.56	31.61	14.11	29.33
2010.3.29-4.4	6.52	31.26	13.78	29.24
2010.4.5-4.11	6.50	31.59	13.82	28.98
2010.4.12-4.18	6.47	31.81	13.68	29.09
2010.4.19-4.25	6.49	31.76	13.83	28.93
2010.5.3-5.9	6.54	31.91	14.07	29.12
2010.5.10-5.16	6.54	32.21	13.95	29.10
2010.5.17-5.23	6.38	32.49	13.86	29.07
2010.5.24-5.30	6.46	32.36	13.84	29.31
2010.5.31-6.6	6.55	32.18	13.80	29.40
2010.6.7-6.13	6.54	32.19	13.96	29.07
2010.6.14-6.20	6.70	31.87	13.97	29.08
2010.6.21-6.27	6.74	32.49	14.18	29.30

(계속)

축산물	계란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2010.6.28-7.4	6.70	32.49	14.47	29.22
2010.7.5-7.11	6.79	32.20	14.81	29.40
2010.7.12-7.18	6.92	32.18	15.66	29.45
2010.7.19-7.25	7.22	31.97	16.29	29.51
2010.7.26-8.1	7.61	32.38	16.91	29.59
2010.8.2-8.8	7.75	32.24	17.05	29.62
2010.8.9-8.15	7.91	32.56	17.09	29.71
2010.8.16-8.22	8.05	32.52	17.52	29.95
2010.8.23-8.29	8.23	32.39	17.47	30.15
2010.8.30-9.5	8.29	32.54	17.49	30.14
2010.9.6-9.12	8.39	32.65	17.75	30.12
2010.9.13-9.19	8.37	32.74	17.73	29.88
2010.9.20-9.26	8.29	32.61	17.81	30.00
2010.10.4-10.10	8.01	32.55	17.70	30.00

자료: 農業部. 2010.1~10. “農業部2010年第1~40周批發市場鮮活農產品交易情況周報”

참고자료

- 農業部. 7~9월 “稻米市場監測信息”
- 農業部. 7~9월 “小麥市場監測信息”
- 農業部. 7~9월 “玉米市場監測信息”
- 農業部. 7~9월 “大豆市場監測信息”
- 農業部. 7~9월 “2010年全國畜產品, 飼料價格情況”
- 農業部. 7~10월 “農業部1~40周批發市場鮮活農產品交易情況周報”
-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xxfb/index.htm>)

무역 동향

1. 한·중 간 농산물무역

- 2010년 1~9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량은 332.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고, 수출액은 528.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3.0%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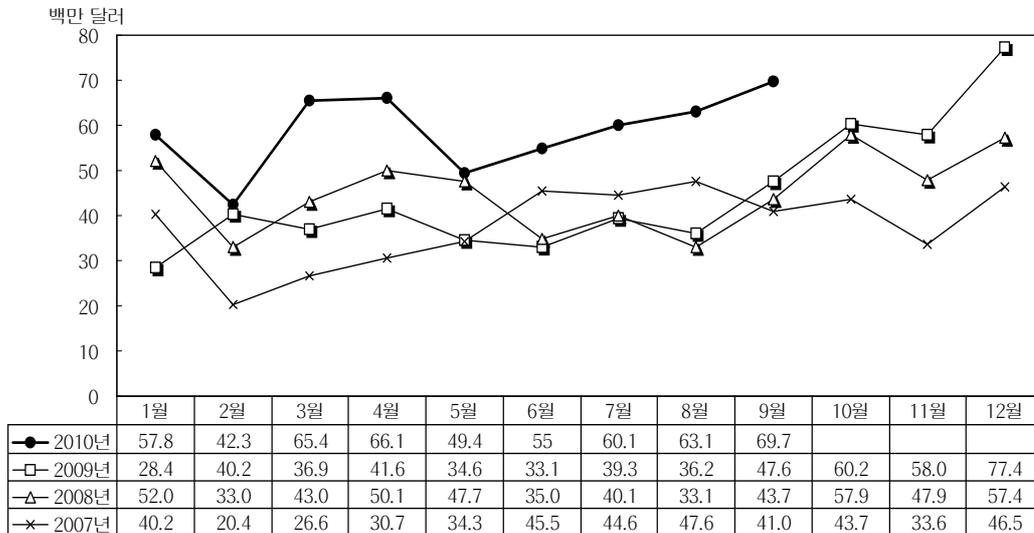
표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2006	2007	2008	2009	2010		
					1-3월	1-6월	1-9월
·수출 총액	335.6	452.1	536.6	565.2	165.2	335.7	528.3
- 증가율(%)	△1.2	34.7	18.7	4.8	56.8	51.1	43.0
·농산물	216.4	257.4	300.3	326.7	94.8	204.4	306.2
- 증가율(%)	17.3	18.9	16.7	7.8	54.6	44.7	36.8
·임산물	37.7	30.4	31.5	74.3	25.0	36.7	62.9
- 증가율(%)	△6.9	△19.4	3.6	135.5	834.4	172.2	23.6
·축산물	5.3	6.8	14.5	18.6	4.6	6.3	13.7
- 증가율(%)	△13.9	27.4	113.4	28.4	113.5	△3.5	9.9
·수산물	76.1	157.5	190.3	145.7	13.0	88.3	145.6
- 증가율(%)	△29.9	106.9	20.8	△23.4	23.2	45.1	76.7
·수입 총액	3,236.1	4,173.4	3,627.1	3,676.0	1,031.8	2,119.4	3,061.8
- 증가율(%)	2.6	29.0	△13.1	1.3	24.8	16.8	14.6
·농산물	1,550.8	2,375.2	1,950.0	1,702.0	475.7	936.3	1,342.8
- 증가율(%)	△11.7	53.2	△17.9	△12.7	8.4	1.6	5.6
·임산물	554.8	625.0	587.8	1,077.9	257.9	602.0	910.3
- 증가율(%)	42.9	12.7	△6.0	83.4	38.4	30.9	20.2
·축산물	93.5	100.5	85.0	42.2	11.0	25.1	37.2
- 증가율(%)	31.3	7.5	△15.5	△50.4	0.4	15.5	19.8
·수산물	1,036.9	1,072.7	1,004.6	853.8	287.1	555.9	77.5
- 증가율(%)	10.5	3.4	△6.3	△15.0	50.6	35.0	26.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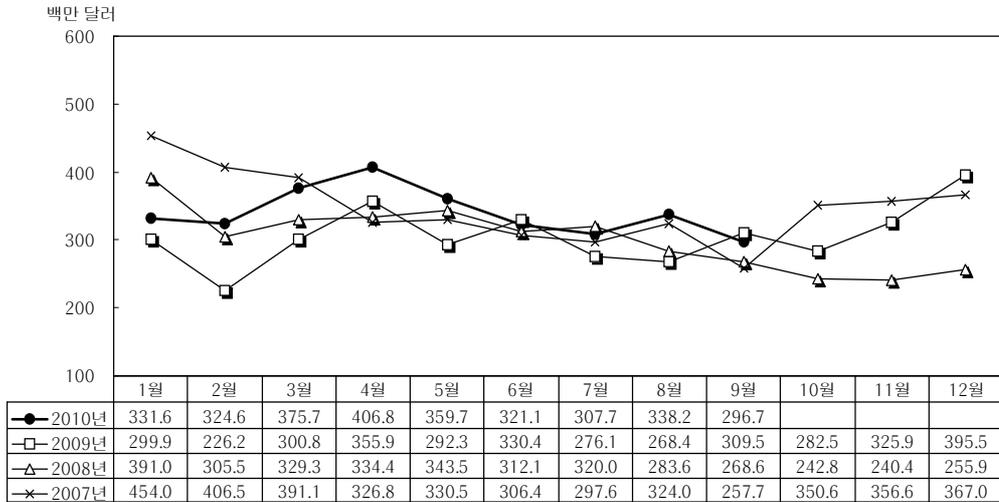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추세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 2010년 1~9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액 가운데 농산물이 306.2백만 달러로 57.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수산물이 145.6백만 달러로 27.6%, 임산물이 62.9백만 달러로 11.9%, 축산물이 6.3백만 달러로 2.6%를 차지했음.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수산물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6.8%, 23.6%, 9.9%, 76.7% 증가했음.
- 2010년 1~9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량은 4,990.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고, 수입액도 3,061.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했음.
- 2010년 1~9월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액 가운데 농산물이 1,342.8백만 달러로 43.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임산물이 910.3백만 달러로 29.7%, 수산물이 771.5백만 달러로 25.2%, 축산물이 37.2백만 달러로 1.2%를 차지했음.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6%, 20.2%, 19.8%, 26.2% 증가했음.

그림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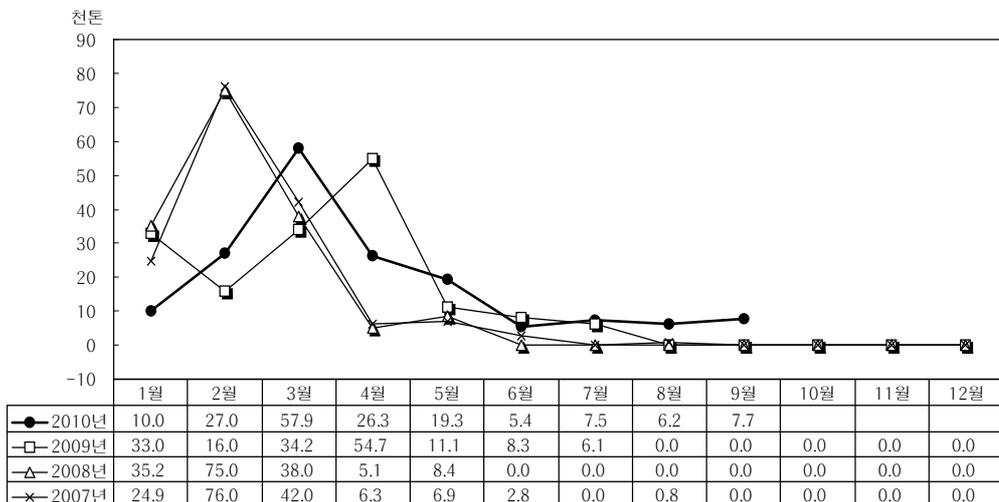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1. 쌀

- 2010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쌀(AG11101) 수입은 167.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13,239.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음.

그림 3. 한국의 중국산 쌀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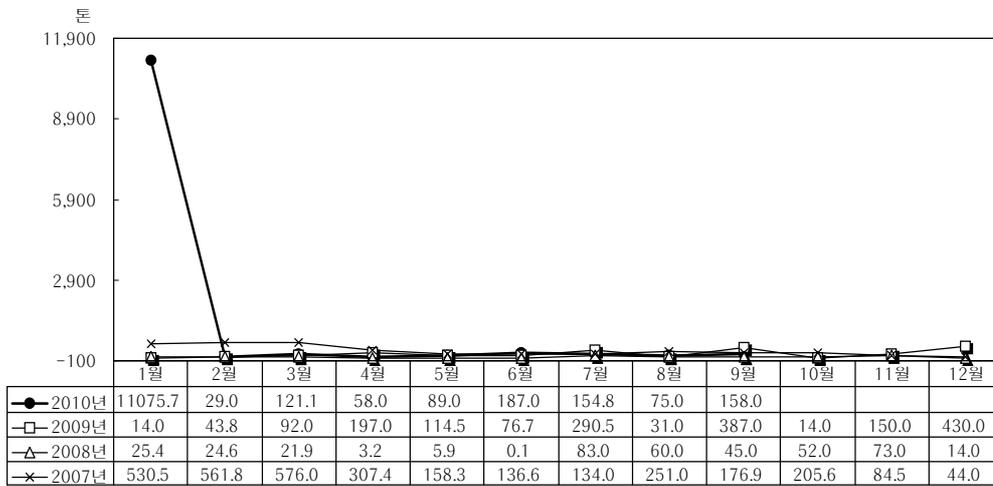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2. 옥수수

- 2010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AG11105) 수입은 11.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8.5%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333.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8.4% 증가했음.
- 2010년 7월, 8월, 9월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액은 각각 7.1만 달러, 3.3만 달러, 7.7만 달러임.

그림 4. 한국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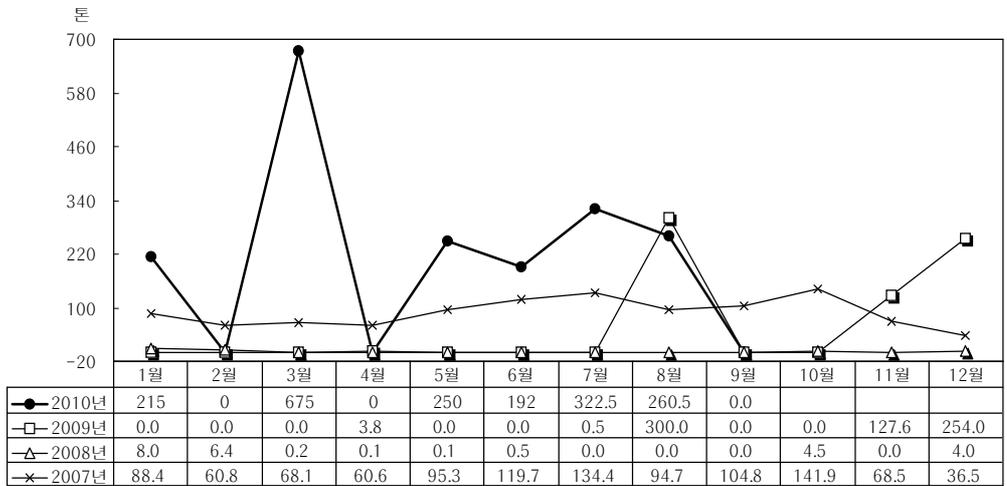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3. 밀

- 2010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밀(AG11103) 수입은 1,915.3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9.2%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9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5.8% 증가했음.
- 2010년 7월, 8월 한국의 중국산 밀 수입액은 각각 17.8만 달러, 13.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725.9%, 18.4% 증가했음.

그림 5. 한국의 중국산 밀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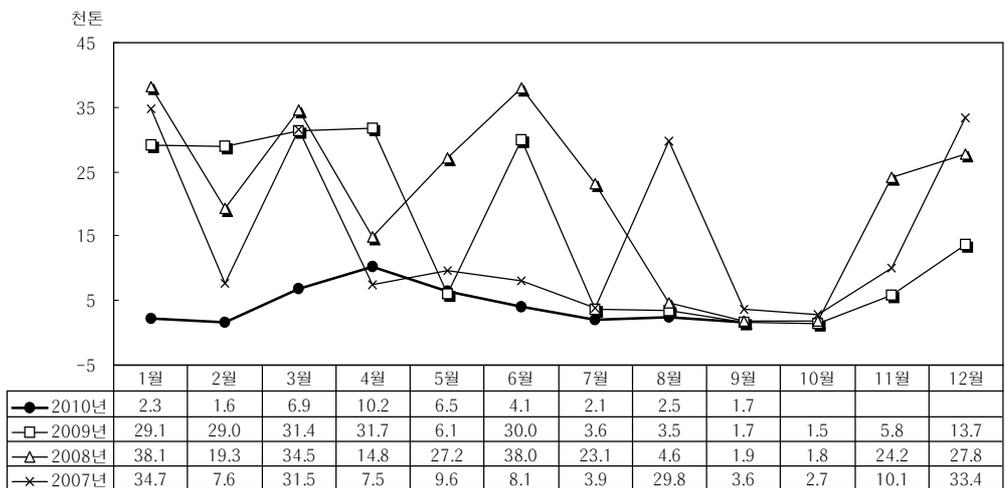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4. 대두

- 2010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대두(AG11301) 수입은 37.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2% 감소했고, 수입액도 2,693.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3% 감소했음.

그림 6. 한국의 중국산 대두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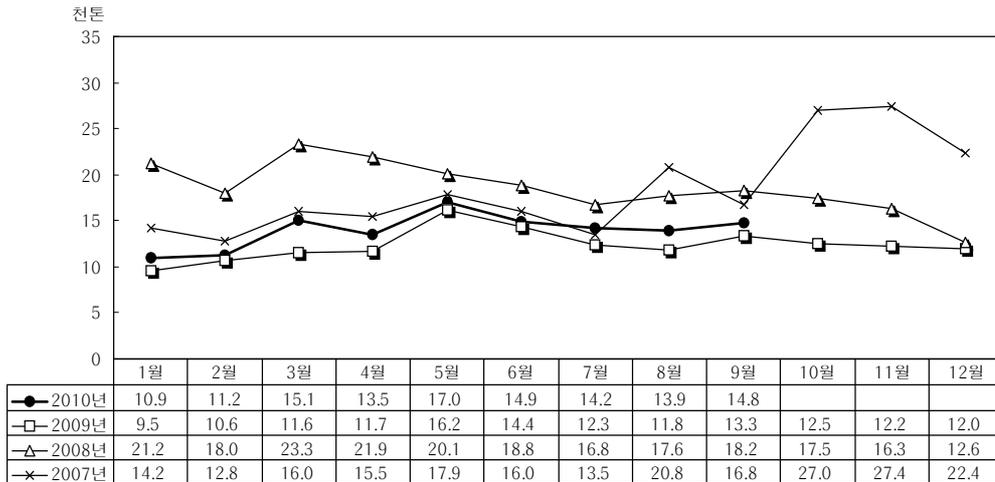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5. 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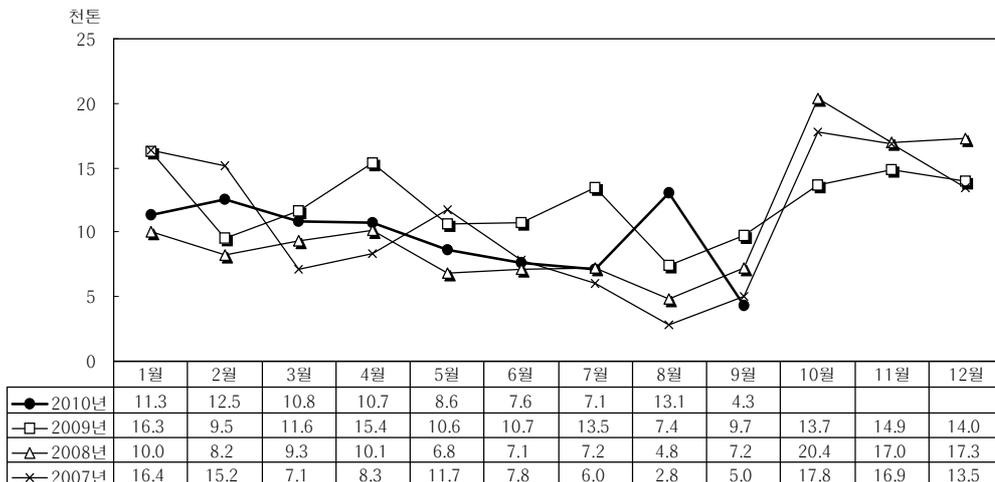
- 2010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김치(AG12105) 수입은 125.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고, 수입액도 6,433.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했음.

그림 7. 한국의 중국산 김치 수입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그림 8. 한국의 중국산 고추 수입 추이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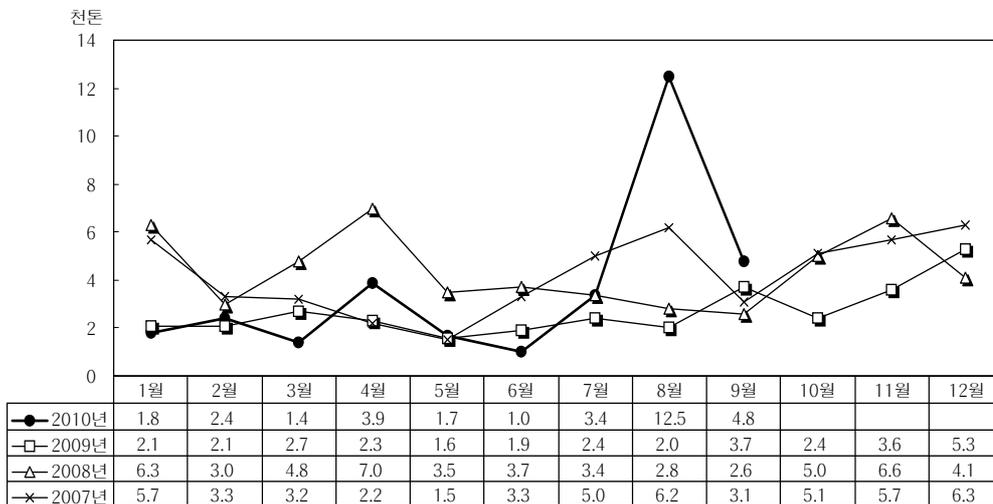
1.6. 고추

- 2010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고추(AG12161) 수입은 88.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했음. 수입액은 6,521.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음.
- 2010년 2월 이후 중국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8월 잠시 상승했지만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1.7. 마늘

- 2010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마늘(AG12144) 수입은 32.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9%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3,996.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3.1% 증가했음.
- 2010년 7월, 8월, 9월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액은 각각 327.3만 달러, 2,005.2만 달러, 702.8만 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9.3% 증가, 1,934.4% 증가, 396.7% 감소한 것임.

그림 9.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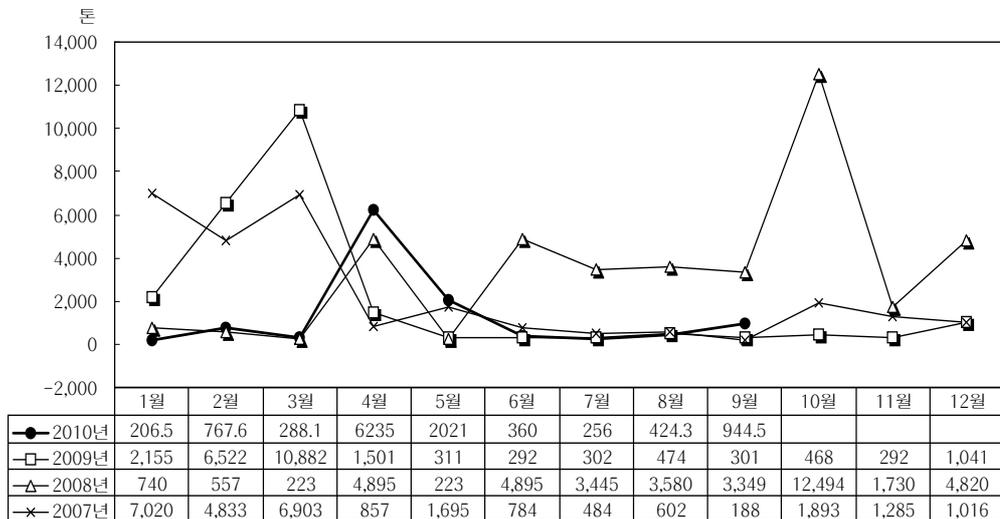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8. 양파

- 2010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양파(AG12141) 수입은 11.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4% 감소했고, 수입액도 495.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했음.
- 2010년 7월, 8월, 9월 한국의 중국산 양파 수입액은 각각 15.7만 달러, 28.5만 달러, 50.8만 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증가, 59.5% 증가, 98.9% 감소한 것임.

그림 10. 한국의 중국산 양파 수입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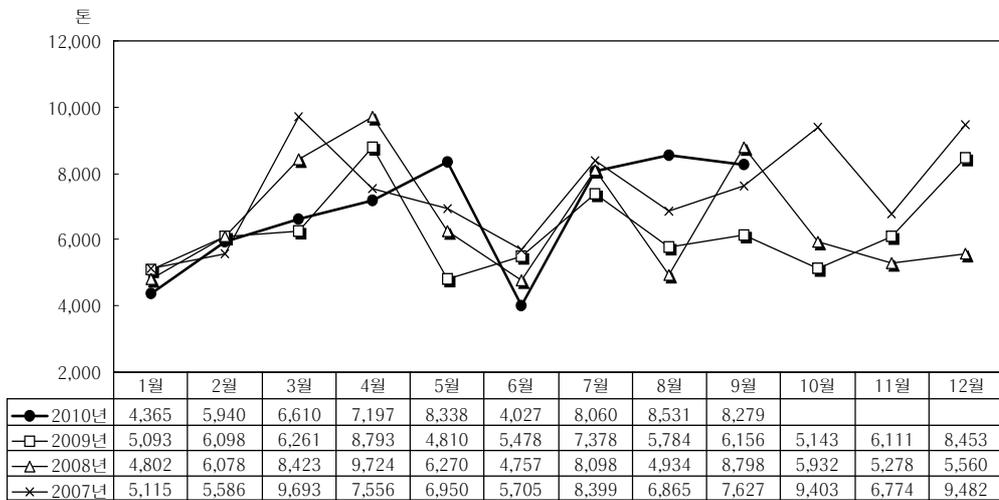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9. 당근

- 2010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당근(AG12123) 수입은 61.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고, 수입액도 2,814.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음.
- 2010년 7월, 8월, 9월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액은 각각 310.0만 달러, 330.1만 달러, 337.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6% 감소, 0.9% 증가, 0.4% 감소했음.

그림 11. 한국의 중국산 당근 수입 추세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2. 중국의 농산물 무역

2.1. 개요

- 2010년 1~6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55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했음.
 - 수출액은 21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고, 수입액도 33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음.
 - 2010년 6월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10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함. 수출액은 3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함. 수입액은 6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함.
- 2010년 1월~6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미국, 홍콩, 한국, 독일 순임. 수출액은 각각 42.6억 달러, 25.4억 달러, 18.6억 달러, 16.7억 달러, 8.3억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0%, 16.1%, 16.0%, 20.4%, 11.7% 증가한 것임.

표 2. 중국의 국가별 농산물 수출 현황, 2010.1~6

단위: 만 달러, %

국 가	2010.4	2010.5	2010.6	2010.1-6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아시아	224,856.4	227,797.1	232,086.6	1,295,740.7	23.7
홍콩	32,488.3	34,382.2	33,360.8	186,019.7	16.0
인도네시아	11,246.8	10,475.5	14,062.3	69,515.1	46.2
일본	75,422.0	76,906.9	83,192.2	426,858.8	20.0
말레이시아	12,072.7	12,413.5	12,279.2	72,935.1	41.9
한국	30,970.4	29,690.7	23,685.7	167,125.8	20.4
아프리카	14,026.0	15,241.5	14,624.4	7,085.3	-2.5
이집트	1,231.5	1,219.1	1,701.5	7,793.5	48.0
모로코	1,679.3	2,177.3	1,975.7	9,386.8	5.4
나이지리아	1,148.1	1,625.5	933.0	8,315.2	-1.3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9	2,392	2,509.4	13,601.7	4.5
유럽	65,798.5	73,024.8	68,358.5	392,861.0	17.0
독일	13,725.1	16,040.4	13,517.7	83,087.3	11.7
네덜란드	7,524.3	8,205.4	6,851.3	45,748.6	11.9
러시아연방	11,996.0	12,749.5	10,953.1	67,270.3	23.0
남아메리카	10,735.7	12,470.8	10,924.9	69,798.5	47.6
브라질	2,738.7	3,300.5	2,396.2	20,419.2	215.6
멕시코	3,309.9	3,375	3,487.8	20,639.1	33.1
베네수엘라	319.1	639.5	779.6	2,900.9	-54.8
북아메리카	49,025.0	54,607.6	54,494.5	287,981.9	16.7
캐나다	5,337.2	5,825.8	6,442.4	33,606.4	21.6
미국	43,687.8	48,781.6	48,046.9	254,344.4	16.1
대양주	5,588.4	6,613.4	7,596.5	38,073.5	31.6
오스트레일리아	4,250.7	5,141.7	6,125.2	29,600.3	24.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3. 중국의 국가별 농산물 수입 현황, 2010.1~6

단위: 만 달러, %

국 가	2010.4	2010.5	2010.6	2010.1~6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아시아	396,443.30	135,953.2	120,441.9	798,279.7	70.0
인도	81,209.30	17,999.0	9,390.8	133,381.9	312.6
인도네시아	58,140.20	17,961.0	19,914.8	117,052.8	15.3
말레이시아	89,250.20	30,489.9	34,262.8	185,146.6	62.3
우즈베키스탄	17,498.60	5,411.1	105,876.4	37,239.6	187.2
태국	59,583.80	32,022.8	-77,149.2	137,879.1	93.7
베트남	22,151.40	5,341.2	3,507.7	40,385.5	-7.0
아프리카	37,719.00	16,792.4	12,177.5	84,277.0	62.3
에티오피아	5,939.40	3,260.3	2,785.2	14,870.7	15.4
남아프리카공화국	8,157.30	3,168.5	2,795.1	16,691.2	107.1
짐바브웨	6,637.50	1,638.0	16.5	10,828.9	16.2
유럽	152,243.10	53,559.8	54,484.2	314,236.6	44.8
프랑스	30,670.60	12,224.9	13,558.6	66,104.6	27.9
네덜란드	12,851.20	5,051.0	5,478.5	28,279.3	52.1
러시아연방	46,626.00	13,805.4	7,048.2	84,985.7	36.0
남아메리카	120,315.40	203,214.2	296,098.5	737,183.7	18.2
아르헨티나	22,491.40	29,965.5	88,364.3	143,795.0	-17.2
브라질	38,823.70	145,920.6	184,422.3	459,756.6	35.1
북아메리카	661,295.30	113,988.6	100,965.4	1,059,202.6	28.3
캐나다	51,103.50	28,036.3	29,116.5	134,725.0	11.4
미국	608,576.30	85,814.3	71,623.9	922,252.5	31.1
대양주	137,386.80	51,877.5	60,817.8	303,779.4	66.5
오스트레일리아	82,386.40	32,171.6	37,939.2	185,850.6	64.7
뉴질랜드	54,397.30	19,658.1	22,592.6	116,950.3	69.2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 2010년 1~6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시장은 미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으로 수입액은 각각 92.2억 달러, 45.9억 달러, 18.5억 달러, 18.5억 달러, 14.4억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1% 증가, 35.1% 증가, 62.3% 증가, 64.7% 증가, 17.2% 감소한 것임.
- 2010년 1~6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은 산둥, 광둥, 복건, 절강, 요녕으로 수출액은 각각 54.2억 달러, 23.8억 달러, 22.5억 달러, 17.2억 달러, 16.2억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5.1%, 13.1%, 47.5%, 20.6%, 12.3% 증가한 것임.
- 2010년 1~6월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지역은 산둥, 광둥, 강소, 상해, 북경으로 수입액은 각각 56.2억 달러, 44.5억 달러, 43.2억 달러, 36.8억 달러, 35.7만 달러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1%, 22.3%, 46.1%, 31.4%, 48.2% 증가한 것임.

표 4. 중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출 현황, 2010.1~6

단위: 만 달러, %

지역	2010년 1~6월	2009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북경(北京)	50,930.0	57,542.6	-11.5
천진(天津)	46,221.4	39,979.5	15.6
하북(河北)	55,629.3	47,759.5	16.5
요녕(遼寧)	161,583.0	143,854.9	12.3
길림(吉林)	50,323.0	50,188.2	0.3
흑룡강(黑龍江)	34,716.3	33,021.6	5.1
상해(上海)	68,968.5	54,699.4	26.1
강수(江蘇)	115,153.1	82,612.7	39.4
절강(浙江)	171,676.4	142,293.2	20.6
복건(福建)	224,599.9	152,246.1	47.5
산둥(山東)	542,205.0	433,501.5	25.1
광둥(廣東)	237,778.7	210,317.4	13.1
광서(廣西)	39,300.6	36,610.9	7.3
사천(四川)	30,547.2	23,621.0	29.3
운남(雲南)	57,366.9	41,010.4	39.9
신강(新疆)	39,345.8	37,085.8	6.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표 5. 중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입 현황, 2010.1~6

단위: 만 달러, %

지역	2010년 1~6월	2009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북경(北京)	356,540.0	240,506.2	48.2
천진(天津)	165,011.1	100,124.8	64.8
하북(河北)	95,277.9	99,411.9	-4.2
요녕(遼寧)	132,207.5	95,424.5	38.5
상해(上海)	368,363.9	280,337.4	31.4
강소(江蘇)	432,343.3	296,004.5	46.1
절강(浙江)	203,195.7	111,894.9	81.6
복건(福建)	154,683.5	106,502.1	45.2
산둥(山東)	562,040.3	376,958.8	49.1
광둥(廣東)	444,691.6	363,654.4	22.3
광서(廣西)	83,097.4	85,930.2	-3.3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2.2. 품목별 수출입

2.2.1. 곡물

- 2010년 1~6월 곡물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9.8%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6.8억 달러로 51.9% 증가하여 3.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 2010년 1~6월 곡물 수출량은 66.4만 톤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수입량은 248.4만 톤으로 전년 대비 60.7% 증가했다.

가. 쌀

- 2010년 1~6월 중국의 쌀 수출은 347.4천 톤으로 전년 대비 24.2% 감소했다. 수출액은 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5% 감소하였으며, 평균 단가는 톤 당 696.5 달러로 전년 대비 0.4% 하락했다.
 - 2010년 6월 중국 쌀 수출은 18.3천 톤으로 전월 대비 46.7%, 전년 동기 대비 70.4% 증가했다. 수출액은 0.1억 달러로 전월 대비 46.8%, 전년 동기 대비 69.9%

감소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756.0 달러로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하였음.

- 2010년 1~6월 중국 쌀의 주요 수출 국가는 한국, 일본, 홍콩,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순으로, 각각 14.9만 톤, 4.2만 톤, 2.6만 톤, 1.9만 톤, 0.9만 톤을 수출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감소, 26.7% 감소, 21.4% 증가, 55.0% 증가, 71.9% 감소한 것임.
- 2010년 1~3월 중국 쌀의 주요 수출 지역은 북경, 길림, 흑룡강 지역으로 각각 22.8만 톤, 5.0만 톤, 4.2만 톤을 수출하였음.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4% 감소, 30.6% 감소, 13.4% 증가한 것임.

표 6. 2010년 1~6월 중국의 국가별 쌀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267,825.7	20,125.7	-8.6	-15.1
한국	149,225.0	10,700.0	-6.4	-19.6
일본	41,871.0	4,260.6	-26.7	-21.6
북한	7,405.9	305.6	-73.7	-70.7
홍콩	25,582.5	1,776.8	21.4	37.4
파키스탄	3,628.5	843.0	70.5	71.7
아프리카	47,453.2	2,101.1	-67.6	-71.5
나이지리아	9,982.5	515.1	-71.9	-74.9
코트디부아르	18,600.0	651.0	55.0	-4.0
유럽	11,994.0	654.8	-29.1	-21.7
러시아	6,536.0	336.7	-34.4	-27.7
대양주	20,001.0	1,308.1		
남아메리카	87.0	4.5	-95.4	-95.7
독립국가연합	20,294.0	1,074.9	-20.7	--22.3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표 7. 2010년 1~6월 중국의 지역별 쌀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228,995.3	16,087.9	-32.4	-29.8
내몽고(內蒙古)	3,081.0	124.4		
요녕(遼寧)	6,247.6	266.7	127.4	144.0
길림(吉林)	50,081.8	3,476.8	-30.6	-29.6
흑룡강(黑龍江)	41,692.0	2,423.3	13.4	-5.8
절강(浙江)	2,501.0	108.4		
안휘(安徽)	1,865.0	368.7	-2.8	2.3
호북(湖北)	1,798.2	398.2	63.6	56.1
호남(湖南)	540.3	150.7	8.3	19.3
사천(四川)	495.9	113.1	-82.0	-78.1
운남(雲南)	615.4	108.2		
신강(新疆)	8,611.0	412.6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나. 옥수수

- 2010년 1~6월 중국 옥수수 수출은 80.4천 톤으로 전년 대비 35.8% 증가했음. 수출액은 2,021.4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6% 증가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51.5 달러로 전년 대비 4.3% 상승했음.
 - 2010년 6월 중국 옥수수 수출은 9.4천 톤으로 전월 대비 41.6% 감소했음. 수출액은 254.9만 달러로 전월 대비 39.4% 감소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70.6 달러로 전월 대비 3.7% 상승했음.
- 2010년 1~6월 중국의 대 아시아 옥수수 수출은 80.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음. 수출 금액은 2,021.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0% 증가함.
 -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과 한국으로 각각 27.5천 톤, 11.0천 톤 수출함.
- 2010년 1~6월 중국 옥수수의 주요 수출 지역은 북경, 길림, 요녕 지역으로 각각 22.2천 톤, 44.8천 톤, 12.1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8.1%

증가, 0.9% 감소, 59.7% 증가한 것임.

표 8. 2010년 1~6월 중국의 국가별 옥수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80,389.5	2,021.3	36.0	43.0
일본	27,487.9	662.1	104,376.9	9,695.3
북한	25,473.2	662.1	-51.6	-47.3
한국	11,046.7	271.2	5,423.4	4,420.2
몽고	980.0	27.3		
파키스탄	109.6	19.8	405,825.9	734,344.4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표 9. 2010년 1~6월 중국의 지역별 옥수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22,227.6	527.5	248.1	233.5
길림(吉林)	44,828.8	1,136.9	-0.9	4.1
요녕(遼寧)	12,052.1	291.3	59.7	71.6
내몽고(內蒙古)	980.0	27.3		
흑룡강(黑龍江)	149.4	5.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2.2.2. 축산물

- 2010년 1~6월 축산물 수출액은 2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으며, 수입액도 46.2억 달러로 54.0% 증가하여 25.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0.0% 증가한 것임.

가. 돼지고기

- 2010년 1~5월 중국 돼지고기 수출은 42.2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음. 수출액은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985.6.4달러

로 전년 대비 25.9% 하락했음.

- 2010년 5월 중국 돼지고기 수출은 8.9천 톤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했음. 수출액은 2,595.1만 달러로 전월 대비 2.6% 감소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904.8달러로 전월 대비 2.9% 상승했음.

○ 2010년 1~5월 중국의 대 아시아 돼지고기 수출은 39.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함. 수출 금액은 12,015.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함.

○ 2010년 1~5월 중국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 지역은 호남, 광둥, 사천, 하남 지역으로 각각 8.9천 톤, 8.8천 톤, 8.4천 톤, 4.7천 톤을 수출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 감소, 5.5% 증가, 24.3% 증가, 178.9% 증가한 것임.

표 10. 2010년 1~5월 중국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가	2010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39,444.3	12,015.5	10.3	5.7
홍콩	33,054.6	9,858.7	11.9	5.8
마카오	1,775.8	544.5	11.7	15.0
싱가포르	448.9	359.1	-68.5	-35.2
키르기스스탄	3,657.2	1,120.6	18.2	12.3
아르메니아	578.0	127.6	2,212.2	1,652.4
터키	153.2	32.3	197.5	170.0
브루나이	99.7	26.3	107.7	115.1
유럽	2,678.0	564.3	1,685.4	2,059.1
아르메니아	578.0	127.6	2,212.2	1,652.4
우크라이나	1,000.0	229.8		
알바니아	1,100.0	207.0	780.0	997.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96.4	436.8	-52.7	-22.9
독립국가연합	5,235.2	1,478.0	67.9	47.1
아프리카	52.0	11.5	-59.1	-62.2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5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표 11. 2010년 1~5월 중국의 지역별 돼지고기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역	2010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길림(吉林)	1,421.0	329.6	-28.1	-35.2
흑룡강(黑龍江)	1,089.6	266.6	492.2	451.6
산둥(山東)	1,638.6	404.8	-13.9	-36.2
하남(河南)	4,680.9	1,217.7	178.9	166.9
호남(湖南)	8,908.6	3,169.0	-4.1	-2.3
광둥(廣東)	8,818.5	2,736.9	5.5	1.0
중경(重慶)	3,369.2	887.3	64.9	49.4
사천(四川)	8,361.3	2,164.0	24.3	10.4
운남(雲南)	3,073.0	1,081.0	-11.6	-2.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5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나. 닭고기 및 제품

- 2010년 1~6월 중국 닭고기 및 제품 수출은 169.0천 톤으로 전년 대비 35.1% 증가했음. 수출액은 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2,959.8 달러로 전년 대비 3.3% 하락했음.
 - 2010년 6월 중국 닭고기 및 제품 수출은 33.9천 톤으로 전월 대비 5.6%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음. 수출액은 1.0억 달러로 전월 대비 9.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36.9% 증가했음. 평균단가는 톤당 3,052.7 달러로 전월 대비 3.9% 상승,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했음.
- 2010년 1~6월 중국의 대 아시아 닭고기 및 제품 수출은 164.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0% 증가했음. 수출 금액은 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함.
- 2010년 1~6월 중국 닭고기 및 제품의 주요 수출 지역은 산둥(山東), 광둥(廣東), 요녕(遼寧), 북경(北京)지역, 흑룡강(黑龍江)으로 각각 7.0만 톤, 3.8만 톤, 2.0만 톤, 0.8만 톤, 0.7만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9% 증가, 10.3% 감소, 61.2% 증가, 25.4% 증가, 66.4% 증가한 것임.

표 12. 2010년 1~6월 중국의 국가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64,767.7	48,854.0	35.0	30.3
일본	80,702.1	31,067.2	39.7	32.0
홍콩	60,835.9	12,626.2	19.0	16.4
한국	2,041.5	761.6	16.4	19.2
키르기스스탄	1,648.6	320.0	-20.7	-18.0
마카오	1,378.5	312.0	-5.0	-16.4
바레인	2,704.6	553.2	97.4	110.1
말레이시아	10,765.1	2,318.6	112.6	99.7
아프리카	301.0	51.3	140.7	138.9
유럽	3,489.3	1,033.1	21.4	31.1
네덜란드	694.5	216.1	-57.4	-56.0
영국	1,161.3	353.5	334.4	395.6
남아메리카	359.5	68.3		
대양주	96.1	18.5	13.6	10.8
독립국가연합	1,996.1	383.6	-31.9	-28.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1,444.5	2,483.5	116.6	104.3
중동	5,549.4	1,062.1	151.3	156.4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표 13. 2010년 1~6월 중국의 지역별 닭고기 및 제품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7,741.1	3,155.7	25.4	28.3
하북(河北)	4,890.2	1,790.4	51.0	43.4
요녕(遼寧)	20,312.1	5,066.5	61.2	55.5
길림(吉林)	6,806.1	2,326.5	-5.1	-9.3
흑룡강(黑龍江)	7,062.1	2,969.0	66.4	50.5
상해(上海)	1,234.3	446.1	44.2	32.9
산둥(山東)	70,247.1	22,038.6	63.9	47.1
하남(河南)	6,182.4	1,905.8	73.3	73.7
호남(湖南)	4,618.5	1,089.8	2,583.6	3,827.2
광둥(廣東)	37,682.0	8,800.5	-10.3	-11.4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2.2.3. 채소류

- 2010년 1~6월 채소 수출액은 4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2억 달러로 62.1% 증가하여 40.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음.
- 2010년 1~6월 채소 수출량은 388.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했으며, 수입량은 6.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8.9% 증가했음.

가. 대파

- 2010년 1~6월 중국 대파 수출은 33.8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1.3% 증가했음. 수출액은 2,448.8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2% 증가하였으며, 평균 단가는 톤 당 725.3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1% 상승했음.
- 2010년 6월 중국 대파 수출은 5.9천 톤으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음. 수출액은 45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2% 증가했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759.7달러로 전월 대비 1.1% 상승했음.

표 14. 2010년 1~6월 중국의 국가별 대파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33,396.6	2,435.5	41.9	54.4
일본	22,807.8	2,223.3	52.5	52.3
홍콩	7,936.0	92.3	11.5	15.7
말레이시아	27.8	2.8	-75.9	-42.6
한국	369.5	23.9	183.4	377.9
마카오	384.8	6.9	86.8	66.5
싱가폴	5.0	0.7	-84.6	-76.7
필리핀	49.9	4.0		
인도네시아	81.0	5.7	189.3	127.8
베트남	1,732.7	75.9	100.7	456.5
유럽	368.0	13.3	6.7	28.4
독립국가연합	368.0	13.3	6.7	28.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896.8	89.1	78.1	246.5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蔥』

표 15. 2010년 1~6월 중국의 지역별 대파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흑룡강(黑龍江)	368.1	13.3	6.7	28.7
상해(上海)	2,720.0	207.4	81.2	59.4
강소(江蘇)	64.0	4.5	1,476.4	2,108.4
절강(浙江)	348.7	62.0	56.0	131.0
복건(福建)	16,010.9	1,508.2	79.0	83.2
산둥(山東)	4,020.2	465.4	-12.3	-5.9
호북(湖北)	36.3	2.8		
광둥(廣東)	8,275.3	96.3	13.0	14.1
운남(雲南)	1,834.6	83.5	105.9	416.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 2010년 1~6월 중국의 대 아시아 대파 수출은 33.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했음. 수출 금액은 2,435.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4% 증가했음.
- 2010년 1~6월 중국 대파의 주요 수출 지역은 복건(福建), 광둥(廣東), 산둥(山東) 지역으로 각각 16.0천 톤, 8.3천 톤, 4.0천 톤을 수출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0% 증가, 13.0% 증가, 12.3% 감소한 것임.

나. 마늘

- 2010년 1~5월 중국 마늘 수출은 573.8천 톤으로 전년 대비 22.6% 감소했음. 수출액은 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8.8% 증가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1,304.2 달러로 전년 대비 234.4% 상승했음.
 - 2010년 5월 중국 마늘 수출은 75.7천 톤으로 전월 대비 32.8%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했음.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전월 대비 22.6% 감소, 전년 동기 대비 106.6% 증가했음. 평균단가는 톤당 1,502.3 달러로 전월 대비 15.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77.5% 상승했음.

표 16. 2010년 1~5월 중국의 국가별 마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347,401.5	42,503.9	-30.1	142.9
인도네시아	127,785.3	16,257.7	-23.0	190.7
파키스탄	13,986.5	1,965.5	-67.7	17.5
일본	13,154.8	2,255.2	-9.2	53.7
베트남	52,709.8	3,466.3	-10.5	101.9
태국	19,441.1	2,990.3	7.7	178.8
말레이시아	29,474.1	3,820.0	-19.2	248.2
북아메리카	51,159.7	7,905.1	-8.5	96.1
미국	45,115.5	6,940.6	-7.4	90.1
유럽	57,670.5	7,849.8	-20.3	129.1
네덜란드	14,206.7	2,198.5	-40.1	119.9
남아메리카	93,905.8	13,217.9	22.2	391.8
브라질	56,800.1	8,228.6	98.4	710.1
아프리카	18,204.1	2,496.3	-45.8	162.1
대양주	5,471.8	861.8	-6.2	171.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257,228.7	29,764.1	-18.6	180.2
유럽연맹27국	38,319.8	5,520.8	-25.2	108.1
중동	45,464.3	6,400.2	-37.3	210.2
유럽연맹25개국	37,967.9	5,478.8	-24.8	108.8
유럽연맹15개국	33,805.4	4,946.7	-29.4	99.3
독립국가연합	19,360.7	2,270.1	-6.3	197.9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5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 2010년 1~5월 중국의 마늘의 주요 수출 국가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순으로, 각각 12.7만 톤, 5.7만 톤, 5.3만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0% 감소, 98.4% 증가, 10.5% 감소한 것임.
- 2010년 1~5월 중국 마늘의 주요 수출 지역은 산둥(山東), 강소(江蘇), 광서(廣西), 하남(河南), 복건(福建), 지역으로 각각 33.6만 톤, 8.9만 톤, 3.2만 톤, 2.4만 톤, 2.1만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6% 감소, 11.2% 감소, 14.5% 감소, 0.2% 증가, 32.8% 감소한 것임.

표 17. 2010년 1~5월 중국의 지역별 마늘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북경(北京)	690.1	110.8	-51.8	41.8
천진(天津)	1,669.1	179.7	-87.5	-68.3
하북(河北)	1,159.2	136.2	38.5	169.0
산서(山西)	159.0	24.2	20.0	614.6
내몽고(內蒙古)	847.6	41.3	76.6	58.4
요녕(遼寧)	2,566.9	334.2	-27.5	129.5
길림(吉林)	1,413.2	254.6	-49.5	314.4
흑룡강(黑龍江)	2,023.1	113.1	-56.9	-53.3
상해(上海)	8,657.6	1,183.0	-22.0	56.2
강소(江蘇)	89,956.5	11,026.2	-11.2	232.9
절강(浙江)	3,261.1	440.3	13.2	117.9
안휘(安徽)	6,500.2	902.2	-16.0	113.5
복건(福建)	21,312.5	2,972.4	-32.8	127.7
산둥(山東)	335,869.6	46,595.9	-26.6	162.8
하남(河南)	24,421.9	3,545.4	0.2	318.4
호북(湖北)	231.3	22.3	246.6	647.4
광둥(廣東)	21,643.7	2,846.0	-27.9	95.5
광서(廣西)	32,293.4	1,324.8	-14.5	19.7
해남(海南)	483.6	108.2	165.7	1,551.5
사천(四川)	1,253.9	182.0	9,292.4	43,910.2
운남(雲南)	8,714.8	1,397.2	42.4	204.8
서장(西藏)	1,315.5	77.1	71.9	72.2
섬서(陝西)	1,586.5	218.2	2,474.2	6,132.0
신강(新疆)	5,678.7	794.4	207.8	886.0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5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2.2.4. 기타

가. 표고버섯

- 2010년 1~5월 중국 표고버섯 수출은 22.4천 톤으로 전년 대비 105.6% 증가했음. 수출액은 24,13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1.9% 증가하였으며, 평균단가는 톤당

10,777.0달러로 전년 대비 56.6% 상승했음.

- 2010년 5월 중국 표고버섯 수출은 4.8천 톤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90.5% 증가했음. 수출액은 5,946.1억 달러로 전월 대비 16.8%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69.0% 증가했음. 평균단가는 톤당 12,401.8 달러로 전월 대비 6.9%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1.2% 상승했음.

○ 2010년 1~5월 중국의 대 아시아 표고버섯 수출은 18.1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3% 증가함. 수출 금액은 20,413.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8.5% 증가함.

표 18. 2010년 1~5월 중국의 국가별 표고버섯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국 가	2010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아시아	18,053.8	20,413.1	131.3	248.5
일본	5,801.4	5,412.8	28.8	71.5
베트남	2,194.9	3,044.6	694.1	656.2
한국	1,837.4	1,384.9	64.4	140.2
싱가폴	932.2	1,290.4	391.9	558.9
태국	1,770.5	2,409.9	130.8	378.3
말레이시아	1,802.5	1,589.5	628.6	655.7
홍콩	2,754.4	3,916.7	813.0	862.2
북아메리카	2,952.9	2,272.4	25.0	84.7
미국	2,696.8	2,065.6	17.0	72.9
유럽	1,120.0	1,094.4	88.4	245.5
대양주	177.8	216.9	54.7	189.8
남아메리카	69.3	98.2	366.0	512.7
아프리카	25.7	44.9	830.3	1,216.2
동남아시아국가연합	7,190.0	9,082.6	365.5	548.6
유럽연맹15개국	883.9	769.0	58.8	154.9
중동	26.1	32.4	16.1	108.8
독립국가연합	148.9	218.6	388.1	2,591.6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5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중국농업동향

- 2010년 1~5월 중국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 홍콩, 미국, 베트남 순으로 각각 5.8천 톤, 2.8천 톤, 2.7천 톤, 2.2천 톤을 수출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8%, 813.0%, 17.0%, 694.1% 증가한 것임.
- 2010년 1~5월 중국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 지역은 호북(湖北), 복건(福建), 절강(浙江), 하남(河南) 지역으로 각각 6.2천 톤, 4.8천 톤, 4.8천 톤, 2.4천 톤을 수출했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2.4%, 59.0%, 53.0%, 149.4% 증가한 것임.

표 19. 2010년 1~5월 중국의 지역별 표고버섯 수출 현황

단위: 톤, 만 달러, %

지 역	2010년 1~5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진(天津)	46.6	34.9	3.6	26.4
하북(河北)	19.8	8.5	-45.7	-4.3
요녕(遼寧)	783.9	320.5	18.7	27.5
길림(吉林)	164.5	205.6	-46.7	-21.6
상해(上海)	2,233.9	1,695.1	52.2	288.9
절강(浙江)	4,755.4	2,420.5	53.0	111.5
복건(福建)	4,833.3	6,262.1	59.0	111.6
산둥(山東)	269.0	124.3	163.2	129.5
하남(河南)	2,374.4	3,718.5	149.4	177.8
호북(湖北)	6,198.8	8,811.2	1,122.4	1,520.4
광둥(廣東)	363.5	425.1	-41.9	-4.6
운남(雲南)	206.4	53.9	1,089.3	960.6
신강(新疆)	119.2	24.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1~5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2.3. 2010년 1~7월 농산물 무역 동향

- 2010년 1~7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은 65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했음.
 - 수출액은 26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했고, 수입액도 391.8억 달러

로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했음.

표 20. 2010년 1~7월 중국의 농산물 품목별 무역 동향

단위: 만 톤, %

품목	수입		수출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곡물	296.0	66.0	75.6	-5.9
쌀	20.5	42.6	40.1	-21.1
옥수수	28.2	5600.0	9.3	30.7
밀	102.3	100.0	13.1	24.3
보리	138.9	26.7	-	-
면화	171.2	97.6	-	-
설탕	71.4	-17.2	6.2	60.6
식용유지	3,215.4	11.8	54.8	-27.8
식용식물유	449.8	-11.9	5.7	13.9
채소	8.3	57.5	467.9	2.7
과일	163.4	10.2	264.1	-2.1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2010년 8월, 『2010년1-7月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참고자료

農業部, 2010.06. “2010년1-6月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農業部, 2010.08. “2010년1-7月我國農產品進出口情況”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4~6월, 『中國進出口月度統計報告』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4~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雞肉及制品』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4~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米』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4~5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蒜』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4~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大蔥』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4~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食品』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4~6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玉米』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4~5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豬肉』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2010년 4~5월, 『中國出口月度統計報告-香菇』

향진기업 동향

1. 2010년 1~8월 향진기업 기본 현황

- 2010년 1~8월 전국 향진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6조 6,3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1.8% 포인트 상승하였음.
 - 이 중 공업부문 부가가치는 4조 5,83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0%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1.8% 포인트 상승하였음.
- 2010년 1월~8월 전국 향진기업의 총 매출액은 27조 3,39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전년 동기대비 1.3% 포인트 상승했음.
 - 동 기간 이윤 총액은 1조 6,595억 위안으로 10.6%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4.2% 포인트 상승했음.
 - 동 기간 납세 총액은 6,980억 위안으로 10.1%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4.1% 포인트 상승했음.
 - 동 기간 수출 총액은 2조 2,74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상승했음.
 - 동 기간 근로임금 지불 총액은 1조 2,0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했고 증가폭 또한 전년 동기대비 3.9% 포인트 상승했음.

2. 2010년 1~8월 향진기업 특징

- 규모 이상 향진공업기업의 빠른 발전 속도
 - 금년에는 중동서부 각 지역의 규모이상의 향진공업기업이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였음.
 - 하북성과 운남성의 규모이상의 향진공업기업은 금년 1~8월 각각 1,135.3억 위안,

233.9억 위안의 부가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8%, 39.8% 증가한 것임.

- 전국 향진공업기업은 금년 1~8월 4조 5,830억 위안의 부가가치를 기록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 것임.
- 규모이상의 향진공업기업의 금년 1~8월 부가가치는 3조 4,010억 위안으로 전국 향진공업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향진기업 발전에 견실한 작용을 하고 있음.

○ 대외수출 지속적 증가

- 금년 향진기업의 수출 상황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임. 금년 5월까지의 향진기업 수출액이 이미 2008년 상반기 경제위기 발생 직전 수준에 도달하였음.
- 특히 금년 1~8월 동부연해지역 향진기업의 수출액은 2억 2,74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하였음. 올해 향진기업의 수출 총량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노동자 보수 증대로 인한 농촌주민의 수입 증대

- 금년 1~8월 동안 향진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한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음. 금년 1~8월 지불 임금 누계총액은 1조 2,060억 위안임. 노동자 보수 증대는 여전히 동부지역이 서부지역보다 빠름.
- 하북성이 금년 1~8월 지불한 노동자 보수는 9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음. 운남성 향진기업은 총 128.8억 위안을 지불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수치임.

참고자료

農業部, 2010.9. “2010年 1~8月鄉鎮企業發展總體情況分析”

양념채소시장 동향

1. 고추시장 동향

1.1. 산지동향

- 금년 중국의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마늘 가격의 급등과 생강, 면화, 설탕, 식용유 등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은 수급영향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 급증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의 농업용 생산재 비용이 급등하였고 최근 노동력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있음.
 - 마늘, 생강 가격이 고가를 유지함에 따라 많은 상인들이 고추 수집으로 전환하고 있음. 익도산 건고추의 경우 도매가격이 2008년 12.0위안/kg, 2009년 18.0위안/kg, 2010년 현재 24위안/kg에 달하여 금년도 크게 상승한 수준이지만, 기타 농산물 상승추세를 볼 때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중국의 건고추 주산지인 운남, 귀주, 광서, 호남, 사천, 호북, 산서, 하남 지역 등이다. 이중 서남지역의 대가뭍피해로 주산지의 고추생산량은 20% 감소하였으며 광서지역은 30% 감소하였다. 일부 주산지에서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금년 고추 재배 면적이 40% 증가하여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귀주성 준의(遵義)현 30개 향진의 25만 고추농가의 35만畝에 달하는 고추 산지의 총 생산량이 5만 7천 톤에 달하였음. 복건성의 포성(浦城)현의 고추작황도 4년 연속 증산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채소관측팀(김종선, 한승용, 노호영, 한은수)이 해외모니터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임.

표 1. 2010년산 산지별 고추 작황

산지	작황 상황
산동성	전기는 가뭄, 후기는 홍수피해로 수확에 영향을 주었음. 현재 고추수확은 90% 완료.
동북3성	자연피해가 적어 작년과 작황수준은 비슷하며 현재 고추수확은 85% 완료.
하남/섬서 지역	전기 가뭄피해를 일부 보았으나 전반적으로 작황수준은 작년과 비슷함. 고추수확은 70% 완료.
내몽고지역	자연피해 적어 작황은 좋은 편임. 고추수확은 85% 완료.
신강위그로	눈이 내려 작황이 좋지 못함. 고추수확은 50% 완료.

- 제녕시 냉동고추의 대한민국 수출가격은 톤당 3,000위안으로 전년 대비 500~600원 상승하였음. 최근 한국의 김장배추 가격 폭등에 따라 중국산 배추 수입이 급증하였음. 이는 중국내 배추, 무 등 농산물 가격의 가격을 30% 인상시켰음. 현재 냉동고추의 수출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김장용 배추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미료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1.2. 가격동향

- 고추 성출하기인 9월 상황을 볼 때, 금년 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증가하였지만, 가격은 높은 수준임.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보통 가격하락이 동반되지만, 금년은 예외임. 홍고추 수매가격은 전년 대비 13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시작하였음. 작년 가공용 고추 가격이 1.5위안/kg이지만, 금년 동일 품질 고추의 판매가격은 3.5위안/kg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음.
- 마늘가격 폭등과 동시에 고추가격도 조미료 일종으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유지하였음. 중국 고추의 고향이라 불리는 하북성 계택(鷄澤)현의 홍고추가 높은 가격에 출하되고 있음. 이 지역 홍고추 출하는 날씨의 영향으로 1주일간 지연되었는데 8월 18일 1.6위안/kg으로 작년 대비 100%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였음. 남방지역 고추 재배지역의 자연재해 영향으로 고추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2. 마늘시장 동향

2.1. 산지동향

- 금년이래, 농산물가격 파동이 심했으며, 처음으로 녹두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어 마늘 가격이 천가를 지속하였고, 다음 생강, 면화, 설탕, 식용유 등 가격이 모두 엄청 상승하였음. 이런 농산물가격 상승은 수급영향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 급증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의 농업용 생산재 비용이 급등하였고, 최근 또한 노동력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산물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있음.
- 산동성 금향현 마늘의 고향으로 2002년 세계 최대 마늘재배지로 되었고 연간 마늘 재배면적은 60만畝에 달함. 2009년 금향마늘 지리표시는 유럽의 인가를 받으면서 유럽지리표시보호를 받는 제품으로 등극하였음. 2010년 마늘은 가격폭등을 기록하면서 마늘파종기인 현재 재배면적은 확대되고 있음. 금향현은 마늘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현재의 전통적인 마늘재배 방식을 유기재배로 전반적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
- 마늘가격의 상승에 따라 마늘분이 대체품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마늘분은 마늘 건조 후 분쇄하고 전분 등을 첨가한 마늘가공제품으로 마늘향이 적지만 마늘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음식점 등에서 마늘 대체품으로 대량 구매하고 있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마늘분 가격은 15.0~17.0위안/kg으로 마늘가격 상승 추세 대비 아직 가격상승 현상은 없는 상황임.
- 10월 현재는 내년산 마늘재배시기로 마늘농가들의 재배 적극성이 높음. 기존의 마늘 재배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음. 산동성 제남시 귀덕(歸德)진은 기존 3만畝 마늘재배지에서 2,000畝를 확대하였음.

2.2. 수출 동향

- 중국의 최대 마늘 재배지역인 산동성의 최근 대유럽 마늘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7월 한 달 동안 산동성의 대유럽 농산물수출액은 2.0억 달러로 금년 이래 최고기

특이었는데 그 중 마늘수출액은 1,894만 달러로 전월대비 130% 이상 증가하였음. 1월~7월까지 산동성의 대유럽 농산물수출액은 11.4억 달러를 초과하였음.

- 마늘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도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음. 산동성 뿐만 아니라 Ningbo(寧波)지역의 1월~7월 마늘수출량이 4,413톤, 수출액은 636.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5%, 1.5배 증가하였음. 그 중 7월 한 달 동안의 마늘수출 실적은 1,03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 증가하였음.

2.3. 가격 동향

- 금년도 마늘가격이 천가를 기록함에 따라 내년도 마늘재배 비용도 동반 상승하였음. 한 마늘농가가 금년도 마늘재배 畝당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음. 마늘종자 2,000위안, 화학비료 500위안, 밭갈이 60위안, 인건비 180위안, 관개비 30위안, 멀칭 55위안 등 총 2,825위안, 기타 시비, 후기관리 등 비용을 포함하면 3,000위안에 달함. 이는 마늘 재배비용이 4.0위안/kg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내년도 마늘가격 최저가격을 제시하고 있음. 업계는 2010년도 고가 마늘의 영향으로 맹목적으로 마늘 재배를 확대할 경우 높은 재배비용의 위험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8월 상승세가 주춤하고 약간 하락하던 마늘가격이 9월에 들어서서 다시 상승하여 10위안/kg을 초과하였음. 일별 마늘가격이 큰 파동을 거듭하였었는데 최근 마늘가격은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마늘농가들이 저장하고 있는 마늘은 싹이 트기 시작하여 저가에 판매함에 따라 마늘가격이 약간 안정된 상태임. 마늘도매가격은 12.0위안/kg, 소매가격은 15.0위안/kg 수준임. 11월 중순부터 냉장저장 마늘이 출하되기 시작한다. 고가로 저장된 마늘이 출하되면 마늘가격이 다시금 상승할 전망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림 2. 북경시 농산물도매시장의 마늘가격동향 (2010.7~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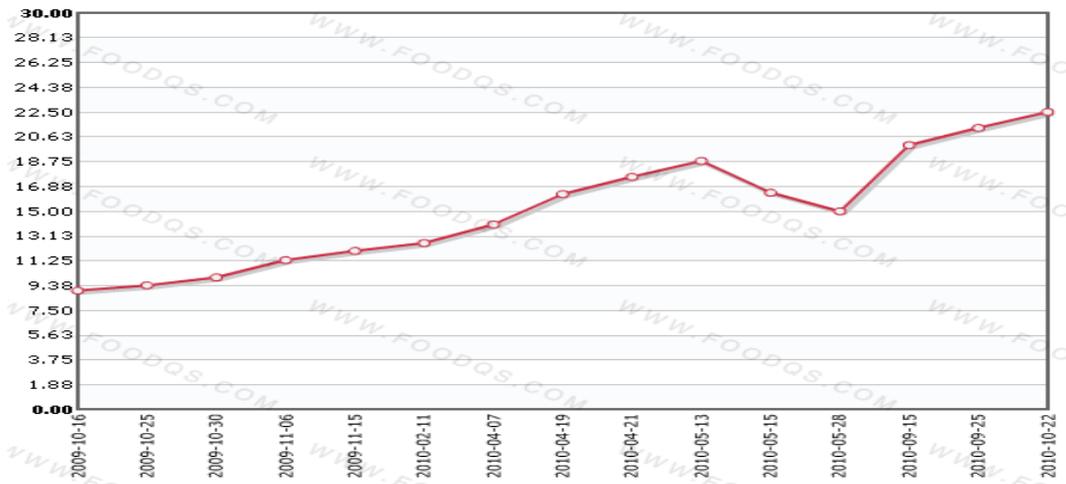
단위: 위안/kg



자료: 북경 순흥석문(順鑫石門)농부산물 도매시장

그림 3. 마늘 소매가격동향 (2009.10~2010.10)

단위: 위안/kg



자료: 천혜(天惠)할인마트 가격임

3. 양파시장 동향

3.1. 산지 동향

- 2010년산 산둥, 운남 양파 생산량은 작황 부진으로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나, 8월 중순 이후부터 출하된 감숙, 내몽골 지역의 양파 생산량은 재배 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늘어남.
 - 감숙과 내몽골의 산지 가격이 산둥보다 톤당 200~300위안 차이가 나 수출을 위해 상인들이 감숙과 내몽골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음.
- 운남 및 산둥 지역의 내년산 양파 재배의향은 금년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5~1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파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한민국 수출을 포함한 양파 수출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3.2.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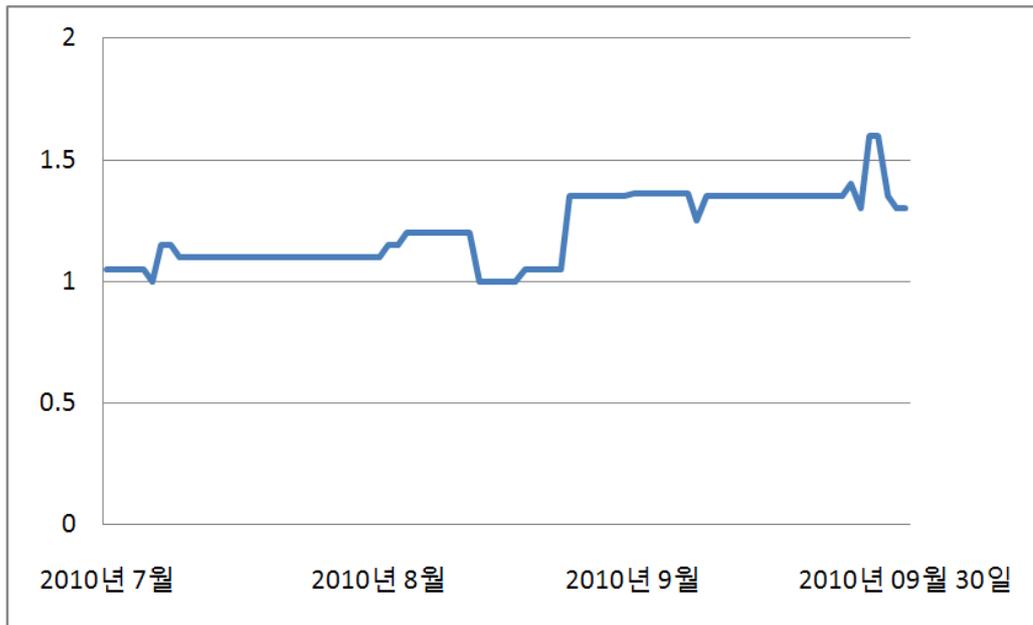
- 중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6~8월 중국 신선 및 조제 양파 수출량은 18만 1,109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6% 증가, 수출액은 5천 6백만 달러로 26% 증가하였음. 이처럼 수출량 증가에 비해 수출액 증가가 더한 것은 중국 양파 산지 가격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물량기준 주요 양파 수출대상국을 보면, 일본(6만 5,803톤), 베트남(4만 1,908톤)의 순이며, 싱가포르와 미국이 각각 1천 2백 톤과 8백 톤으로 감소하였음.
 - 중국의 대한민국 신선 및 조제 양파 수출량은 2009년 6~8월 196톤에서 금년 동기 176톤으로 10% 감소하였음. 이는 한국의 2010년산 수확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양파 산지 가격도 높았기 때문임.
- 건조 양파의 경우 수출량은 4,115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1% 감소하였으나, 수출 금액은 1,197만 달러로 14% 증가하였음.

- 물량기준으로 살펴 보면, 영국(683톤), 독일(491톤), 일본(352톤), 미국(322톤)의 순이며, 인도네시아가 120톤에서 192톤으로 급증하고, 프랑스가 65톤에서 6톤으로 급감하였음.
 - 중국의 대한국 건조양파 수출량은 2009년 3~5월 136톤에서 금년 동기 259톤으로 90% 증가하였음.
- 산동성 기준 산지 신선 양파 수출 가능가격은 산지 매입가격인 톤당 1,350위안에 각종 비용을 더한 2천 100위안(청도기준 FOB가격) 수준임.
- 한편, 한국 도매시장 기준 9월 말 현재 중국산 신선양파의 수입가능 가격은 19,000 원/kg임.

3.3. 가격 동향

그림 4. 북경 신발지도매시장의 2010년 도매가격 동향

단위: 위안/kg



자료: 북경 신발지도매시장

중국농업동향

- 중국 양파 신발지 3/4분기 도매가격은 2010년산 감숙성과 내몽골 지역의 양파의 생산량 증가로 전분기보다 하락한 1~1.5위안/kg에서 형성하고 있음.
- 7~8월 평균 가격은 6월과 비슷한 1.1위안/kg 내외에서 형성되었으며, 9월 평균 가격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1.3위안/kg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의 육류 수급 동향과 전망

1. 쇠고기

1.1. 세계 쇠고기 수급

-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까지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사육두수 증가로 매년 1%의 성장세를 거듭해왔음. 이러한 성장세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주요 농업국이 주도하였음. 최근에는 브라질 이외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의 소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쇠고기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호주 및 미국의 쇠고기 생산이 감소하여 2010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2009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2011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하나,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생산량 감소로 2010년보다 0.2% 감소한 5,666만 톤으로 전망됨.

표 1. 세계 쇠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p)
공 급	64,546	65,716	65,421	64,127	63,641	63,763
생 산	57,731	58,558	58,522	57,431	56,763	56,663
수 입	6,815	7,158	6,899	6,696	6,878	7,100
수 요	64,476	65,643	65,387	64,064	63,690	63,779
소 비	56,974	58,073	57,897	56,742	56,437	56,371
수 출	7,502	7,570	7,490	7,322	7,253	7,40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이형우 연구원이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Oct, 2010)”(<http://www.fas.usda.gov>)을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임.

- 쇠고기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국의 쇠고기 수요 증가로 전체 쇠고기 교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2011년 쇠고기 수출입량은 2010년보다 2~3% 증가한 710~740만 톤으로 전망됨.

1.2. 중국의 쇠고기 수급

- 쇠고기, 브라질, EU-27에 이어 세계 4위의 쇠고기 생산 국가임. 2010년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555만 톤으로 이는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경제 성장으로 육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안 돼지고기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쇠고기의 경우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2008년 4.6kg → 2010년 4.1kg).
- 쇠고기두수와 송아지 생산두수의 감소로 2011년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545만 톤으로 전망됨. 중국은 쇠고기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 소비가 차지하고 있어 수출 여력은 극히 작음. 2006년 중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7만 5천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 2만 2천 톤에서 2011년에는 9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1년 중국의 쇠고기 1인당 소비량 또한 2010년(4.1kg)보다 0.1kg 감소한 4.0kg으로 전망됨.

표 2. 중국의 쇠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p)
공 급	5,767	6,134	6,132	5,764	5,550	5,450
생 산	5,767	6,134	6,132	5,764	5,550	5,450
수 입	-	-	-	-	-	-
수 요	5,767	6,134	6,132	5,764	5,550	5,450
소 비	5,692	6,065	6,080	5,751	5,528	5,441
수 출	75	69	52	13	22	9
1인당 소비량(kg)	4.3	4.6	4.6	4.3	4.1	4.0

주: 2010년은 추정치이며, 2011년 전망치임.

자료: 미농무부(USDA).

- 인도, 브라질에 이은 세계 3위(미국은 4위)인 중국의 2010년 소 사육두수는 세계 사육두수(9억 9천만 두)의 10.6%를 차지한 1억 5백만 두(연초 사육두수 기준)로 추정됨. 쇠고기 소비량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2011년 소 사육두수는 2010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송아지 생산두수 또한 2010년보다 1.6% 감소한 4천만 두로 전망됨.

표 3. 소 사육두수와 생축 수출입

단위 : 천 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p)
연초 사육두수	109,908	104,651	105,948	105,722	105,430	105,060
송아지 생산두수	39,827	45,353	45,360	42,572	41,500	40,850
수입	15	15	15	47	90	70
수출	54	51	33	29	40	31

자료: 미농무부(USDA).

표 4. 중국의 쇠고기 소매가격 동향

단위: 위안/kg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09 (%)
1월	18.55	19.64	29.11	33.90	34.08	0.5
2월	18.65	20.35	31.40	33.72	34.54	2.4
3월	18.37	20.14	31.42	33.13	33.86	2.2
4월	18.33	20.07	31.55	32.81	33.45	2.0
5월	18.31	20.28	31.73	32.60	33.24	2.0
6월	18.32	21.21	31.82	32.53	33.16	1.9
7월	18.27	22.02	31.92	32.46	33.30	2.6
8월	18.40	23.13	32.02	32.70		
9월	18.57	23.69	32.39	32.96		
10월	18.54	24.36	32.74	33.15		
11월	18.86	25.27	32.98	33.35		
12월	18.21	26.65	33.25	33.73		

주: 2010년 10월 25일 현재 1위안= 약 168원임

자료: 중국 농업부.

2. 돼지고기

2.1. 세계 돼지고기 수급

-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지난 1998년 이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10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9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11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0년보다 1.9% 증가한 1억 3백만 톤으로 전망됨.
- 미국, 브라질 등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의 수출량은 20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대적으로 생산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EU-27의 돼지고기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0년(605천 톤)과 비슷한 607천 톤으로 전망됨.

표 5. 세계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p)
공 급	100,608	99,329	104,237	105,984	107,152	109,197
생 산	95,723	94,258	98,042	100,473	101,507	103,392
수 입	4,885	5,071	6,195	5,511	5,645	5,805
수 요	100,678	99,253	104,299	105,982	107,178	109,183
소 비	95,453	94,091	98,150	100,341	101,126	103,115
수 출	5,225	5,162	6,149	5,641	6,052	6,068

2.2.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 지속적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에는 돼지 생식호흡기증후군(PRRS)의 발생으로 양돈 농가의 생산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사천성(돼지 주

산지) 지진에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의 생산성이 회복되어 200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7.6% 증가함.

- 중국 정부의 양돈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조정책, 질병(청이병, 靑耳病)으로부터 회복, 중국내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중국의 돼지고기 산업은 꾸준한 성장에 예상됨.
- 2010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9년보다 3% 증가한 5천만 톤(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49.3% 수준)으로 추정됨. 돼지 사육두수와 도축두수가 증가하여 2011년 돼지고기 생산량 또한 2010년보다 3% 증가한 5천 1백 5십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에서 중국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49.8%)에 이르는 수치임.
- 2008년 이후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10년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9년보다 7.8% 증가한 25만 톤으로 추정됨. 2011년에도 전통적인 수입국인 홍콩, 일본, 키르기스스탄 등으로의 수입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0년보다 12.0% 증가한 28만 톤으로 전망됨.

표 6. 중국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p)
공 급	46,558	43,060	46,914	48,770	50,350	51,870
생 산	46,505	42,878	46,205	48,500	50,000	51,500
수 입	53	182	709	270	350	370
수 요	46,595	43,076	46,635	48,532	50,550	50,580
소 비	46,051	42,726	46,412	48,300	50,300	50,300
수 출	544	350	223	232	250	280
1인당 소비량(kg)	35.0	32.3	35.1	36.5	37.1	38.0

- 쇠고기와는 달리 중국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여전하여 2010년 중국의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09년(36.5kg)보다 0.6kg 증가한 37.1kg으로 추정됨. 2011

년에도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인당 소비량은 2010년보다 0.9kg 증가한 38.0kg으로 전망됨. 중국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2008년 이후 중국은 돼지고기 순수입국으로 전환됨.

-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인 중국의 2010년 돼지 사육두수는 세계 사육두수(7억 9천만 두)의 59.3%를 차지하는 4억 6천 9백만 두(2010년 초 기준)로 추정됨. 2011년 돼지 사육두수는 2010년보다 다소(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비 증가로 돼지 도축두수는 2010년보다 0.2% 증가한 6억 6천 1백만 두로 전망됨.

표 7. 돼지 사육두수와 생돈 수출입

단위: 천 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p)
연초 사육두수	433,191	418,504	439,895	462,913	469,960	468,507
도축두수	605,823	592,080	636,817	655,545	660,000	661,000
수입	2	3	12	6	2	2
수출	1,723	1,609	1,645	1,602	1,650	1,675

자료: 미농무부(USDA).

표 8. 중국 돼지고기 소매가격 동향

단위: 위안/kg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09 (%)
1월	12.43	14.91	25.53	21.25	19.31	-9.1
2월	12.18	14.97	26.08	20.62	18.67	-9.5
3월	11.65	14.50	25.56	19.30	17.32	-10.3
4월	11.13	14.39	25.68	17.60	16.21	-7.9
5월	10.71	15.86	24.71	15.68	16.09	2.6
6월	10.58	17.74	24.10	15.46	16.04	3.8
7월	11.06	20.77	23.58	16.27	17.54	7.8
8월	12.01	22.95	23.18	17.94		
9월	12.82	22.10	22.59	18.97		
10월	12.99	21.15	20.86	18.71		
11월	13.35	22.35	19.46	18.47		
12월	14.40	24.05	20.34	19.11		

주: 2010년 10월 25일 현재 1위안= 약 168원임

자료: 중국 농업부.

표 9. 돼지 사료가격 동향(소매)

단위: 위안/kg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09 (%)
1월	1.84	1.98	2.51	2.50	2.69	7.6
2월	1.83	1.98	2.55	2.48	2.68	8.1
3월	1.83	2.03	2.55	2.46	2.68	8.9
4월	1.82	2.01	2.60	2.46	2.69	9.4
5월	1.84	2.05	2.60	2.45	2.72	11.0
6월	1.86	2.07	2.65	2.48	2.73	10.1
7월	1.87	2.11	2.73	2.53	2.73	7.9
8월	1.92	2.17	2.73	2.57		
9월	1.88	2.24	2.71	2.62		
10월	1.90	2.23	2.71	2.62		
11월	1.90	2.33	2.57	2.64		
12월	1.96	2.42	2.50	2.68		

주: 2010년 10월 25일 현재 1위안= 약 168원임

자료: 중국 농업부.

3. 닭고기

3.1. 세계 닭고기 수급

-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생산량은 미국, 브라질, 중국의 주도하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음(2009/2006대비 10.9% 증가). 이러한 생산량 증가세는 2010년에도 이어져 2009년보다 3% 증가한 7천 9백만 톤으로 추정됨. 2011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 또한 주요국의 사육수수 증가로 2010년보다 2.3% 증가한 8천 1백만 톤으로 전망됨.
-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적색육보다 백색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닭고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주요 수입국의 닭고기 수요 증가로 교역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2011년 닭고기 수출입량은 2010년보다 3~5% 증가한 830~950만 톤으로 전망됨.

표 10. 세계 닭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p)
공 급	76,305	81,150	85,172	85,019	87,378	89,593
생 산	69,459	73,589	76,904	77,031	79,427	81,254
수 입	6,846	7,561	8,268	7,988	7,951	8,339
수 요	76,365	81,216	85,018	85,227	87,380	89,558
소 비	69,252	73,259	75,949	76,247	78,170	80,064
수 출	7,113	7,957	9,069	8,980	9,210	9,494

3.2. 중국의 닭고기 수급

- 2010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7천 9백만 톤) 중 15.8%(1천 2백5십만 톤)를 차지하였음. 닭고기 수요 증가로 2011년 중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10년 보다 3.6% 증가한 1천 3백만 톤으로 전망되나,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으로 예상치보다 작을 수 있음. 최근에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규격화된 체계에 의한 닭고기 생산으로 생산성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HPAI 발생이 거의 없으나 중국은 AI 발생국으로 분류되어 열처리 가금육에만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함. 2010년 중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2009년보다 30.6% 증가한 38만 톤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41만 톤으로 전망됨.
-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육류 소비량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중국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여 2009년에는 9.1kg(2006년 7.9kg)까지 증가하였음. 2010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9년보다 2.2% 증가한 9.3kg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9.5kg로 전망됨.

표 11. 닭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p)
공 급	10,693	11,773	12,239	12,501	12,876	13,300
생 산	10,350	11,291	11,840	12,100	12,550	13,000
수 입	343	482	399	401	326	300
수 요	10,693	11,773	12,239	12,501	12,876	13,300
소 비	10,371	11,415	11,954	12,210	12,496	12,890
수 출	322	358	285	291	380	410
1인당 소비량(kg)	7.9	8.7	9.0	9.1	9.3	9.5

자료: 미농무부(USDA).

참고자료

<http://www.fa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Oct, 2010 발췌
정리



Ⅲ. 정책자료

- 《신규 ‘채람자(菜籃子)’공정의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
 - 《농민전업협작사 시범규정》
 - 《농민전업협작사 시범사 창설기준(시행)》

《신규 ‘채람자(菜籃子)’공정의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기관:

1988년 “채람자”공정이 실시되면서, “채람자”농산물의 산출량과 품종 및 품질이 모두 현저한 개선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시장체제도 속속 갖춰지고 있어, “채람자”건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도 빠른 속도의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는 환경에 적응하고, 무엇보다 도-농 주민들의 “채람자”농산물에 대한 요구사항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친 신규 “채람자”공정 실시에 이하와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전반적인 구상, 목표와 원칙

(1) 구상

과학적발전관을 철저히 실현시키면서, 신규 “채람자”공정을 통합 추진코자 한다. 생산능력의 확대, 시장유통시스템의 개선, 성장방식의 전환 가속, 공급보장·거시조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람자”공정의 생산이 안정적인 발전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지와 소비자간 연계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품질 안전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가변동관리가 가능해져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시민들도 실리를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선순환 발전 궤도를 따라 날로 높아지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따른 수요증대에도 부합할 수 있게 된다.

* 2010년 3월 9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문건 《신규 ‘채람자’공정의 종합추진에 관한 의견關於統籌推進新一輪‘菜籃子’工程建設的意見》을 번역, 정리하였음.

(2) 목표

채람자 농산물(육류, 가금 알, 낙농제품, 수산물, 채소, 과일) 생산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약 5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 기간 동안 생산지역 배치를 합리화시키고, 수요 총량을 충족시키고, 품종을 더욱 다양화하며, 계절간 공급·수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직할시, 성회도시, 중앙직속중점개발도시(計劃單列市) 등 대도시의 “채람자”농산물의 자체공급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차츰 높이도록 한다. 농촌지역 “채람자” 생산기지 조성을 확대하고 유통조건을 개선시킨다. 주산지와 소비지의 이익연계 메커니즘을 형성시키고 현대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한다. “채람자”농산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식품의 안전수준을 현저하게 높이고, 시장책임제(市長責任制) 실시를 강화하여 공급보장·거시조정·품질관리감독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한다.

(3) 원칙

- 시장조절과 정부조정의 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의 총괄적인 계획과 거시조정에 맞추어, 지방위주의 “채람자”공정을 진행한다. 우선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이 충분히 작용되도록 하고 정부는 “채람자”공정 인프라 구축에 투입을 확대하여, “채람자”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소비수요에 양호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지와 소비지의 총체적 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비교우위를 갖춘 주산지의 생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지의 자급능력 배양을 강화한다. 주산지와 소비지의 협력 관계를 형성시키고 상호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시주민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농민의 소득증대도 촉진시킨다.
- 능력배양과 메커니즘의 혁신을 모두 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능력배양은 먼저 생산요소의 집적과 자원통합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생산기지를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생산능력제고와 품질보장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메커니즘의 혁신 부분은 위험관리시스템이나 산지와 소비지간의 연결 및 시장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채람자”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규모화,

규격화 및 조직화의 수준을 높이고 “채람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 생산 발전과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방식의 전환을 통한 생산능력의 제고를 중시할 뿐 아니라, 농업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시한다는 취지 하에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농업(촌)을 건설하여 “채람자 농산물”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시킨다.

2. 생산능력의 구축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잘 다진다.

(4) 시설화된 원예농산물생산기지를 구축한다. 대도시권(大中城市)의 교외지역이나 원예농산물(채소, 과일 등)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진 산지에 설비를 지원하여, 보다 시설화되고 집약화된 “채람자”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이는 육묘의 집약화, 생산의 표준화, 상품화 처리 및 병충해 예방, 품질측정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원예농산물의 표준화 생산을 발전시킨다.

(5) 동물방역조건 및 환경보호조건에 부합하는 규모화된 축산가금사육장(사육지역)을 조성한다. 대형사육장(사육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돼지나 젓소 사육장(지역)의 규모 확장을 지원하고, 사육장(사육지역)의 인프라(물, 전기 도로 등)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축산폐기물(분뇨, 사체 등) 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등에 필요한 시설까지 구축하여, 축산가금의 사육과 가공을 일체화 시킨다. 중대한 가축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층조직부터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6) 수산물시범양식장을 조성한다. 노화된 대규모 양식장에 대한 개조를 가속화하고, 건전한 수산물 시범 양식장을 발전시킨다. 이는 양식장의 물, 전기 도로 등 기초설비와 관련 설비기기에 대한 투자와 환경보호시설, 수산물 방역시설, 순환수 이용과 실시간 수질 검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현시킨다. 대도시권(大中城市)의 원활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시 주변의 강, 호수, 연해 지역에 수산물 양식장을 조성하여 전체적인 양식면

적을 확대한다. 수생생물의 증식과 방류를 잘 조절하여 원양어업의 발전도 도모한다.

(7) “채람자”농산물(농·수·축산물) 우수품종 육종·번식센터를 설립한다. 주산지에원예농산물집약육묘장(공간/센터)이나 축산·가금·수산물 원종(어미씨) 또는 우수품종(良種)의 육성장(공간/센터) 및 유전자원(遺傳資源)종자보호(保種)장(공간/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우수품종 육종·번식센터의 인프라나 우수품종 번식에 필요한 설비 투자 및 실험실이나 검사실 마련과 필요한 관련 기술 설비를 지원한다. “채람자”원산지보호생산물(농·수·축산물)을 키워서 국내 우수한 품종의 유전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강화한다. 수입동식물의 우량품종검역을 엄격하게 시행한다.

3. 현대적 물류체계와 정보화에 초점을 둔 시장체계를 구축한다.

(8) 산지에 도매시장을 건설 및 개조한다. 총체적인계획에따라산지도매시장을신설하고 기존산지도매시장을개조함으로써 “채람자”농산물 생산기지의 규모화를 추진한다. 도매시장의 장소, 도로, 교역부스, 물과 전기등 기초설비 조건을 개선하고, 정보서비스, 품질검사, 채취 후속처리(采後處理)와 관련해서는 냉장설비나 신선고 및 유통가공 설비를 마련한다. 농산물 채취(집)후 신속한 냉장처리나 상품화 가공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성수기에는 냉장보관을 통한 신선도 유지를 강화한다.

(9) (도시)소비지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및 자유무역시장(집무시장)을 개조한다. 대도시권(大中城市)의 소비지 도매시장을 시장의 정보화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비롯해 품질안전검사, 냉장보관, 가공배송 및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소비지 도매시장을 기초설비와 기술 및 관리측면에서 전면 개조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고 규범적이면서 효율적인 “채람자”농산물 유통 및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계획이 중복되거나 악성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시 농산물시장에서 자체적인 환경정리나 설비 투자, 추적플랫폼 구축, 규범적인 관리 추진 등 표준화 건설 진행을 적극 지지한다.

(10) 산지와 소비지연계기능을 강화한다. 대도시권은 소비지의 수요에 적합한 “채람자”

농산물 판매보장기지를 세우고, 비교우위를 갖춘 산지(이하 우세산지)는 전국적 또는 국지적인 서비스를 위한 “채람자” 규모화기지를 마련하여 대도시권과 서로 장기계약을 체결한다. 농산물시장은 농산물 유통(생산)기업과 “시장-공장연계”를 맺거나, 농산물 생산기지와 “시장-산지연계” 맺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대형 연쇄마트나 농산물 유통기업이 직접 농민전업합작사(農民專業合作社)와 “농가-마트연결”을 통한 농산물 직판기지를 구축하는 것도 장려한다. 이 외에도 주요집산지나 교통요충지에 중간 냉장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도시내 냉장배송센터와 연결되도록 한다.

(11) 정보네트워크플랫폼을 구축하고 완비한다. 주산지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두루 섭렵하는 “채람자”농산물 산지·소비지정보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집정보의 기준을 세우고 정보운영시스템을 완비하고, 정보수집지역뿐 아니라 수집경로 및 네트워크센터까지 필요한 제반 설비의 구축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채람자”농산물의 생산, 공급·수급상황, 품질, 가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한다. “채람자”농산물 시장검사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처리기술수준을 높이고 장대한 규모의 분석조기경보팀을 구성한다.

4. 발전방식을 전화하여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시킨다.

(12) 표준화 생산을 추진한다. 10대 농산물(채소,과일,차,소고기,양고기,우유,돼지고기,닭고기,달걀,수산물)을 선정하여 표준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원예농산물, 축산·가금·수산양식의 표준화 생산을 선도한다. 조속히 표준을 제정(수정)·보급시키고, 농산물 생산기술수요와 조작규정을 제정하고, 표준화 생산을 홍보하는 훈련을 전개하고 농업자금이 농촌과 농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당안(프로필) 구축을 지도한다. 고유 브랜드 배양과 인증지수를 강화하여,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13) 검사검역체계를 건전화한다. 새로운 농산물안전성 검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실시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농산물품질관리 기능을 강화 차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기구)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 각계 각층의 농산물 검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제3자 검사기관의 발전을 지지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안전성검사원(소)를 설치할 것을 적

극 권장한다. 이를 통해 통일된 기준 적용, 분명한 기능 담당, 효율적인 운영, 모든 관련 검사변수 체크가 가능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스템을 갖춘다. 또한 엄격한 자질 심사를 실시하고, 농산물 품질 관리사의 훈련 및 지도를 강화하고, 품질관리원(검사기구)의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농산물 검사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결과를 상호인증(인정)하도록 해서 중복검사 피하고 불합리한 과징금 징수를 억제한다.

(14) 전과정 품질이력추적관리체계를 세운다. 국가급 “채람자”농산물 전과정 품질이력추적 정보처리 플랫폼을 설립하고, 동시에 “채람자”농산물 생산기업이나 농민전업협작사 조직에 신뢰할만한 농산물 전과정 이력추적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산지에는 출고허가(准出)제도를, 판매지에는 입고허가(准入)제도를, 농산물 자체에는 신분증명이나 표식을 하는 제도를 갖추어, 관련정보를 손쉽게 얻고 원가도 따져볼 수 있고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전과정 품질이력추적 관리 시스템을 갖춘다.

(15) 품질안전위험경보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내외시장을 아우르는 “채람자”농산물(안정성)위험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부서(문)간 협력을 강화하고, 품질안전 정보를 공유하여, 안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돌발사건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채람자”농산물 품질 안정성(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킨다.

5. 거시조정체계를 완비하고 과학기술 발전수준을 제고시킨다.

(16) “채람자”시장(市長)책임제 실시를 강화한다. 대도시권(大中城市)의 시장상황에 따라 “채람자”농산물 생산용지 보유량 및 중점 “채람자”농산물 자급수준과 품질안전 합격률 등의 지표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대도시권 시장 책임제에 포함될 내용으로; “채람자”농산물 품질보장, 시장가격안정, 산지-소비지간 원활한 연계, 시장위주의 행위규범, 돌발사태에 대한 신속한 처리, 리스크 통제의 신속성, 농업생태환경 보호 등 항목이 “채람자”공정 건설 타당성 검사 지표에 들어가도록 하여, 신규 “채람자”공정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간다.

(17) 생산지역배치를 보다 과학적으로 기획한다. 대도시권은 전국<우수농산물구역배치

계획〉과 〈농업특산물구역배치〉의 계획을 참조하여, 교외지역 “채람자”건설 발전계획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바탕으로 보다 수준 높고 앞선 출발점의 “채람자” 생산·유통·가공·품질감독관리 시설을 마련하고, 농업의 산업화 경영을 발전시켜, 농업의 현대화와, 도시화 및 공업화를 달성한다. 각각의 대도시권은 현지의 자원조건, 소비습관, 주요 “채람자”농산물 수급상황 및 시장결함을 충족 난이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합한 중점발전품종을 결정한다.

(18) 다양한 경로로 프로젝트의 자금을 확보한다. 각급 정부는 “채람자”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금의 투입을 확대한다. 이미 건설된 “채람자”항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유지하고, 아직 안배(배분)받지 못한 “채람자”항목은 하루빨리 입안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투자를 시작으로 농민과 기업투자가 주체가 되는 다원적인 투입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사회자금이 “채람자”농산물 생산·유통 등 기초설비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은행 금융기관은 경쟁력이나 시장잠재력 면에서 우수하고 많은 농가에 영향을 주는 선도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담보나 채담보 기구에 제안하여 (리스크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전제하에) 선도기업에 대한 대출 상품을 개발하여 “채람자”공정 건설의 용자능력을 제고시킨다.

(19) 지원정책을 완비한다. 기존의축산·가금·우수품종 보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보조대상 품종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액도 늘리도록 한다. “채람자”농산물 초보·가공 및 유통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수속을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업무 수수료를 취소한다. “채람자”농산물 수출시, 관련규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비를 감면하고 수출환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鮮活) 농산물에 대해서는 면세통로(綠色通道)로 통과시키고, 합법적으로 해당(鮮活) 농산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유지한다. 환경보호·에너지절약·안심식품을 제공하는 녹색시장 건설을 지지한다. 대형농산물도매시장과 연쇄마트간 공급라인 연결을 지지한다. “채람자”농산물 생산·용지·점용보상수준을 높이고 도시·교외지역에 위치한 밭과 양식구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심각한 역병에 걸린 동물들 폐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을 개선하고, 역병 발생예방 작업경비를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어업행정·어항(장)·어선 안전설비 등 건설투입을 늘린다. 대형규모의 축산·가금·수산양식용지의 관리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기존의 발전)계획에 맞춰 자체 (집체)토지를 이용해

농산물도매시장건설 문제를 처리한다. 농산물도매시장 용지가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면 년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공급을 보장해주고 도매시장용지에 대해서는 공업용지 우대정책을 적용시켜준다. 도매시장 및 축산·가금·수산양식장의 물세와 전기세는 국가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행한다. 점차적으로 “채람자”농산물의 표준화생산과 인증지지도를 확대시킨다. “채람자”농산물 전문합작조직을 발전시켜 “채람자”농산물생산과 유통의 조직화 수준을 제고시킨다.

(20) 건전한 위험대처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채람자”농산물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를 이용해 적량을 생산하고, 총량불균형에 의한 가격폭등을 방지한다. 국지성 과잉공급 발생시, 도매시장이나 선도기업 등이 많은 수량을 사서 원거리판매를 실시하고, 국지성 초과수요 발생시 유통회사에서 타지구매를 통한 조절 및 생산회복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요 “채람자”농산물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분급 비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생산력의 발전과 소비수요에 따라 적시에 중앙의 비축규모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갖춘다. 각 지역은 해당지역의 생산소비특징에 따라 “채람자”농산물 비축시스템을 개선하고 생산과 판매의 균형을 총괄하여 시장안정을 유지한다. 국내 자원과 국제시장을 충분히 이용하여 수출입을 조절하고 국내 “채람자”농산물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 식량·기름 등 일부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과 같은 정책성보험을 본따서 하루빨리 “채람자”농산물 생산보험 제도를 확립하여, 대도시권 교외지역과 주요산지의 중요 “채람자”농산물보험적용면적을 확대하고,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는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선물시장 보험매출(套期保值)이나 리스크 헤징(對沖) 기능을 잘 연구해, “채람자”발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채람자”농산물의 안정적인 선물거래를 전개시킨다.

(21) 조직적 영도와 부문간 협력을 강화한다. “채람자”식품관리부제연석회의제도를 완벽하게 갖춘다. 농업부가 주관하고 발전개혁위, 재정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위생부, 공상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가 참여하여, 하루빨리 신규 “채람자”공정건설계획 및 실시방안을 연구·제정하여, “채람자”발전 중대정책문제가 협조적으로 해결하고, 각 지역의 “채람자”공정건설상황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강화시킨다. 각 지역은 이를 더욱 중시하여 영도를 강화하고, 각 지역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신규 “채람자”공정 건설을 추진하여, 각 정책조치를 조직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2007년 6월 29일 <농민전업합작사시범규정> 은 농업부 제9차 상무회의에 의하여 통과 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1월 23일 <농업부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시범규정’(시행)에 관한 통지>(농경발[2006]1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부장 손정재

2007.06.29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본 시범규정의 굴림체부분은 해석용 규정이고, 기타 부분은 시범성 규정이다. 농민 전업합작사는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본 시범규정을 기초로 본사 규정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_____전업합작사 규정

【 년 월 일 설립대회를 개최하고, 전체 설립위원의 만장일치 원칙으로 통과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 구성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구성원의 수익을 증가하며 본사 발전을 추진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농민전업합작사법” 및 관련 법률, 법규, 정책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 2007년 6월 29일 농업부령 제4호로 공포된 《농민사업합작사 시범장전農民事業合作社 示範章程》를 번역, 정리하였음.

제2조 본사는 【주: 모든 발기인의 이름 혹은 명칭】 등 사람이 발기하였으며, __년 __월 __일에 설립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사 명칭: 합작사, 구성원은 총 ____위 엔을 출금하였다.

본사 법정대표인: _____ 【주: 이사장 성명】

본사 법정대표인: _____ 【주: 이사장 성명】

본사주소: _____, 우편번호: _____。

제3조 본사는 구성원을 위해 복무하고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구성원은 자주적으로 입사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지위가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합작사는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며, 이익은 공유하고 위험은 함께 부담한다. 창출한 이익은 구성원과 합작사의 교역량(액) 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 합작사는 구성원을 주요 봉사 대상으로 하여 법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농업생산자료를 구매하고, 농산품을 판매, 가공, 운송, 저장하며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주: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한다. 예하면:

- (1) 구성원이 요구하는 생산 자재를 구매, 제공한다.
- (2) 구성원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 판매한다.
- (3) 구성원이 요구하는 운수, 저장, 가공, 포장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고 기술교육, 기술교류 및 자문 서비스를 전개한다.

상술한 내용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공포한 “농민전업합작사법인영업집조”의 주요업무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5조 합작사는 구성원이 출자한 자금, 적립금, 국가재정부서가 지원한 보조금, 타인이 기부하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점유, 사용, 처분하는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자산으로 채무를 보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제6조 합작사가 매년 환급받는 적립금은 구성원과 합작사와의 교역량(액) 【주: 혹은 출자액, 양자를 결합한 것도 가능함】 비례에 따라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국가재정부서가 지원한 지원금과 타인이 기부한 기부금에 의해 형성된 자산은 평균으로 나누어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합작사는 매개 구성원에게 개인장부를 개설해 줌으로써 구성원의 출자금, 구성

원 적립금 분배비례 및 구성원과 합작사의 업무교역량(액)을 기록한다.

구성원은 통장에 기록된 출자금과 적립금 비례에 한하여 합작사에게 책임을 진다.

제7조 구성원대회의 토론에 의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과시킨다. 합작사는 본 사 업무 내용과 관련되는 경제 실체를 설립한다. 또한 합작사 업무와 관련되는 회사의 위탁을 받아 구입, 판매 등 중개 업무를 처리한다. 정부 관련 부서의 신청 혹은 위탁을 접수하여 국가가 농업과 농촌경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결정된 액수와 방식으로 사회공익기부에 참여한다.

제8조 합작사 전체 구성원은 사회공공도덕과 상업도덕을 지키며,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을 추진한다.

제2장 구성원

제9조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공민으로서 _____ 【주: 업무범위내에 있는 주농업부제품 명칭】 분야의 생산경영에 종사하며, 본 합작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규정을 지키고 규정한 입사수속을 이행하는 자는 본 합작사의 구성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본 합작사는 합작사 업무와 관련되는 기업, 사업단위 혹은 사회단체를 단체구성원으로 인정한다. 【주: 농민전업합작사는 자신이 발전하는 실제상황에 따라 단체구성원을 흡수하겠다는가를 결정한다.】 공공사무직능을 행사하는 단위는 본 합작사에 가입하지 못한다. 본 합작사 구성원 중 농민 구성원은 최소로 전체 구성원의 80%를 초과해야 한다.

【주: 농민전업합작사 규정은 기타 구성원 입사 조건도 규정할 수 있다. 예하면 일정한 생산경영규모 혹은 경영서비스능력 등이다. 구체적으로 양식규모가 _____ 이상 달하거나 농작물재배규모가 _____ 이상 달해야 한다 ... 등등이다】

제10조 위의 규정에 부합되고 본 합작사 이사회 【주: 혹은 이사장】 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성원대회 【주: 혹은 이사회】 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자는 본 합작사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11조 본 합작사 구성원의 권리:

- (1) 구성원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표결권, 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2) 본 합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생산경영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3) 본 규정 혹은 구성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합작사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 (4) 합작사 규정, 구성원 명부, 구성원대회 기록, 이사회회의 결의, 감리회회의결 의, 재무회계보고 및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5) 합작사 업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평하고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임시 구성원대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7) 합작사에서 탈퇴할 자유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합작사에서 탈퇴한다.
- (8) 구성원이 공동으로 결정한 기타 권리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12조 본 합작사 구성원대회에서 선거하거나 표결할 때는 1인1표제를 실행하며, 구성원마다 하나의 기본표결권이 있다. 출자액이 본 합작사 구성원 출자 총액의 ____% 이상을 차지하거나 본 합작사와의 업무교역량(액)이 총 교역량의 ____%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원은 본 합작사의 ____ 등 사항의 결정권 측면에서 최대 ____표의 부가 표결권을 가지고 있다. 【주: 부가표결권의 총 표수는 본사 구성원 기본 표결권 총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가표결권을 향유하는 구성원 및 부가표결권 표수는 매 차례 구성원대회마다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13조 본 합작사 구성원의 의무:

- (1) 합작사의 규정과 각항 제도를 준수하고, 구성원대회와 이사회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 (2) 규정에 따라 합작사에 출자한다.
- (3) 합작사가 조직하는 각 항 업무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합작사가 제공하는 기술 지도를 받아들인다. 또한 합작사가 요구하는 품질기준과 생산기술규정에 따라 생산하고, 합작사와 체결한 업무계약을 이행하며 합작정신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발전한다.
- (4) 본 합작사의 이익을 수호하고 생산경영시설을 아끼며 본사 구성원의 공유자산을 보호한다.
- (5) 합작사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손해해서는 안 된다.
- (6) 본 합작사 혹은 기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채권으로 납부해야 하는 출자액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미 납부한 출자금으로 합작사나 기타 구성원의 채무를 환급해서 안 된다.
- (7) 본 합작사의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8) 구성원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기타 의무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14조 구성원이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구성원 자격이 중지된다.

- (1) 주동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 (2)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 (3) 사망
- (4) 단체구성원 소속의 기업 혹은 조직이 파산되거나 해체된 경우
- (5) 합작사에서 제명한 경우

제15조 구성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연간 회계종료 3개월 전에 이사회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그중 단체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는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탈퇴 구성원의 자격은 연간 회계가 종료될 때 중지된다. 자격이 종료된 구성원은 자격 종류 전의 손해와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구성원 자격이 종료된 경우, 년간회계가 끝난 후 ____개월 내 【주: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에 구성원 통장의 출자금과 적립금을 돌려준다. 합작사가 이익을 창출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경영과정에서 손실이 나타났을 경우, 출자금과 적립금에서 부담해야 할 손실을 덜어내야 한다. 구성원의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본 합작사와 체결한 업무계약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주: 탈퇴할 때 본 합작사와 약속한 내용에 따라 확정할 수도 있다】

제16조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법적상속인이 법률 및 본 규정의 요건에 부합되면 ____개월 내에 입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성원대회에서 통과되면 입사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상속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15조 규정에 따라 탈퇴 수속을 진행한다.

제17조 구성원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성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한다.

- (1) 구성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 (2) 합작사 명예와 이익에 큰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 (3) 구성원이 공동으로 결정한 기타 사항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명당한 구성원에 대하여 본 합작사는 출자금과 적립금을 반환하며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채무와 이익을 결산한다. 두 번째 사항으로 제명당한 구성원은 합작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3장 조직기구

제18조 구성원대회는 합작사의 최고 권력기구로써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구성원대회는 아래와 같은 권력을 행사한다.

- (1) 본 규정과 각항 제도를 심사하고 수정한다.
- (2) 이사장, 이사, 집행감리 혹은 감리회회원을 선거하거나 해임한다.
- (3) 구성원 입사, 탈퇴, 상속, 제명, 표창, 처벌 등 사항을 결정한다. 【주: 이사회를 설립하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 (4) 구성원 출자 기준 및 출자금 증가 혹은 감소를 결정한다.
- (5) 합작사의 발전 계획과 연간 업무 경영 계획을 심사한다.
- (6) 연간 재무 예산과 결산방안을 심사, 결정한다.
- (7) 연간 이윤 분배방식과 손해 처리 방안을 심사, 결정한다.
- (8) 이사회, 집행감리 혹은 감리회가 제출한 연간 업무보고를 심사 확인한다.
- (9) 중대한 재산 처리, 대외투자, 대외 보증, 생산경영활동에서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10) 합병, 분립, 해체, 정산, 대외연합 등을 결정한다.
- (11) 경영관리인원과 전문기술직 직원의 수량, 자격, 급여, 임기를 결정한다.
- (12) 이사장 혹은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구성원 병경사항을 확인한다.
- (13)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19조 합작사 구성원이 150명을 초과할 때 _____명을 단위로 구성원 대표를 선거하여 구성원대표대회를 구성한다. 구성원대표대회는 구성원대회의 _____, _____ 등 【주: 부분 혹은 전부】 직권을 행사한다. 구성원 대표의 임기는 _____ 몇이고 연임할 수 있다.

【주: 구성원 총수가 150명에 달하는 농민전업합작사는 자신의 발전 상황에 따라 구성원대표대회 설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설립하지 않는 경우,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20조 본 합작사는 매년 _____번의 구성원대회를 개최하고 【주: 최소로 회계 년도 말에 한번은 개최해야 함】 구성원은 _____가 책임지고 개최하며, 15일전에 전체 구성원에게 공지한다.

제21조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사항이 나타날 경우, 합작사는 20일 내에 임시 구성원대회를 개최한다.

- (1) 30%이상의 구성원이 임시구성원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2) 집행감리 혹은 감리회가 제의하는 경우 【주: 집행감리 혹은 감리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 (3) 이사회가 제의하는 경우
- (4) 구성원이 공동으로 결정한 기타 사항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이사장 【주: 혹은 감리회】 이 임시구성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규정한 기간 내에 구성원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집행감리 혹은 감리회는 ____일 내에 임시구성원대회를 개최한다.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22조 구성원대회는 합작사 구성원 총수의 2/3이상이 참석해야 개최가 가능하다. 구성원이 개인사정으로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기타 구성원이 대신해서 출석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구성원 한명은 최대 ____명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표결할 수 있다.

구성원대회에서 선거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는 구성원 표결권 총수의 절반을 초과해야만 통과될 수 있다. 규정을 수정하거나, 구성원 출자기준 변경, 구성원 출자금 증가 혹은 감소, 합병·분립·해체·결산·대외연합 등 중대 사항을 결정할 때는 2/3이상을 초과해야만 통과된다. 구성원대표대회의 대표는 구성원의 서면 위탁 및 표결권 수에 근거하여 표결권을 행사한다.

제23조 본 합작사는 이사장 1명을 두고 이사장은 합작사의 법정대표인이다. 이사장 임기는 ____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구성원 대회를 진행하며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 (2) 구성원 출자증명을 체결한다.
- (3) 합작사 경리, 재무회계인원 및 기타 전문기술인원의 고용 혹은 해임서를 체결한다.
- (4) 구성원대회와 이사회 결의를 조직 실시하되 실시정황을 점검한다.
- (5) 합작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6) 구성원대회가 부여한 기타 권리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24조 본 합작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되 구성원대회에 소속된다. 이사회는 _____ 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었고 부이사장 _____ 명을 임명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_____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 【주: 혹은 이사장】 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구성원대회를 조직, 개최하고 업무보고를 하며 구성원대회 결의를 집행한다.
- (2) 합작사 발전계획, 연간업무경영계획, 내부관리규장제도 등을 제정하고 구성원대회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 (3) 연간 재무 예비 결산, 이익분배 및 손해 보완 방안을 제정하고 구성원대회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 (4) 구성원 교육 및 여러 가지 합작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 (5) 합작사의 재산과 재무를 관리하고 합작사의 재산안전을 보장한다.
- (6) 집행감리 혹은 감리회가 제출한 질문이나 건의를 접수, 답변, 처리한다.
- (7) 구성원 입사, 탈퇴, 상속, 제명, 장려, 처벌 등 사항을 결정한다.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 (8) 합작사 경리, 재무회계인원, 기타 전문기술인원의 고용 및 해고를 결정한다.
- (9) 구성원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이행한다. 【주: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회의의 표결은 1인1표 제도를 실시한다. 중요한 사항은 집체로 토론하되 2/3이상의 이사가 동의해야만 통과된다. 이사 개인이 모 사항의 결의에 부동한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록에 적어 넣고 사인한다. 이사회 회의는 집행감리 혹은 감리장, 경리, _____ 명의 구성원을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표결권은 없다.

【주: 농민전업합작사는 자신 발전 상황에 따라 이사회 설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제24조 제1항, 제25조 중의 관련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제26조 합작사는 1명의 집행감리를 임명하며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이사회와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한다. 집행감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27조 합작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되 _____ 명의 감리로 구성된다. 감리장은 1명이며 감

리장과 감리회구성원의 임기는 ____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감리장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감리회【주: 혹은 집행감리】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이사회가 구성원대회 결정 및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는가를 감독한다.
- (2) 합작사의 생산경영 업무 상황을 감독 점검하며 합작사의 재무 심사 점검 업무를 책임진다.
- (3) 이사장 혹은 이사회 구성원, 경리의 직무실행 상황을 감독한다.
- (4) 구성원대회에 연간 감찰보고를 제출한다.
- (5) 이사장 혹은 이사회에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제기하거나 건의를 제기한다.
- (6) 임시구성원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 (7) 합작사를 대표하여 이사와 합작사가 업무교역이 발생 할 때 업무교역량(액)을 기록한다.
- (8) 구성원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무를 완성한다.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28조 감리회 회의는 감리장이 소집하고 회의결정은 서면으로 이사회를 통지한다. 이사회는 통지를 받은 후 ____일 내에 답변한다.

제29조 감리회 회의 결의는 1인1표제를 실시한다. 감리회 회의는 2/3이상의 감리가 참석해야 하고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사인한다.

【주: 농민전업합작사는 자신 발전 상황에 따라 집행감리 및 감리회 설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중의 관련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제30조 합작사 경리는 이사회【주: 혹은 이사장】가 고용하거나 해임한다. 경리는 이사회【주: 혹은 이사장】에 소속되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합작사의 생산 경영 업무를 조직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 실시한다.
- (2) 연간 생산 경영계획과 투자방안을 조직한다.
- (3) 경영관리 제도를 작성한다.
- (4) 재무회계인원 및 기타 경영관리인원의 고용 및 해임을 제의한다.
- (5) 이사회에서 고용하고 해임하는 기타 경영관리인원과 직원의 고용과 해임을 책임진다.
- (6) 이사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은 삭제할 수 있다】

합작사 이사장 혹은 이사는 경리를 겸임할 수 있다.

제31조 합작사 현임 이사장, 이사, 경리, 재무회계인원은 감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합작사 이사장, 이사, 관리인원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합작 자산을 점유, 유용, 스스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

(2) 규정을 위반하거나 구성원대회의 동의 없이 합작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출하거나 합작사 재산으로 타인에게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

(3) 타인과 합작사가 교역하여 얻은 이익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4) 합작사 경제이익에 손해되는 기타 활동

(5) 업무 성격이 같은 기타 농민정업합작사의 이사장, 이사, 감리, 경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장, 이사와 관리인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은 합작사에 소유되며, 합작사에게 불이익을 가져주었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

제4장 재무관리

제33조 본 합작사는 독립적인 재무관리와 회계정산을 실행한다. 또한 국무원 재정부서에서 제정한 농민전업합작사재무제도와 회계제도에 근거하여 생산경영과 관리 서비스과정에서 나타난 원가와 비용을 심사한다.

제34조 합작사는 관련 법규, 행정규정과 정부 관련 주관 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완전한 재무와 회계제도를 건립하며, 매월 ____일【주: 혹은 매 분기 ____월 ____일】에 정기적으로 재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행한다.

합작사 재무회계인원은 회계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회계원과 출납원은 서로 겸임하지 않는다. 이사회, 감리회 구성원 및 직계친척은 합작사의 재무회계직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구성원과 합작사의 모든 업무교역은 실명으로 구성원의 개인 장부에 기록하며 교역량(액)에 근거하여 이익을 분할한다. 본 합작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일반인 즉 비구성원과 합작사의 업무교역은 단독적으로 기록하고 분할하여 정산한다.

제36조 회계년도가 종료될 때 이사장은 규정에 근거하여 년도업무보고, 이익분배방안,

손해처리방안 및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고 집행감리 혹은 감리회의 심사를 거친 후 구성원대회가 개최하기 15일 전에 사무처에 배치하여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구성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제37조 합작사 자금출처는 아래와 같다

- (1) 구성원 출자금
- (2) 매개 회계년도마다 이익에서 뽑아낸 적립금, 공익금
- (3) 분배하지 않은 이익
- (4) 국가가 지원한 자금
- (5) 타인이 증정한 자금
- (6) 기타 자금

제38조 합작사 구성원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창고·가공설비·운수설비·농기구·농산품 등 실물·기술·지적소유권 혹은 기타 재산권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무·신용·개인 이름·상업상의 신용과 명예·특허 혹은 보증 선 재산으로 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구성원이 화폐로 출자하지 않은 경우, 전체 구성원이 그 출자 자산에 대하여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39조 구성원이 약속한 출자금은 _____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40조 화폐로 출자를 한 구성원이 화폐가 아닌 기타 방식으로 출자한 구성원과는 같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장 【주: 혹은 이사회】 심사와 구성원 토론을 거친 후 구성원의 출자금은 합작사의 기타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1조 합작사 및 전체 구성원의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출자금을 조정해야 할 때는 구성원대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매개 구성원은 구성원대회 결정에 따라 출자금을 지급한다.

제42조 합작사는 구성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구성원의 출자금 액수를 명시한다. 또한 증명서에는 합작사의 재무도장과 이사장인감을 찍는다.

제43조 합작사는 그 해 이윤 중에서 ___%를 적립금으로 추출하여 생산경영을 확충하거나 손해를 보완하며 혹은 구성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주: 농업전업합작사는 자신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적립금 추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 합작사가 그 해 이익 중에서 추출한 _____%의 공익금은 구성원의 기술훈련, 합작

사의 지식 교육 및 문화, 복지 사업과 생활상의 지원에 사용된다. 그 중 구성원의 기술훈련과 합작사 지식 교육의 비례는 공익금 전체의 ___%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주: 농업전업합작사는 자신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공익금 추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 합작사가 지원받은 국가 지원금과 타인 증정은 규정한 방법에 따라 장부에 입력되고 합작사의 자산으로 인정되며 규정한 용도와 지원자의 의향에 따라 합작사의 발전에 사용된다. 해체되거나 파산 정산 할 때, 국가지원금은 잉여자산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서는 안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타인 증정은 증정자와의 약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6조 그 해에 생산경영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원가, 손해를 보완하고 적립금, 공익금을 추출한 후의 이윤은 구성원 대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분배한다.

(1) 구성원과 합작사 업무 교역량(액) 비례에 따라 분배한다. 분배 총액은 분배할 수 있는 이윤의 ___%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주: 법규에 근거하면 6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비례는 구성원대회에서 토론 결정한다.】

(2)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분배한 후 나머지는 구성원 장부에 기록한 출자금과 적립금 액수 및 국가지원금과 타인 증정 재산을 평균으로 나누어 구성원에게 분배한다. 분배한 사항은 구성원 개인 장부에 기록한다.

제48조 집행감리 혹은 감리회는 합작사의 일상재무를 심사 감독한다. 구성원대회 【주: 혹은 감리회】 의 규정 【주: 혹은 감리회의 요구】 에 근거하여 ___심사기구에 위탁하여 본 합작사의 재무에 대하여 연간 회계 감사, 전문 회계 감사, 인원교체 회계 감사, 이임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

제5장 합병, 분립, 해체, 정산

제49조 본 합작사와 타사가 합병하는 경우, 반드시 구성원 대회의 결의가 통과되어야 하며 합병이 결정된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합병 후 채권, 채무는 계속 존속되거나 새로운 조직이 상속된다.

제50조 구성원대회가 분립을 결정했을 경우, 합작사의 재산은 분할되며 분립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를 통지해야 한다. 분립하기 전의 채무는 분립 후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분립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에 대하여 서면 협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51조 합작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구성원대회가 결정하고 등록기관이 확인한 후 해체된다.

- (1) 합작사 구성원이 5명 이하인 경우
- (2) 구성원대회에서 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 (3) 합작사가 분립되거나 기타 농민전업합작사와 합병된 후 해체해야 하는 경우
- (4)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합작사가 경영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5)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집소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경우
- (6) 구성원이 공동으로 결정한 기타 상황 【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으면 본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제52조 합작사가 제1, 2, 4, 5, 6항으로 인해 해체된 경우 해체일로부터 15일 내에 구성원대회가 _____명의 구성원을 선출하여 정산소조를 설립하며 해체정산을 진행한다. 규정한 시일 내에 정산을 마치지 못한 경우 구성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구성원을 지정함으로써 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제53조 정산소조는 종료되지 않은 업무, 합작사 채무와 채권, 채무를 정산하고 정산방안을 제정한다. 동시에 합작사를 대표하여 채무 정산 후 나머지 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조정 혹은 기타 법률절차에 따라 정리한다. 또한 _____일 내에 구성원에게 정산상황을 보고하고 원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취소한다.

제54조 정산소조는 설립된 10일내에 구성원과 채권자에게 공지를 하며 60일 내에 신문에 공고를 한다.

제55조 합작사 재산은 우선으로 정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지불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 (1) 농민과 이미 교역을 진행하였지만 지불하지 못한 비용
- (2) 직원 급여 및 사회보험 비용
- (3) 세무 비용
- (4) 기타 채무
- (5) 구성원 출자금, 적립금
- (6) 정산방안에 근거하여 나머지 재산을 분배한다.

정산방안은 구성원대회에서 통과되거나 인민법원에서 확인한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합작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정산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제6장 부칙

- 제56조 합작사가 구성원에게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_____ 방식으로 공지하며, 사회에 공지해야 하는 사항은 _____ 방식으로 공지한다.
- 제57조 본 규정은 설립대회에서 결의하여 통과되며 전체 설립인원이 사인 한 후에야 효과를 발휘한다.
- 제58조 본 규정을 수정하는 데는 절반이상의 구성원 혹은 이사회가 제의해야 하며, 이사장【주: 혹은 이사회】이 책임지고 수정하고, 구성원대회가 토론하여 결정을 내린 후 실시할 수 있다.
- 제59조 본 규정은 합작사 이사회【주: 혹은 이사장】이 해석한다.
전체 설립인원은 사인하고 날인한다.

《농민전업합작사 시범사 창설기준(시행)》

(一) 민주적 관리

1. 《농민전업합작사법》에 따라 설립등기(또는 신고)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또는 신고)한지 만2년이 되어야 한다. 고정적인 업무장소(또는 사무실)와 독립적인 은행계좌(또는 법인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세무등기증과 조직기구코드번호증서(조직기구대마증)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2. 본 합작사의 현실상황에 따라 농업부의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을 참조하여 장정을 수정하여, 재무관리제도·재무공개제도·사무(합작사업무)공개제도·의사결정기록제도 등 내부규정제도를 완벽하게 갖추고 성실하게 집행한다.
3. 매년 최소 1회의 회원(대표)대회를 소집하고 회의기록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출석회원은 회의기록상에 서명을 한다. 중대한 재산처리나 생산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은 회원(대표)대회에서 결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확실하게 실시한다.
4. 회원(대표)대회선거와 표결을 진행할 때 1인 1표제 또는 1인1표제+부가표결권 방법을 시행하되, 부가표결권의 총 표수는 본 합작사회원의 기본표결권 총 표수의 20% 미만으로 하여, 확실한 민주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5. 장정규정 또는 합작사회원(대회)대회결의에 따라, 건전한 사무(합작사업무)관리감독기구를 설립하여, 본 합작사 구성원 중에 감사위원회구성원 또는 집행감사를 선출하거나 합작사 회원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여 민주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2010년 6월 11일 농업부가 하달한 《농민전업합작사 시범사 창설기준(시행)農民專業合作社 示範社 創設標準(試行)》을 번역, 정리하였음.

6. 회계업무에 따라 필요한 회계인원을 배치하고, 회계장부를 만들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또는 관련대리기장기구에 대리기장과 정산을 위탁한다. 재무·회계인력은 회계(중)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회계와 출납은 겸임이 불가능하고,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은 합작사의 재무·회계를 담당할 수 없다.
7. 매 회원은 각자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출자액을 기록하는 것을 물론 각 회원의 준비금(公積金) 배당을 계량화하거나 회원과 합작사간의 거래상황 및 잉여반환상황을 기록한다. 준비금(公積金)을 꺼내 쓴(인출한) 합작사는 장정규정에 따라 매년 준비금을 각 회원의 배당으로 계량화하여 회원의 계좌에 기입한다.
8. 배당가능잉여금은 회원과 합작사의 거래량(액)의 비율에 따라 되돌려주되, 반환총액은 배당가능잉여금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9. 합작사의 연간업무보고, 잉여분배 방법 또는 적자처리방안, 재무상황설명서를 매년 작성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집행감사)나 회원들의 직접심사를 통해, 회원(대표)대회 15일전에 업무장소(辦公地點)에서 회원에게 검열을 받고 회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또는 집행감사)는 본 합작사의 재무에 대한 내부회계감사를 책임지고, 감사결과를 회원(대표)대회에 보고하거나, 또는 회원(대표)대회가 회계감사기구에 본 합작사의 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탁한다. 농촌경영관리부문은 합작사재무회계업무의 지도와 감독을 자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二) 큰 경영규모

10. 모든 관련 주요 산업은 현(縣)급 또는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주도산업 또는 특색산업으로, 경영규모는 해당 성(省)동종업종의 농민합작사 평균보다 크다.
11. 농기계전업합작사는 농기구 장비를 2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연간 대여(를 통한 농경)서비스 면적이 1.5만 묘(畝)이상이다.

(三) 서비스 능력 향상

12. (합작사)에 가입한 회원수가 해당 성(省) 동종 업종 농민전업합작사의 평균보다 크고,

그 중에 재배업과 양식업¹(種養業)전문합작사 회원수가 150인 이상이어야 한다. 농민이 전체회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기업·사업단위와 사회단체 구성원은 전체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3. 회원들의 주요생산재료(합작사 가입시 각자 가져온 고정자산 제외)를 일괄구매 및 주요제품(서비스) 일괄 판매비율이 80%를 초과하고, 100% 표준화 생산을 해야 한다.
14. 회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회원과의 거래비율은 합작사의 총 거래량의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15.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鮮活) 농산물 생산 전업합작사는 “농업합작사-마트연결”·“농업합작사-학교연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도시(城鎮)에 연쇄점·직판장·전문판매대·대리점을 개설하여 판매루트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한다.

(四) 우수한 품질

16. (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전업합작사의 모든 회원은 《농산물품질안전법》과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기록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전 과정을 모두 기록하여 농산물 품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17. 식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전업합작사 제품(농산물)은 무공해농산물·녹색식품·유기농농산물 또는 유기농식품 인증을 획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합작사의 주요농산물은 등록상표를 가진다.

(五) 양호한 사회적인 반향

18. 생산(품질)안전사고나 업종내 비판적인 통지(보)를 받은 적이 없고, 대중매체에 불미스런 일로 폭로된 기록이 없어 사회적으로 좋은 명성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19. 회원의 소득이 해당 현의 동종업종 비회원 농가소득보다 30%이상 높아, (합작사 가입)이 농민이 소득증대의 중요한 루트임이 증명된다.

1 재배업은 봄, 여름, 가을에 집중되는 반면 양식업은 사계절 생산이 가능하다.



IV. 농업통계

- 한·중 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 중국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일별)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출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155.9	-2.8	3,412.9	4.6	147.3	-7.1	1,735.1	8.5
1997	200.7	28.7	3,346.9	6.0	239.2	62.4	1,893.4	12.6
1998	174.6	-13.0	2,999.0	5.8	259.2	8.4	2,026.0	12.8
1999	149.3	-14.5	3,198.2	4.7	197.0	-24.0	1,830.0	10.8
2000	201.7	35.1	3,012.4	6.7	271.2	37.7	1,860.2	14.6
2001	164.4	-18.5	2,851.5	5.8	221.1	-18.5	1,880.4	11.8
2002	178.2	8.4	2,801.3	6.4	206.5	-6.6	1,865.4	11.1
2003	237.1	33.1	2,990.6	7.9	245.7	19.0	1,874.8	13.1
2004	338.2	42.6	3,365.2	10.0	297.9	21.2	1,898.8	15.7
2005	339.8	0.5	3,415.8	9.9	267.0	-10.4	1,894.4	14.1
2006	335.6	-1.2	3,394.8	9.9	246.4	-7.7	1,802.0	13.7
2007	452.1	34.7	3,759.3	12.0	374.9	52.2	2,051.0	18.3
2008	536.6	18.7	4,402.8	12.2	374.3	-0.2	2,150.9	17.4
2009	565.2	4.8	4,809.3	16.3	414.8	10.3	2,634.3	15.7
2010.1	57.8	1100.2	396.7	14.6	31.9	77.7	212.4	15.0
2010.2	99.8	42.5	771.2	12.9	60.5	25.5	402.1	15.0
2010.3	165.2	56.8	1,209.3	13.7	105.3	41.8	624.4	16.9
2010.4	231.3	55.2	1,667.1	20.4	151.6	38.5	877.8	11.1
2010.5	280.7	51.4	2,099.2	20.7	182.8	35.2	1,105.5	12.4
2010.6	335.7	51.5	2,585.9	21.4	214.2	29.3	1,343.8	12.3
2010.7	395.4	46.5	3,075.4	21.4	253.5	21.5	1,621.6	12.3
2010.8	458.6	45.5	3,544.8	21.4	293.7	17.5	1,869.7	12.3
2010.9	528.3	43.0	4,058.3	21.4	332.5	15.3	2,128.8	12.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2.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	대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성장률(%)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
1995	725.7	-38.5	9,839.0	7.4	1,647.5	-72.1	31,086.7	5.3
1996	1,003.0	38.2	11,875.3	8.4	2,069.4	25.6	34,073.8	6.1
1997	1,528.6	52.4	11,255.1	13.6	5,520.8	166.8	33,270.2	16.6
1998	945.8	-38.1	6,971.6	13.6	3,839.6	-30.5	26,830.0	14.3
1999	1,154.1	22.0	8,563.8	13.5	3,348.7	-12.8	32,127.1	10.4
2000	1,867.9	61.8	9,818.5	19.0	8,722.6	160.5	33,543.8	26.0
2001	1,719.6	-7.9	10,079.2	17.1	5,504.9	-36.9	34,588.9	15.9
2002	2,324.3	35.2	11,471.5	20.3	9,316.9	69.2	37,017.2	25.2
2003	2,775.7	19.4	12,185.2	22.8	11,477.4	23.2	36,292.1	31.6
2004	2,421.6	-12.8	13,484.1	18.0	5,090.6	-55.6	35,540.7	14.3
2005	3,155.0	30.3	14,275.7	22.1	9,061.2	78.0	35,806.5	25.3
2006	3,236.1	2.6	16,100.9	20.1	6,220.2	-31.4	36,872.5	16.9
2007	4,173.4	29.0	19,242.3	21.7	8,723.5	40.2	38,025.3	22.9
2008	3,627.1	-13.1	23,198.6	15.6	4,910.1	-43.7	41,751.8	11.8
2009	3,676.0	1.3	21,240.9	17.3	6,834.5	39.2	43,519.0	15.7
2010.1	331.6	10.3	1,893.6	17.5	525.7	6.8	3,472.1	15.1
2010.2	656.1	24.4	3,675.4	17.9	1,026.8	14.1	6,952.3	14.8
2010.3	1,031.8	24.8	5,916.5	17.4	1,636.0	15.2	11,249.3	14.5
2010.4	1,438.6	21.1	8,170.5	25.1	2,298.7	12.3	15,295.5	21.2
2010.5	1,798.3	21.3	10,440.7	27.1	2,894.4	11.5	19,663.3	21.0
2010.6	2,119.4	16.8	12,673.3	23.8	3,445.7	6.1	23,786.3	14.2
2010.7	2,426.9	16.1	14,802.3	23.8	3,939.0	3.5	27,706.7	14.2
2010.8	2,765.1	17.2	16,851.0	23.8	4,437.5	2.3	31,345.2	14.2
2010.9	3,061.8	14.7	18,820.6	23.8	4,900.3	-0.3	35,033.8	14.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3.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5	44.9	27.9	1,081.5	4.1	43.3	27.3	775.5	5.6
1996	27.0	17.3	1,156.3	2.3	27.8	18.9	899.8	3.1
1997	46.6	23.2	1,187.9	3.9	68.4	28.6	978.8	7.0
1998	39.0	22.3	1,002.2	3.9	64.2	24.8	1,048.2	6.1
1999	37.9	25.4	1,003.4	3.8	69.0	35.0	982.7	7.0
2000	59.0	29.3	1,133.5	5.2	91.6	33.8	1,133.5	8.1
2001	68.4	41.6	1,251.9	5.5	114.2	51.7	1,178.1	9.7
2002	95.6	53.6	1,374.5	7.0	126.2	61.1	1,239.2	10.2
2003	116.8	49.3	1,563.2	7.5	144.5	58.8	1,242.9	11.6
2004	151.0	44.6	1,758.5	8.6	157.4	52.8	1,258.9	12.5
2005	184.5	54.3	1,898.8	9.7	175.0	65.5	1,293.5	13.5
2006	216.4	64.5	2,008.2	10.8	172.6	70.0	1,263.9	13.7
2007	257.4	56.9	2,222.5	11.6	208.8	55.7	1,336.5	15.6
2008	300.3	56.0	2,621.0	11.5	187.7	50.1	1,390.2	13.5
2009	326.7	57.8	2,990.8	10.9	211.4	51.0	1,753.7	12.1
2010.1	34.5	59.7	240.9	14.3	12.5	39.2	123.9	10.1
2010.2	58.6	58.7	479.2	12.2	25.9	42.8	251.7	10.3
2010.3	94.8	57.4	749.0	12.7	47.8	45.4	405.8	11.8
2010.4	135.2	58.5	1,029.1	13.1	75.2	49.6	577.9	13.0
2010.5	169.5	60.4	1,285.1	13.2	97.0	53.1	735.4	13.2
2010.6	204.4	60.9	1,594.3	12.8	120.4	56.2	916.2	13.1
2010.7	236.1	59.7	1,889.0	12.5	144.6	57.0	1,113.4	13.0
2010.8	271.4	59.2	2,205.8	12.3	167.9	57.2	1,301.8	12.9
2010.9	306.2	58.0	2,538.1	12.1	188.7	56.8	1,492.9	12.6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4.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5	396.3	54.6	5,537.6	7.2	935.1	56.8	20,003.0	4.7
1996	528.9	52.7	6,867.0	7.7	1,205.6	58.3	22,840.9	5.3
1997	933.5	61.1	6,284.7	14.9	4,457.5	80.7	21,613.5	20.6
1998	621.6	65.7	4,663.9	13.3	3,275.2	85.3	20,841.7	15.7
1999	551.6	47.8	4,681.3	11.8	2,382.3	71.1	22,206.9	10.7
2000	1,152.0	61.7	5,104.5	22.6	7,706.0	88.3	23,113.8	33.3
2001	846.1	49.2	5,325.3	15.9	4,388.7	79.7	23,247.0	18.9
2002	1,265.9	54.5	5,701.5	22.2	8,099.1	86.9	24,376.0	33.2
2003	1,764.0	63.6	6,212.7	28.4	10,354.4	90.2	24,301.0	42.6
2004	1,125.2	46.5	7,444.6	15.1	3,824.6	75.1	24,317.4	15.7
2005	1,757.0	55.7	7,397.4	23.8	7,815.5	86.3	24,765.5	31.6
2006	1,550.8	47.9	8,117.2	19.1	4,668.8	75.1	25,142.1	18.6
2007	2,375.2	56.9	10,089.0	23.5	7,320.3	83.9	25,973.9	28.2
2008	1,949.7	53.8	13,904.6	14.0	3,572.6	72.8	27,842.8	12.8
2009	1,702.0	46.3	11,753.6	14.5	3,017.2	44.1	25,978.5	11.6
2010.1	134.7	40.6	981.9	13.7	236.5	45.0	2,097.7	11.3
2010.2	293.2	44.7	1,966.4	14.9	489.3	47.7	4,170.7	11.7
2010.3	475.7	46.1	3,178.4	15.0	762.0	46.6	6,768.0	11.3
2010.4	655.7	45.6	4,430.0	14.8	1,030.2	44.8	9,271.1	11.1
2010.5	807.3	44.9	5,693.4	14.2	1,261.5	43.6	11,898.4	10.6
2010.6	936.3	44.2	6,917.9	13.5	1,460.8	42.4	14,453.1	10.1
2010.7	1,063.4	43.8	8,093.9	13.1	1,638.8	41.6	16,888.2	9.7
2010.8	1,213.2	43.9	9,142.9	13.3	1,830.1	41.2	19,061.7	9.6
2010.9	1,3420.8	43.9	10,207.6	13.2	2,023.9	41.3	21,645.4	9.4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농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5.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출,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5	1.1	0.7	155.5	0.7	0.7	0.4	76.7	0.9
1996	0.7	0.4	260.0	0.3	0.4	0.3	98.9	0.4
1997	1.9	0.9	319.9	0.6	1.0	0.4	125.1	0.8
1998	2.6	1.5	388.5	0.7	1.3	0.5	169.1	0.8
1999	3.1	2.1	407.8	0.8	1.2	0.6	167.4	0.7
2000	3.1	1.5	121.0	2.6	1.0	0.4	86.3	1.2
2001	3.8	2.3	117.8	3.2	1.0	0.5	110.1	0.9
2002	3.1	1.7	98.5	3.1	1.0	0.5	82.8	1.2
2003	3.3	1.4	119.5	2.8	1.4	0.6	92.6	1.5
2004	3.7	1.1	162.7	2.3	2.3	0.8	85.8	2.7
2005	6.2	1.8	172.7	3.6	6.1	2.3	95.9	6.4
2006	5.3	1.6	172.2	3.1	1.6	0.6	87.1	1.8
2007	6.8	1.5	181.0	3.8	2.0	0.5	93.0	2.2
2008	14.5	2.7	215.1	6.7	3.4	0.9	98.3	3.5
2009	18.6	303	139.6	13.3	5.4	1.3	59.7	9.0
2010.1	2.3	4.0	11.7	19.7	0.3	0.9	5.3	5.7
2010.2	3.3	3.3	21.1	15.6	0.5	0.8	9.4	5.3
2010.3	4.6	2.8	31.1	14.8	0.8	0.8	13.9	5.8
2010.4	5.0	2.2	42.5	11.8	0.9	0.6	18.6	4.8
2010.5	5.6	2.0	53.1	10.5	1.0	0.5	23.3	4.3
2010.6	6.3	1.9	62.5	10.1	1.0	0.5	27.5	3.6
2010.7	8.5	2.1	73.6	11.5	1.3	0.5	31.1	4.2
2010.8	10.7	2.3	84.4	12.7	1.7	0.6	36.1	4.7
2010.9	13.7	2.6	97.2	14.1	2.0	06	40.2	5.0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6. 한국의 대 중국 축산물 수입,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5	35.1	4.8	1,224.1	2.9	10.1	0.6	555.5	1.8
1996	40.8	4.1	1,240.1	3.3	15.6	0.8	518.6	3.0
1997	47.8	3.1	1,324.4	3.6	22.5	0.4	520.9	4.3
1998	13.8	1.5	756.0	1.8	7.2	0.2	348.9	2.1
1999	15.1	1.3	1,245.2	1.2	7.2	0.2	653.9	1.1
2000	23.4	1.3	1,676.2	1.4	12.3	0.1	771.7	1.6
2001	32.3	1.9	1,466.3	2.2	19.2	0.3	705.7	2.7
2002	43.0	1.9	1,948.5	2.2	19.0	0.2	902.1	2.1
2003	38.5	1.4	2,115.6	1.8	21.5	0.2	883.6	2.4
2004	38.3	1.6	1,755.3	2.2	23.4	0.5	711.9	3.3
2005	71.2	2.3	2,360.5	3.0	39.9	0.4	888.0	4.5
2006	93.5	2.9	2,748.5	3.4	48.8	0.8	1,065.1	4.6
2007	100.5	2.4	3,235.3	3.1	48.6	0.6	1,092.3	4.4
2008	85.0	2.3	3,352.2	2.5	35.0	0.7	1,004.3	3.5
2009	42.2	1.1	2,485.1	1.7	15.8	0.2	956.5	1.7
2010.1	3.8	1.1	239.3	1.6	1.5	0.3	88.2	1.7
2010.2	7.1	1.1	434.8	1.6	2.5	0.2	159.6	1.6
2010.3	11.0	1.1	691.0	1.6	3.8	0.2	248.9	1.5
2010.4	15.4	1.1	926.1	1.7	5.4	0.2	337.1	1.6
2010.5	20.4	1.1	1,189.3	1.7	7.2	0.2	428.6	1.7
2010.6	25.1	1.2	1,458.7	1.7	8.7	0.3	522.7	1.7
2010.7	29.7	1.2	1,723.8	1.7	10.1	0.3	610.1	1.7
2010.8	33.2	1.2	2,002.4	1.7	11.4	0.3	697.0	1.6
2010.9	37.2	1.2	2,234.8	1.7	12.7	0.3	773.5	1.6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축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7.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출,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5	48.9	30.5	499.8	9.8	66.5	41.9	355.9	18.7
1996	60.2	38.6	281.5	21.4	67.6	45.9	144.9	46.7
1997	36.5	18.2	251.2	14.5	36.8	15.4	157.5	23.4
1998	35.7	20.4	244.4	14.6	55.1	21.3	217.5	25.3
1999	49.2	33.0	268.7	18.3	73.5	37.3	204.2	36.0
2000	55.5	27.5	254.5	21.8	85.4	31.5	197.3	43.3
2001	36.5	22.2	210.0	17.4	52.1	23.6	157.0	33.2
2002	31.1	17.5	166.9	18.6	36.0	17.4	113.1	31.8
2003	46.0	19.4	177.1	26.0	43.9	17.9	114.1	38.5
2004	59.0	17.4	163.9	36.0	69.9	23.5	146.4	47.7
2005	40.5	11.9	150.0	27.0	26.3	9.9	92.1	28.6
2006	37.7	11.2	124.0	30.4	27.1	11.0	82.6	32.8
2007	30.4	6.7	128.3	23.7	21.1	5.6	84.4	25.0
2008	31.5	5.9	118.4	26.6	22.7	6.1	77.1	29.4
2009	74.3	13.1	167.7	44.3	106.2	25.6	168.7	63.0
2010.1	7.9	13.7	13.7	57.7	11.5	36.1	16.5	69.7
2010.2	15.5	15.5	27.4	56.6	22.0	36.4	31.3	70.3
2010.3	25.0	15.1	43.4	57.6	34.2	32.5	48.4	70.7
2010.4	31.3	13.5	60.3	51.9	40.8	26.9	61.1	66.8
2010.5	34.7	12.4	75.2	46.1	44.1	24.1	70.5	62.6
2010.6	36.7	10.9	88.4	41.5	45.0	21.0	78.0	57.7
2010.7	43.6	11.0	110.2	39.6	51.4	20.3	95.7	53.7
2010.8	53.2	11.6	127.2	41.8	62.9	21.4	112.0	56.2
2010.9	62.9	11.9	150.4	41.8	72.9	21.9	130.4	55.9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8. 한국의 대 중국 임산물 수입,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5	165.9	22.9	2,249.6	7.4	655.9	39.8	10,114.8	6.5
1996	459.1	45.8	2,635.6	17.4	552.7	26.7	9,882.4	5.6
1997	226.6	14.8	2,497.7	9.1	661.1	12.0	10,248.7	6.5
1998	113.1	12.0	967.2	11.7	445.5	11.6	5,261.3	8.5
1999	180.9	15.7	1,478.2	12.2	666.4	19.9	8,524.7	7.8
2000	217.0	11.6	1,652.8	13.1	726.1	8.3	8,915.1	8.1
2001	279.9	16.3	1,656.7	16.9	629.6	11.4	9,580.9	6.6
2002	292.6	12.6	1,934.3	15.1	705.5	7.6	10,544.2	6.7
2003	297.7	10.7	1,892.9	15.7	636.4	5.5	9,861.9	6.5
2004	347.7	14.4	2,019.9	17.2	745.0	14.6	9,221.6	8.1
2005	388.3	12.3	2,130.7	18.2	695.9	7.7	8,882.4	7.8
2006	554.8	17.1	2,461.6	22.5	939.0	15.1	9,272.3	10.1
2007	625.0	15.0	2,858.2	21.9	810.8	9.3	9,553.7	8.5
2008	587.8	16.2	2,863.6	20.5	646.0	13.2	8,880.9	7.3
2009	1,077.9	29.3	4,107.8	26.2	2,882.1	42.2	12,503.7	23.0
2010.1	87.4	26.4	382.8	22.8	191.4	36.4	961.2	19.9
2010.2	162.3	24.7	744.3	21.8	329.5	32.1	1,883.6	17.5
2010.3	257.9	25.0	1,194.0	21.6	570.2	34.9	3,030.2	18.8
2010.4	374.8	26.1	1,650.1	22.7	876.7	38.1	4,203.8	20.9
2010.5	489.6	27.2	2,118.5	23.1	1,171.4	40.5	5,392.8	21.7
2010.6	602.0	28.4	2,612.7	23.0	1,457.3	42.3	6,556.6	22.2
2010.7	708.0	29.2	3,073.7	23.0	1,718.5	43.6	7,645.4	22.5
2010.8	815.9	29.5	3,537.7	23.1	1,957.6	44.1	8,661.1	22.6
2010.9	910.3	29.7	3,939.5	23.1	2,167.2	44.2	9,557.4	22.7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임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9.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출,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출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출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출 총량	점유율 ² (%)
1995	160.5	129.8	3,418.8	4.7	158.6	120.0	1,640.8	9.7
1996	68.0	43.6	1,592.5	4.3	51.4	34.9	446.7	11.5
1997	114.9	57.3	1,494.2	7.7	132.5	55.4	510.3	26.0
1998	97.4	55.8	1,363.9	7.1	138.7	53.5	591.2	23.5
1999	59.1	39.6	1,518.4	3.9	53.2	27.0	475.7	11.2
2000	84.2	41.7	1,503.3	5.6	93.2	34.4	533.5	17.5
2001	55.8	33.9	1,271.8	4.4	53.7	24.3	435.2	12.3
2002	48.4	27.2	1,161.3	4.2	44.3	21.5	430.3	10.3
2003	71.0	29.9	1,130.8	6.3	55.9	22.8	425.2	13.1
2004	124.6	36.8	1,280.2	9.7	68.3	22.9	407.7	16.8
2005	108.6	32.0	1,194.3	9.1	65.7	24.6	412.9	15.9
2006	76.1	22.7	1,090.4	7.0	45.1	18.3	368.5	12.2
2007	157.5	34.8	1,227.5	12.8	143.0	38.1	537.0	26.6
2008	190.3	35.5	1,448.3	13.1	160.4	42.9	585.3	27.4
2009	145.7	25.8	1,511.2	9.6	91.8	22.1	652.2	14.1
2010.1	13.0	22.5	130.4	10.0	7.5	23.5	66.7	11.2
2010.2	22.5	22.5	243.6	9.2	12.1	20.2	109.7	11.1
2010.3	40.8	24.7	385.8	10.6	22.5	21.4	156.2	14.4
2010.4	59.8	25.9	545.3	11.0	34.7	22.9	220.2	15.8
2010.5	71.0	25.3	985.8	7.2	40.7	22.3	276.3	14.7
2010.6	88.3	26.3	837.8	10.5	47.8	22.3	322.2	14.8
2010.7	107.2	27.1	1,002.6	10.7	56.2	22.2	381.3	14.7
2010.8	123.3	26.9	1,127.4	10.9	61.2	20.8	419.8	14.6
2010.9	145.6	27.6	1,272.6	11.4	68.9	20.7	465.3	14.8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출총액 및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0. 한국의 대 중국 수산물 수입, 1995~2010.9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연 도	대 중국 수입액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액	점유율 ² (%)	대 중국 수입량	점유율 ¹ (%)	대 세계 수입 총량	점유율 ² (%)
1995	128.4	17.7	827.8	15.5	46.5	2.8	413.5	11.2
1996	206.9	20.6	1,019.6	20.3	74.7	3.6	507.9	14.7
1997	272.1	17.8	1,050.7	25.9	117.3	2.1	528.8	22.2
1998	197.3	20.9	584.4	33.8	111.7	2.9	378.2	29.5
1999	406.6	35.2	1,159.0	35.1	292.8	8.7	741.6	39.5
2000	475.4	25.5	1,385.0	34.3	278.3	3.2	743.2	37.4
2001	621.4	36.1	1,630.9	38.1	467.3	8.5	1,055.2	44.3
2002	719.8	31.0	1,887.2	38.1	493.4	5.3	1,194.9	41.3
2003	714.1	25.7	1,964.1	36.4	465.2	4.1	1,245.5	37.4
2004	910.5	37.6	2,264.2	40.2	497.7	9.8	1,289.8	38.6
2005	938.5	29.7	2,387.1	39.3	509.8	5.6	1,270.5	40.1
2006	1,036.9	32.0	2,773.6	37.4	563.7	9.1	1,393.1	40.5
2007	1,072.7	25.7	3,059.8	35.1	543.9	6.2	1,405.4	38.7
2008	1,004.6	27.7	3,078.3	32.6	656.5	13.4	4,023.8	16.3
2009	853.8	23.2	2,894.4	29.5	919.4	13.5	4,080.3	22.5
2010.1	105.7	31.9	289.5	36.5	96.4	18.3	325.0	29.7
2010.2	193.6	29.5	530.0	36.5	205.5	20.0	738.3	27.8
2010.3	287.1	27.8	853.0	33.7	300.0	18.3	1,202.3	25.0
2010.4	392.8	27.3	1,164.3	33.7	386.4	16.8	1,537.6	25.1
2010.5	481.1	26.8	1,439.5	33.4	454.4	15.7	1,943.6	23.4
2010.6	555.9	26.2	1,683.9	33.0	518.8	15.1	2,253.9	23.0
2010.7	625.9	25.8	1,910.7	32.8	517.5	13.1	2,562.9	20.2
2010.8	702.9	25.4	2,168.1	32.4	638.4	14.4	2,925.4	21.8
2010.9	771.5	25.2	2,438.7	31.6	696.5	14.2	3,357.5	20.7

주: 1. 한국의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의 대 세계 수산물 수입총액 및 수입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1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월별), 2008.1~2010.9

년 월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기준대비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2008.	1	161.0	119.9	105.9	161.7	121.7	106.8
	2	174.2	128.1	108.2	176.8	131.5	109.3
	3	168.8	123.6	96.9	168.4	124.6	95.2
	4	168.9	124.2	100.1	168.5	125.5	100.1
	5	163.3	119.4	96.7	161.6	119.5	95.9
	6	160.9	112.1	98.5	158.4	111.1	98.0
	7	162.8	110.0	101.2	160.3	108.5	101.2
	8	162.0	107.0	99.6	160.3	105.5	100.0
	9	160.7	107.1	99.1	159.3	106.2	99.4
	10	153.6	102.5	95.6	151.2	101.0	94.9
	11	147.5	98.6	96.0	144.8	97.2	95.8
	12	149.8	98.5	101.6	147.7	97.6	102.0
2009.	1	158.5	98.4	105.4	157.0	97.1	106.3
	2	159.2	91.4	100.4	158.4	89.6	100.9
	3	160.0	94.8	100.5	159.5	94.7	100.7
	4	161.1	95.4	100.7	160.7	95.4	100.8
	5	162.7	99.6	101.0	162.5	100.6	101.1
	6	159.8	99.3	98.2	159.0	100.4	97.8
	7	158.4	97.3	99.1	157.4	98.2	99.0
	8	162.6	100.2	102.7	162.5	101.4	103.2
	9	162.4	101.1	99.9	162.1	101.8	99.8
	10	151.0	95.3	93.0	148.5	98.2	91.6
	11	152.7	103.5	101.1	150.4	103.9	101.3
	12	161.1	107.1	105.5	160.3	108.5	106.6
2010.	1	169.0	106.6	104.9	169.3	107.8	105.6
	2	172.1	108.1	101.8	172.9	109.2	1021
	3	168.7	105.4	98.0	168.9	105.9	97.7
	4	168.1	104.4	99.6	167.9	104.5	99.4
	5	162.0	99.6	96.4	160.7	98.9	95.7
	6	157.6	99.6	97.3	155.6	97.9	96.9
	7	164.8	104.0	104.6	163.9	104.1	105.3
	8	172.8	106.3	104.9	173.4	106.7	105.8
	9	171.0	105.3	98.9	170.7	105.3	98.4

주: 기준대비지수는 2000년=100, 전년동기대비지수101.0는 전년=100, 전월대비지수는 전월=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月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0.1~3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1.4	166.2	166.1	2.12	175.5	176.9
1.5	166.7	166.8	2.22	174.7	176.1
1.6	167.8	168.2	2.23	174.1	175.4
1.7	167.6	167.8	2.24	173.2	174.3
1.8	167.9	168.1	2.25	172.4	173.4
1.11	167.5	167.7	2.26	171.3	172.1
1.12	168.0	168.3	3.1	169.6	170.0
1.13	168.7	169.0	3.2	170.3	170.9
1.14	169.3	169.6	3.3	169.1	169.4
1.15	169.1	169.4	3.4	169.7	170.1
1.18	168.8	169.1	3.5	170.1	170.5
1.19	169.6	170.0	3.8	168.6	168.8
1.20	170.5	171.0	3.9	169.5	169.8
1.21	170.8	171.4	3.10	169.0	169.2
1.22	170.5	171.1	3.11	168.8	168.9
1.25	170.2	170.6	3.12	168.5	168.7
1.26	169.5	169.9	3.15	168.8	169.0
1.27	170.3	170.9	3.16	168.8	169.0
1.28	169.9	170.3	3.17	169.1	169.3
1.29	170.2	170.8	3.18	168.9	169.1
2.1	171.3	171.1	3.19	168.5	168.6
2.2	171.2	171.0	3.22	167.5	167.4
2.3	169.8	170.1	3.23	168.0	167.9
2.4	170.3	169.4	3.24	167.7	167.6
2.5	171.3	171.7	3.25	167.6	167.6
2.8	172.2	171.6	3.26	168.1	168.1
2.9	173.1	173.5	3.29	168.3	168.2
2.10	174.1	173.9	3.30	168.1	168.2
2.11	176.2	176.0	3.31	168.2	168.2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3.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0.4~6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4.1	168.2	168.1	5.19	160.4	159.0
4.2	168.6	168.6	5.20	159.8	158.4
4.6	168.4	168.1	5.21	159.9	158.3
4.7	167.4	167.1	5.24	159.1	157.5
4.8	168.1	168.0	5.25	158.2	156.4
4.9	166.5	166.2	5.26	158.4	156.7
4.12	166.0	165.5	5.27	158.8	157.1
4.13	166.1	165.6	5.28	159.4	157.9
4.14	166.6	166.0	5.31	158.6	156.9
4.15	167.3	166.8	6.1	158.2	156.5
4.16	167.2	166.8	6.2	158.3	156.6
4.19	168.0	167.8	6.3	1578.0	156.2
4.20	169.4	169.5	6.4	157.4	155.4
4.21	169.3	169.4	6.7	157.8	155.9
4.22	168.4	168.2	6.8	157.4	155.5
4.23	168.4	168.3	6.9	156.8	154.8
4.26	168.2	168.1	6.10	156.7	154.7
4.27	169.1	168.9	6.11	157.0	154.8
4.28	169.1	169.0	6.14	157.3	155.0
4.29	170.6	170.7	6.15	157.7	155.2
4.30	169.6	169.5	6.16	157.1	154.8
5.4	167.9	167.4	6.17	157.6	155.1
5.5	167.0	163.8	6.18	157.2	154.9
5.6	166.2	166.0	6.20	157.4	155.1
5.7	165.6	164.7	6.21	157.9	155.9
5.10	164.0	162.8	6.22	157.6	155.3
5.11	163.2	161.7	6.23	157.6	155.3
5.12	163.7	162.4	6.24	158.7	156.6
5.13	163.4	162.1	6.25	158.3	156.1
5.14	164.0	162.7	6.28	158.9	156.8
5.17	160.5	159.3	6.29	158.3	156.2
5.18	160.5	159.2	6.30	158.6	156.4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14.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지수(일별), 2010.7~9월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날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채람자”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7.1	158.9	156.8	8.25	174.4	175.1
7.2	158.8	156.7	8.26	174.4	175.1
7.5	159.1	157.3	8.27	173.5	174.0
7.6	159.4	157.6	8.30	174.3	174.8
7.7	160.1	158.3	8.31	173.3	173.7
7.8	160.3	158.5	9.1	172.3	172.5
7.9	160.5	158.9	9.2	171.9	172.1
7.12	162.0	160.6	9.3	171.1	171.0
7.13	162.3	160.8	9.6	170.3	170.0
7.14	162.7	161.3	9.7	170.1	169.7
7.15	163.6	162.5	9.8	170.1	169.6
7.16	165.0	164.1	9.9	168.9	168.2
7.19	165.6	164.9	9.10	168.5	167.7
7.20	167.6	167.1	9.13	170.2	169.9
7.21	167.7	167.5	9.14	171.3	171.0
7.22	169.1	168.7	9.15	170.3	169.9
7.23	169.6	169.4	9.16	170.0	169.5
7.26	169.3	169.1	9.17	170.1	169.6
7.27	169.5	169.2	9.20	170.3	167.0
7.28	170.0	169.8	9.21	171.0	170.4
7.29	170.2	169.9	9.22	171.3	170.8
7.30	170.8	170.2	9.23	172.1	171.6
8.2	171.3	171.0	9.24	172.7	172.4
8.3	171.7	171.4	9.27	173.4	173.2
8.4	171.5	171.2	9.28	173.8	173.8
8.5	171.8	171.6	9.29	172.9	172.6
8.6	172.0	171.7	9.30	172.5	172.3
8.9	171.7	171.4			

주: 기준연도 2000년=100

자료: 農業部. “全國農產品批發價格指數一日度指數”(http://www.agri.gov.cn/xxfb)

☐ 09-2010-03

중국농업동향(가을호) 제3권 제3호/통권11호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10. 30.

발 행 2010. 10. 30.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